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설

2013. 3.



목 차

I . 추진경과	1
1. 의안원문	3
2.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검토보고서	30
3. 공포 법률	63
4. 심사일정 등 추진경과	78
II . 조문별 해설	79
1. 제1장 총칙	81
2.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91
3. 제3장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 등	108
4. 제4장 간척지의 관리 및 운영	220
5. 제5장 보칙	237
6. 제6장 벌칙	252
※ 별표 및 별지서식	259
III . 법 제정 관련 참고자료	273
1. 보도자료	275
2.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심사보고서	280
3.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검토보고서	331
IV . 하위법령안 제정 참고자료	333
1. 시행령안 입법예고문	335
2. 시행규칙안 입법예고문	337
3.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결과	339
4. 부패영향평가 결과	350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서	354
6. 통계기반 정책관리 예비평가 결과	356
7. 규제심사 결과	358
V . 공포 법령 3단 비교	373

I . 추진경과

1. 의안원문
2. 국회 농림수산물위원회 검토보고서
3. 공포 법률
4. 심사일정 및 추진경과

간척지법 해설집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최인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757
----------	-------

발의연월일 : 2011. 11. 4.

발 의 자 : 최인기 · 성윤환 · 윤영
김영진 · 김우남 · 김학용
유성엽 · 김성곤 · 유선호
전현희 · 송훈석 · 강봉균
신 건 · 김영록 · 권선택
의원(15인)

제안이유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간척지의 경우 농지확보 등 농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성목적과 다르게 이용되는 사례가 많을 뿐만 아니라 해당 매립사업으로 피해를 입는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피해농어업인을 보호하며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간척지를 농업의 규모화를 위한 영농단지 및 선진화를 위한 첨단농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농업 및 관련 산업에 활용하도록 하며, 간척지활용사업에 국가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5년 마다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간척지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및 제7조).
- 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활용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며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10조).
- 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간척지활용사업계획안을 작성하여 3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열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9조).
- 라. 간척지활용사업은 국가가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협동조합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 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활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척지활용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및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바.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은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하고, 사업시행자 등의 요청으로 전기간선시설을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땅속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2분의 1의 비율로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20조).

사.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에서 사용 및 처분계획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매각하되 해당 매립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농업법인에 대하여는 우선 임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아.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관리권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되며, 관리권자는 한국농어촌공사를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간척지의 임대 안내 및 상담, 임대계약의 체결, 이용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23조).

자.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은 이용자가 임대목적과 다르게 토지를 사용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용자의 영농편의를 위하여 간척지에 적합한 작물 및 품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 대하여 간척지 농산물의 판매촉진 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28조).

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용자에 대하여 수출지원을 지원받아 생산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국내 농산물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농산물의 가격안정이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국내 판매를 제한할 수 있고,

수출지원을 받아 생산한 농산물의 생산량·출하량 및 판매현황 등 자료를 보관하도록 하며,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재원으로 농지관리기금 또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및 제32조).

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해안방재림(海岸防災林)의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용자 중 농작물 재해보험이 적용되는 보험목적물을 재배하는 자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함(안 제33조).

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매년 간척지별로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간척지별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척지”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하 “농지관리기금”이라 한다)으로 공유수면 또는 간석지(干潟地)[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간조수위선(干潮水位線) 사이를 말한다]를 매립 또는 배수(排水)하여 새롭게 조성한 토지를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3. “간척지활용사업”이란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용도로 간척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복합곡물단지
 - 나. 원예단지
 - 다. 채종(採種)단지
 - 라. 친환경축산단지
 - 마. 관광농업단지
 - 바. 농식품가공 및 물류지원단지
 - 사. 생태환경단지
 - 아. 농축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단지
 - 자.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의 이용
4.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이란 간척지활용사업을 위하여 설정된 구역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5.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6.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간척지는 토양특성, 배수여건,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업의 규모화와 선진화를 위한 영농단지 및 첨단농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농업 및 관련 산업에 활용되어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의 내용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종합계획 수립·시행

제5조(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5년 마다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간척지별 농업적 이용에 따른 기본방향 및 목표
2. 농업의 국내외 여건 변화와 전망
3. 농업적 이용의 용도별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방법
5. 환경보호와 경관보존에 관한 계획
6. 자연재해 예방 대책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7. 재원조달계획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과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간척지의 용도별 입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범위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간척지운영위원회) ①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간척지운영위원회를 둔다.

1.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변경지정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해제에 관한 사항
5. 제27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 등

제8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간척지활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목적
3. 간척지활용사업의 내용 및 기간
4. 간척지활용사업의 효과
5.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6.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7.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8. 환경보호와 경관보존에 관한 계획
9. 자연재해 예방 대책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있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지역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주민의견청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간척지활용사업계획안을 작성하여 3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열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해제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취소) ① 간척지활용사업은 국가가 시행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3.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6.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민간기업

② 사업시행자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척지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간척지활용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7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

3. 사업시행자의 부도·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간척지활용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명칭·목적·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4. 계획평면도 및 설계도서
5. 단계별 조성계획서(간척지활용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사업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6.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7. 조성된 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계획서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행위 등의 제한) ①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자갈·모래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 식물재배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그 대상행위 등이 간척지활용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이 지정·고시될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 수행을 위한 조사·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을 변경·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③ 해뜨기 전 또는 해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간척지활용사업이 예정된 공유수면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권리를 가진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수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제14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물건 등에 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 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2.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면허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6.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 점용의 허가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9.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10.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1. 「산림보호법」 제9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신고와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13.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 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석허가 및 토사채취신고
14.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등 허가
15. 「수도법」 제17조·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협의·인가와 같은 법 제52조·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1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18.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19.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심사,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의 신고
2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1.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
22. 「하천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을 제8조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수립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8조(부담금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척지활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및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같은 법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할 경우에 한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8조에 따른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0조(기반시설의 설치) ①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은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한다. 다만, 사업시행자 등의 요청으로 전기간선시설을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땅속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2분의 1의 비율로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시설의 설치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그 공사가 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확인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그 준공검사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범위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22조(조성토지 등의 사용·처분) ①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에서 정한 조성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계획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매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 또는 매각에 관한 업무를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 또는 임대·매각하는 조성토지 등의 용도, 임대·매각의 절차·방법 및 대상자, 위탁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간척지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매립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농업법인에 대하여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제4장 간척지의 관리 및 운영

제23조(관리권자 및 관리기관) ①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관리권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되며, 관리권자는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를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간척지의 임대 안내 및 상담

2. 임대계약의 체결

3. 이용자(제22조에 따라 간척지를 농업적 이용 목적으로 사용 또는 임대·매입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권리 보호

4. 공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
5.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영농기술 및 경영지도 등의 지원
6.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는 업무
7.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관리기관은 도로, 공용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공동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로부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제24조(임대차계약 등) ① 제22조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과 임대차에 관한 계약(이하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사항 중 계약기간, 임대면적, 임대료의 부과 및 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임대차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임대차계약의 해지 등) ①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임대목적과 다르게 토지를 사용한 경우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제24조제3항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4. 제33조제2항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임대차계약목적에 따른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자는 남은 업무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

우에는 그 내용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6조(공익사업으로의 이용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간척지 임대 계약해지 및 기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간척지를 양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간척지를 양도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7조(영농편의 제공)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용자의 영농편의를 위하여 간척지에 적합한 작물 및 품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에 적합한 작물과 품종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 내용과 작물과 품종에 관한 재배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를 반영하여 2년 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의 재배작물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재배작물과 품종, 재배방식, 작물관리 방법 등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 및 보급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국가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도로, 전기, 통신, 용·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및 기타 간척지 이용에 따른 기반시설 및 공사
2. 농산물산지유통시설 등 기타 공용시설
3. 그 밖에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간척지 농산물의 판매촉진 사업
2.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지열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간척지 농업으로의 활용 사업
3. 농산물의 수출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간척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9조(지원금의 환수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8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이 과오지급된 경우
3. 제31조를 위반한 경우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30조(조세에 대한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척지활용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법」 등 조세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31조(간척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판매 제한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용자가 제2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수출지원을 지원받아 생산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국내 판매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내 농산물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농산물의 가격안정이 필요한 경우
2. 국내 비축이나 해외 지원 등이 필요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입

하는 경우

3. 수출액이 수출지원금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농산물

② 이용자는 수출지원을 받아 생산한 농산물의 생산량·출하량 및 판매 현황 등 자료를 보관하고, 관리기관이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32조(기금 등의 활용) 이 법에 따른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재원으로 농지관리기금 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어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33조(재해예방대책 수립 및 보험가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풍, 조풍(潮風), 해일(지진해일을 포함한다), 황사 등 자연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해안방재림(海岸防災林)의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 중 「농어업재해보험법」 제5조제1호의 농작물재해보험이 적용되는 보험목적물을 재배하는 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4조(간척지의 운영 평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매년 간척지별로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간척지별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관계 서류의 열람 등)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서류의 교부에 필요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6조(보고·검사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업시행자 및 관리기관

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7조(행정처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에 포함된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2.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간척지활용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경우
4.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8조(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변경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39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4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2.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3.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13조제5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6.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그 임차자(같은 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7.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중단하지 않은 임차자
8.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 또는 용자받은 자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
 2.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판매 제한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31조제2항에 따라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24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4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간척지활용사업구역
-----	-----------------------------------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가.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실태조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안 제5조).

나. 간척지운영위원회 설치

농림수산식품부에 간척지의 효율적인 농업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간척지운영위원회를 둔다(안 제6조).

다.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투자를 지원할 수 있고, 간척지 농업의 경쟁력 강화, 간척지 농산물의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 또는 용자할 수 있다(안 제28조).

라. 부담금 감면 및 조세에 대한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척지활용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및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고(안 제17조), 조세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안 제30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및 제3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3. 미첨부 사유

가.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실태조사

안 제5조에 따라 간척지의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가 예측된다. 농림수산식품부가 10개 지구¹⁾에 대

해 간척지 활용방안 수립에 소요된 용역비용(2008년 12월~2009년 10월)으로 4억 4,0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어서, 본 추계에서는 이를 준용하여 5억원 정도의 조사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표 1] 간척지 활용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비용: 2008~2009년 (단위: 백만원)

수행기관	사업내용	사업비		
		2008	2009	합 계
농어촌연구원	- 간척지 개발 현황과 이용 여건 - 간척지 내부지역 여건분석 - 간척지별 토지이용계획 기술적 타당성 검토	8	112	120
토지임대방식 공동용역	- 간척지별 토지관리방안(농촌발전연구소)		30	30
농촌경제연구원 (공동용역)	- 농지의 중장기 수급 전망과 과제 - 간척지별 토지이용 방안(도면 작성) - 간척지별 토지이용의 기본방향 제시 - 비농업부문의 토지수요에 대한 평가와 대응 방안 - 비농업부문 양도계획 및 관리방안	2	288	290
합 계		10	430	44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2011.10)

[표 2] 간척지 이용을 위한 실태조사 소요비용 추정 (단위: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총비용	500	-	-	-	-	50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간척지운영위원회 설치

안 제6조제1항은 농림수산식품부에 간척지의 효율적인 농업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간척지운영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 동조제2항에서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농림수산식품부장관)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하고 있어 본 추계에서는 위원회 수당을 지급받는 민간위원은 10명이 위축되는 것으로 한다.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최대 15만원으로 할 경우²⁾, 회의 1회당 위원회 참석비는 15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자료 배부,

1) 영산강, 화용, 시화, 이원, 군내, 고흥, 삼산, 석문, 남포, 진촌

2)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전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 :

-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00,000원, 회의시간이 2시간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 편성

-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시 소요되는 경비,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회의안전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
기획재정부, 「2012년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 2011. 5, pp.188 참조

인쇄물 제작 등 위원회 운영비는 산림청 산지관리위원회 2010년 운영비가 위원 1인 당 12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여 1회당 180만원 정도(위원수 15인 가정)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 및 간척지 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회의는 분기별로 열리는 것으로 가정하고, 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보아 2017년까지 5년간 비용을 추계하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은 2017년까지 인상되지 아니할 것으로 가정하고, 위원회 운영비는 NABO 물가상승률³⁾을 고려한 경상가격 수준으로 추계한다. 제정안에 따라 간척지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경우 아래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 1,320만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6,81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표 3] 간척지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비용

(단위: 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위원 참석비	600	600	600	600	600	3,000
위원회 운영비	720	740	762	783	805	3,810
총비용	1,320	1,340	1,362	1,383	1,405	6,81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다.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 지원

안 제28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투자 및 운영자금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정소요가 예측된다.

현재 간척지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2012년도 예산안은 134억원이 반영되었는데, 세부사업별로 보면 농지관리기금에서 지원되는 간척지농지활용지원⁴⁾에 49억 4,400만원,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간척농지임대지원(유지관리)⁵⁾에 58억 9,900만원, 농특회계에서 지원되는 간척농지임대지원(보수보강)⁶⁾에 26억 100만원이다.

그러나 위의 기존사업 외에 안 제9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서 간척지 개발 및 농산물 가공시설, 기존 농기계 도로 확대 등과 같은 사업이 확대되어, 동 조항에 근거

3) 소비자물가 전망 : 2011년 4.4%, 2012년 3.6%, 2013년 2.8%, 2014년 2.9%, 2015년 2.8%, 2016년 이후는 2.8% 적용함(국회예산정책처, 「2011~2015년 경제전망」, 2011. 10. p.16)

4) 경쟁력제고(3200)-경쟁력제고(3240)-간척농지활용지원(320)

5) 농업생산기반확충(4000)-농어촌공사시설관리지원(4037)-수리시설유지관리(306): 간척농지임대지원(유지관리)

6) 농업생산기반확충(4000)-수리시설개보수(4033)-수리시설개보수(700) : 간척농지임대지원(보수보강)

한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현 시점에서 전체적인 개발 규모 및 세부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으므로, 투입되는 비용을 기술적으로 추계하기는 곤란하다.

라. 부담금 감면 및 조세에 대한 특례

안 제17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척지활용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및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고, 안 제30조는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법」 등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함에 따라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그러나 본 법안 시행으로 인한 세수감소효과의 추계를 위해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법」에서 각각 감면의 대상, 감면내용과 방법이 정해진 후에 비용추계가 가능하다. 특히 감면 대상 세목과 과세표준, 세율이 정하여 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세수 감소 효과에 대한 추계가 불가능하다.

4. 작성자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2팀

팀 장 임재봉

예산분석관 여은구

(788-4742, bce2@nabo.go.kr)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최인기의원 대표발의

2011. 11.

농림수산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지성배
(입법조사관 황선호)

I. 제안경과

최인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2011년 11월 4일 제안되어 같은 달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간척지의 경우 농지확보 등 농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성목적과 다르게 이용되는 사례가 많을 뿐만 아니라 해당 매립사업으로 피해를 입는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피해농어업인을 보호하며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간척지를 농업의 규모화를 위한 영농단지 및 선진화를 위한 첨단농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농업 및 관련 산업에 활용하도록 하며, 간척지활용사업에 국가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III. 주요내용

-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5년 마다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간척지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및 제7조).
- 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활용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며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10조).
- 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간척지

활용사업계획안을 작성하여 3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열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9조).

라. 간척지활용사업은 국가가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협동조합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간척지활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척지활용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및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바.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은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하고, 사업시행자 등의 요청으로 전기간선시설을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땅속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2분의 1의 비율로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20조).

사.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에서 사용 및 처분계획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매각하되 해당 매립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농업법인에 대하여는 우선 임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아.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관리권자는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되며, 관리권자는 한국농어촌공사를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간척지의 임대 안내 및 상담, 임대계약의 체결, 이용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23조).

자.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은 이용자가 임대목적과 다르게 토지를 사용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용자의 영농편의를 위하여 간척지에 적합한 작물 및 품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 대하여 간척지 농산물의 판매 촉진 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28조).

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용자에 대하여 수출지원을 지원받아 생산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국내 농산물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농산물의 가격 안정이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국내 판매를 제한할 수 있고, 수출 지원을 받아 생산한 농산물의 생산량·출하량 및 판매현황 등 자료를 보관하도록 하며,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재원으로 농지관리기금 또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및 제32조).

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해안방재림(海岸防災林)의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용자 중 농작물 재해보험이 적용되는 보험목적물을 재배하는 자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함(안 제33조).

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매년 간척지별로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간척지별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IV. 검토의견

1. 법률 제정의 필요성

정부는 1965년부터 2020년까지 총 135천ha의 간척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2010년 말까지 94천ha의 간척지를 준공하였고 나머지 41천ha는 현재 공사중에 있는 바,

준공된 94천ha의 간척지 중 81천ha는 매각되어 주로 벼 재배로 활용되고 있고 13천ha는 미처분된 상태임.

정부는 현재 공사 중인 41천ha의 간척지 중 18천ha를 농업용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2018년까지 현재 준공 후 미처분된 13천ha를 합쳐 총 31천ha를 농업 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임.

그런데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간척지에 대하여 기존 수도작 위주에서 벗어나 원예단지, 친환경축산단지, 농축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 시설이 결합된 복합단지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간척지의 농업 목적 사용 계획>

(단위 : ha)

행정구역	지구명	간척지 면적(A)	간척지 활용				기본 구상* (C)	미활용 면적 (D=A-B-C)	
			임대*	일시 사용*	임시 사용*	계(B)			
합 계		30,965	5,086	2,712	2,063	9,861	2,208	18,896	
준공완료		12,803	5,086	2,712	1,350	9,148	713	2,942	
경기	안산	시 화 2	647	-	-	-	-	647	
충남	당진	석 문	1,908	1,488	-	-	1,488	420	
	보령	남포부사	823	-	655	-	655	168	
	태안	이 원	815	-	-	-	-	815	
전남	고흥	고 흥	2,057	100	1,515	-	1,615	442	
	진도	군내·보전	691	-	542	-	542	149	
	장흥	삼 산	283	210	-	-	210	73	
	영암	영암유휴지	419	228	-	-	228	191	
	해남	영산강Ⅲ	5,160	3,060	-	1,350	4,410	713	37
시행중		18,162	-	-	713	713	1,495	15,954	
경기	화성	화 용	4,482	-	-	552	552	795	3,135
	안산	시 화	2,989	-	-	161	161	-	2,828
전북	김제 부안	새만금	8,570	-	-	-	700	7,870	
전남	해남	영산강Ⅲ	2,121	-	-	-	-	2,121	

* 임대(조사료 644ha, 무화과 5ha), 일시사용(벼 7,335ha), 기본구상(대규모농어업회사 1,403ha, 바다농장 795ha)

<대규모 간척지 활용방안 고시('10.5)에 따른 지구별 특성화 방향>

지구명	특성화 방향	지구명	특성화 방향
화 용	축산·채종, 관광 농업복합단지	고 흥	침단수출원에·바이오에너지단지
시 화	근교농업·침단수출원예단지	군 내	기능성 특수미 생산단지
석 문	채소·과수·원예 등 채종단지	보 전	기능성 특수미 생산단지
이 원	수출·관광용 화훼특화단지	영산강	특화작목 생산·가공단지
남 포	친환경·고품질 미곡생산단지	새만금	선진농업단지
삼 산	친환경축산단지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활성화하고 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간척지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제정안은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간척지를 농업과 그 관련 산업에 활용하도록 하며, 국가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피해를 입는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2. 제정안의 주요 내용

제정안은 총 43개조와 부칙을 통해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바,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간척지운영위원회 설치, 간척지활용사업계획의 수립과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간척지활용사업의 실시,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 및 처분, 해당 간척지 매립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농업법인에 대한 우선 임대, 간척지에 적합한 작물 및 품종 선택 지원,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공공시설의 우선적 지원, 간척지 이용자에 대한 시설 및 운영자금의 지원, 수출지원금을 받아 생산한 농산물의 국내 판매 제한, 간척지 이용자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규정하고 있음.

<법률안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제1조 및 제2조	○법 제정 목적, 정의
제5조 및 제7조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간척지운영위원회 설치
제8조 및 제10조	○간척지활용사업계획의 수립과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제11조 및 제12조	○간척지활용사업 시행자와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의 수립
제17조 및 제18조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 건축 특례 ○부담금 감면
제20조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시설 설치비용의 공급자 부담
제22조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 및 처분 ○해당 매립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농업 법인에 대한 우선 임대
제23조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
제24조 및 제25조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
제27조 및 제28조	○간척지에 적합한 작물 및 품종 선택 지원 ○간척지 이용자에 대한 시설 및 운영자금의 지원,
제31조 및 제32조	○수출지원금을 받아 생산한 농산물의 국내 판매 제한 ○농지관리기금,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사용
제33조	○자연재해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대책의 수립·시행 ○간척지 이용자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의무화
제34조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평가 및 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3. 정의 규정(안 제2조)

제정안은 법 적용이 되는 “간척지”를 농지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된 간척지로 한정하고, “간척지활용사업”, “간척지활용사업구역” 등의 정의를 신설하여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 적용에 따른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 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제정안은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간척지활용사업”이라는 용어를 신설하고, 이에 대하여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하여 복합곡물단지, 원예단지, 채종(採種)단지, 친환경축산단지, 관광농업

단지, 농식품가공 및 물류지원단지, 생태환경단지, 농축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단지 등의 용도로 간척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간척지활용사업의 대상용도로 규정된 “복합곡물단지”, “관광농업단지”, “농식품가공 및 물류지원단지” 등은 명확한 법률적 정의가 없어 전반적으로 개념과 범위가 추상적이고 불분명하여 해석의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고, “농축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단지”의 경우에는 범위가 다소 포괄적이어서 간척지활용사업의 대상용도로 규정된 다른 단위들을 포함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또한, “생태환경단지” 역시 명확한 개념이 없으나 제정안의 대상인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과는 그 관계가 다소 미약한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이 제정안에서 신설한 “간척지활용사업”의 정의 규정은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등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5조)

제정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5년 마다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은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우선, 제정안은 제5조에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모두 규정하고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수립·시행의 근거만을 마련하고 있으나,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종합계획의 수립 규정을 두고 있는 다른 입법례⁷⁾를 보면,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의 수립주체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에서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의 견
<p>제5조(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5년마다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8. (생략)</p> <p>③ (생략)</p> <p>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제5조(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 ----- ----- ----- ----- -----.</p> <p>② ----- -----.</p> <p>1. ~ 8. (제정안과 같음)</p> <p>③ (제정안과 같음)</p> <p>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p>

7) 「김치산업 진흥법」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실태조사(안 제6조)

제정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과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간척지의 용도별 입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간척지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계획 등의 간척지 관련 시책을 수립함으로써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한 간척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임.

제정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과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다 효과적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서는 실태조사의 목적에 시행계획도 포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정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조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정안은 제39조에서 권한의 위임·위탁에 대한 일반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문의 간결화와 중복성 방지를 위해 실태조사 업무의 위탁규정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제6조(실태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과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	제6조(실태조사) ① ----- -- 종합계획, 시행계획, -----

<p>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간척지의 용도별 입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⑤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범위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 ----- -----.</p> <p>② (제정안과 같음) <삭제></p> <p>③ (제정안 제5항과 같음)</p>
--	--

6. 간척지운영위원회(안 제7조)

제정안은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간척지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바,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 정책을 법적기구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으로써 정책의 공공성과 합리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임.

제정안은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고 있는 바, 질 높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봄.

또한 제정안은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등의 위원회 정원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대상과 임명 또는 위촉의 주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원회의 구성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동 내용을 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의 견
<p>제7조(간척지운영위원회) ①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간척지운영위원회를 둔다.</p> <p>1. ~ 2. (생략)</p> <p><신설></p> <p>3. 제8조에 따른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변경지정에 관한 사항</p> <p>4. 제10조에 따른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해제에 관한 사항</p> <p>5. 제27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p> <p>6. 그 밖에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p> <p>②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p> <p><신설></p> <p>③ 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조(간척지운영위원회) ① -----</p> <p>-----</p> <p>-----</p> <p>-----</p> <p>1. ~ 2. (제정안과 같음)</p> <p>3.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p> <p>4. (제정안 제3호와 같음)</p> <p>5. (제정안 제4호와 같음)</p> <p>6. (제정안 제5호와 같음)</p> <p>7. (제정안 제6호와 같음)</p> <p>② (제정안과 같음)</p> <p>③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간척지 활용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④ (제정안 제3항과 같음)</p>

7.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안 제8조)

제정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간척지활용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그 내용을 해당 지역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은 대부분의 토지이용 관련 법률⁸⁾에서 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때는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고 열람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되는 개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간척지활용사업의 경우에도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지역주민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더불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보임.

-
- 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받은 경우에는 관할 광역시장·도지사(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공동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외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제39조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안자의 신청으로 개발구역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지사와 공동으로 제안된 개발구역을 제1항에 따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나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경우로서 시장·군수가 미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7조(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구역(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있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르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주민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간척지활용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의 수립(안 제11조 및 제12조)

제정안은 간척지활용사업을 국가가 시행하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 지방공기업,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민간기업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간척지활용사업 시행자가 법령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어렵고, 개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제약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제정안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승인한 실시계획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는 바,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보임.

다만, 제정안은 실시계획의 수립주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시행자로 하여 사업시행자인 국가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간척지활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의 경우에도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제12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u>사업시행자는</u> ----- ----- ----- ----- <u>수립하여야 한다.</u> 이 경우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

② ~ ⑤ (생략)	정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 ⑤ (제정안과 같음)
------------	--

9. 인·허가 등의 의제(안 제16조)

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허가 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의제하고 있음.

제정안은 개별 법령에 따른 허가등으로 인해 사업시행자가 간척지활용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함을 고려하여 허가등의 의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간척지활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규정은 각각의 인·허가별로 담당하는 부처가 달라 여러 부처와 연관된 사항이므로 관련부처들로부터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보임.

한편, 제정안은 허가등 중 하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0조⁹⁾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규정하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0599호, 2012. 4.15 시행)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

고 있으나,

「국토계획법」이 금년 4월 14일 개정되어 2012년 4월 15일부터 “도시관리 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변경될 예정이므로 동 내용에 맞추어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제16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 2. (생략)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	제16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 ----- ----- ----- ----- ----- ----- 1. ~ 2. (제정안과 같음) 3. ----- ----- 도시·군관리계획-----

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52조제1항제4호 중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
2. 제52조제1항제5호의 사항
3. 제52조제1항제6호 중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 ④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된다) 그 도시·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대도시 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대도시 시장”으로,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대도시에 두는 경우를 말한다)”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대도시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대도시 시장”으로 본다.

<p>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p> <p>4. ~ 22. (생략)</p> <p>② (생략)</p>	<p>-----</p> <p>4. ~ 22. (제정안과 같음)</p> <p>② (제정안과 같음)</p>
---	---

10. 「국토계획법」에 대한 특례 및 부담금의 감면(안 제17조 및 제18조)

제정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간척지활용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76조¹⁰⁾에도 불구하고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

-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④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맞아야 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서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⑥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 보전, 자연환경 보전, 해양환경 보전 또는 산림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간척지활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및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각종 부담금감면 관련 규정>

관련법	명칭	내용	감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개발 부담금	해당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①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감면 ②「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은 100분의 50 경감 등
농지법 제38조	농지보전 부담금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 부과	①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산업 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 전용
초지법 제23조	대체초지 조성비	초지전용에 대한 부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등 특별법에 의한 감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교통유발 부담금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	- 주한 외국 정부기관 - 주거용 건물 -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우선 「국토계획법」에 대한 특례 규정은 현재 간척지가 대부분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서 「국토계획법」 제76조에 따라 건축물, 기타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이 제한되는 바,

이로 인해 간척지활용사업의 추진이 제약될 우려가 있어 사업에 필요한 건축물 및 시설의 설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부담금의 감면 규정은 간척지활용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여 민간기업 등 사업시행자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부담금의 감면은 「농지법」 11) 등 부담금의 개별 근거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에 포함이 되어야만 가능하므로 제정안에 따른 시설 등이 그 범위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동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개별 근거법령을 개정하여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11. 기반시설의 설치(안 제20조)

제정안은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경우 해당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되, 사업시행자 등의 요청으로 전기 간선시설을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땅속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2분의 1의 비율로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간척지는 새로 조성된 토지로서 전기·통신·가스 및 난방 등의 기반시설이 미비하고 사업 규모가 방대하여 기반시설 설치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어야 함.

이로 인해 간척지에 기반시설 설치 시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제정안은 기반시설의 종류, 비용부담 주체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시행자 및 기반시설 공급자 간 분쟁 발생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11) 「농지법」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12. 조성토지 등의 사용·처분(안 제22조)

제정안은 간척지활용사업 시행자가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실시계획에서 정한 조성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계획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매각하도록 하되, 해당 매립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농업법인에 대하여 우선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은 간척지 조성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경우 생활터전을 상실하여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우선 임대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제정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활터전을 잃는 등 피해를 입은 인근 농어업인의 구제를 위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이들에게 우선 임대하도록 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발의(김영록 의원 대표발의, 2010.11.11)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바 있음.

심의 결과 법을 개정하는 대신 동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매립지 등의 임대대상자격자에 해당 매립지 등 조성사업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으로 구성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추가하기로 하였는바,

제정안은 이보다 더 나아가 해당 매립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으로 구성되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우선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에게 특별한 정책적 배려를 함으로써 연고지에서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영위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보다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3.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안 제23조)

제정안은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관리권자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를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관리기관은 간척지의 임대 안내 및 상담, 임대계약의 체결, 공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되, 도로, 공용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공동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간척지를 농업적 이용 목적으로 사용 또는 임차·매입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하 “이용자”라 함)으로부터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은 공동시설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자에 대하여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공동부담금은 이용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부과 대상과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제정안은 공동부담금의 부과대상을 “도로, 공용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공동시설”로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부과대상을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부과기준, 방법 등의 세부내용을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기보다는 다른 입법례¹²⁾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1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공동부담금) ② 제53조에 따른 관리기관은 물류단지 안의 폐기물처리장, 가로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동부담금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공동부담금) ②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도로, 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장, 가로등,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공동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농공단지의 공동부담금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삭제<1996.12.31>

④ 제2항에 따른 공동부담금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제23조(관리권자 및 관리기관) ① ~ ②(생략) ③ 관리기관은 도로, 공용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u>공동시설</u> 의 설치·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로부터 <u>농림수산식품부령</u>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제23조(관리권자 및 관리기관) ① ~ ② (제정안과 같음) ③ ----- ----- ----- <u>농림수산식품부령</u> 으로 <u>정하는 공동시설</u> ----- ----- --- <u>대통령령</u> ----- -----.

14. 공익사업으로의 이용 등(안 제26조)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¹³⁾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간척지 임대 계약해지 및 기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용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간척지를 양도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사업을

- 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軌道)·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방풍(防風)·방화(防火)·방조(防潮)·방수(防水)·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등의 공익사업을 시행할 경우 이용자로 하여금 간척지 이용을 중단하고 국가 및 지자체로 간척지를 양도하도록 하여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그런데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로 하여금 무조건 간척지를 양도하도록 하고 양도에 대한 이용자의 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며,

제정안과 같이 국가 및 지자체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것과 관련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관련절차와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시에는 동 법률에 따라 간척지의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 시행 시 이용자로 하여금 간척지를 양도하도록 하는 동 규정은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의 견
<p>제26조(공익사업으로의 이용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간척지 임대 계약해지 및 기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간척지를 양도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국가 및 지방</p>	<p><삭 제></p>

자치단체에 간척지를 양도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15. 영농편의 제공(안 제27조)

제정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이용자의 영농편의를 위해 간척지에 적합한 작물 및 품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간척지에 적합한 작물과 품종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 작물과 품종에 관한 재배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간척지의 재배작물 품종, 재배방식, 작물관리 방법 등에 관한 연구개발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2년 마다 갱신하도록 하고 있음.

간척지는 토양 및 담수호의 염도, 토질조건, 기반시설 여건 등이 일반 농경지와 차이가 있고 불리하여 재배 작물 및 품종 선택에 어려움이 있는 바, 이에 제정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간척지에서 성장할 수 있는 재배작물 및 품종 등을 연구하고 보급하여 이용자가 간척지에 적합한 작물과 품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보임.

* 현재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간척지농업과에서 간척지의 토양조사, 토양환경개선, 담수호 수질보전연구, 간척지 이용 작부체계에 관한 시험연구 및 간척지 적응 작물재배법 개발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다만, 제정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간척지의 재배작물과 품종, 재배방식, 작물관리 방법 등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연구개발 및 보급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권한의 위임·위탁에 대한 일반규정을 제정안 제39조에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문의 간결화와 중복성 방지를 위해 동 위탁규정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제27조(영농편의 제공) ① ~ ② (생략) ③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간척지의 재배 작물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재배작물과 품종, 재배방식, 작물관리 방법 등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 개발 및 보급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영농편의 제공) ① ~ ② (제정안과 같음) ③ ----- ----- ----- ----- -----<후단 삭제>

16. 국가의 지원 등(안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국가는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가 및 지자체는 이용자에게 간척지 농산물의 판매촉진 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간척지 농업으로의 활용 사업, 농산물의 수출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되,

이용자가 농산물의 수출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아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국내판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은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우선 투자 실시와 그 비용, 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시설 및 운영자금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간척지활용사업 시행자와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우선, 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이용자에게 농산물의 수출활성화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동 지원금을 받아 생

산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국내 판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수출을 조건으로 지원하는 수출보조금¹⁴⁾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제정안의 이용자에 대한 수출보조금 지원 및 국내 판매 제한 규정은 수출보조금을 감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농업협정과 저촉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WTO는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995년 출범한 국제 기구로 세계무역 분쟁조정권, 관세인하요구, 반덤핑규제 등의 권한을 행사하고, 우리나라는 WTO비준안 및 이행방안이 199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가입하였음.

<WTO 농업협정 중 수출보조금 관련 규정>

제9조 감축약속 대상 수출보조금

1. 다음의 수출보조금은 이 협정에 따라 감축약속의 대상이 된다.
 - 가. 수출실적을 조건으로 제공하는 직접보조금
 - 나. 국내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목적의 판매 또는 처분
 - 다. 정부의 활동을 통하여 조성된 재원에 의한 농산물 수출에 대한 지불
 - 라. 농산물 수출에 대한 유통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한 보조금의 제공
 - 마. 수출물량에 대한 국내 운송비.
 - 바. 수출상품에 포함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 농산물보조금
2. 회원국의 양허표에 명시된 이행기간중 각 연도별 수출보조금 약속수준
3. 수출보조금 지급의 범위확대에 대한 제한과 관련된 약속은 양허표에 명시
4. 개발도상회원국은 제1항 라호 및 마호에 열거된 수출보조금과 관련된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요구되지 않음

*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그리고 제정안은 이용자에게 간척지 농산물의 판매촉진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14) WTO 농업에 관한 협정 제1조(용어의 정의) 마. “수출보조금” 은 이 협정 제9조에 열거된 수출보조를 포함하여 수출 실적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를 말한다.

“지원”이라는 개념에 “용자”라는 개념이 포함된다고 보이므로 “용자”라는 표현은 삭제하는 한편, 재정의 건전성과 다른 입법례를 고려하여“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제28조(국가의 지원 등) ① ~ ② (생략)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u>지원 또는 용자</u> 할 수 있다. 1. ~ 2. (생략) 3. <u>농산물의 수출활성화 사업</u> 4. <u>그 밖에 간척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u>	제28조(국가의 지원 등) ① ~ ② (제정안과 같음) ③ ----- ----- ----- <u>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u> -----. 1. ~ 2. (제정안과 같음) <삭 제> 3. (제정안 제4호와 같음)
제29조(지원금의 환수 등) ① 농림수산물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8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 2. (생략) 3. <u>제31조를 위반한 경우</u> ② (생략)	제29조(지원금의 환수 등) ① ----- ----- ----- ----- ----- ----- 1. ~ 2. (제정안과 같음) <삭 제> ② (제정안과 같음)
제31조(간척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판매 제한 등) ①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이용자가 제2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수출지원을 지원받아 생산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국내 판매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u>국내 농산물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농산물의 가격안정이 필요한 경우</u> 2. <u>국내 비축이나 해외 지원 등이 필요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u>	<삭 제> ② (제정안과 같음) <삭 제>

<p>경우</p> <p>3. 수출액이 수출지원금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농산물</p> <p>② 이용자는 수출지원을 받아 생산한 농산물의 생산량·출하량 및 판매현황 등 자료를 보관하고, 관리기관이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p>	
--	--

17. 기금 등의 활용(안 제28조 및 제31조)

제정안은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재원으로 농지관리기금,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은 국가가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와 간척지활용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재원의 출처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가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제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 체계의 통일성을 위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각 기금별로 근거 법률을 개정하여 “기금의 용도”에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 간척지활용사업을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18. 재해예방대책 수립 및 보험가입(안 제33조)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태풍, 조풍(潮風), 해일(지진해일을 포함한다), 황사 등 자연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해안방재림(海岸防災林)의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용자 중 「농어업재해보험법」 제5조제1호15)의 농작물재해보험이 적용되

는 보험목적물을 재배하는 자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태풍, 조풍(潮風) 등 간척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의 예방대책을 사전에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는 농작물재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철저히 방지하고 피해발생 시에는 충분한 보전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제정안은 이용자에게 농작물재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바,

간척지 이용을 조건으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이용자의 보험가입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보험가입을 의무화한 다른 입법례¹⁶⁾를 보면, 대부분 본인이 아닌 상대방이 입는 피해를 안정적으로 보전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 등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보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5) 제5조(보험목적물)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작물재해보험: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

16)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보험가입) ①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수련시설의 종류 및 보험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보험 가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공급·사용하는 도시가스의 사고 또는 가스시설의 시공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도시가스사업자

2.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3.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공자

「말산업 육성법」 제15조(승마시설의 신고 등) ③ 승마시설의 운영자는 승마시설의 운영과 관련되거나 승마시설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9. 청문(안 제38조)

제정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간척지활용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취소 등으로 인해 간척지활용사업 시행자를 변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청문을 하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간척지활용사업 시행자를 변경하는 처분을 하기에 앞서 사업시행자에게 청문을 실시하여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고 처분의 필요성·타당성을 판단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보임.

다만, 제정안은 간척지활용사업 시행자를 변경하는 처분에 대해서만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정안 제37조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사업시행자에게 제정안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에 포함된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업시행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처분이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의 실질적인 권리보호 차원에서 동 처분이나 조치에 대해서도 사전에 청문을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제38조(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변경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8조(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조치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변경 2. 제3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3. 제37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

20. 벌칙 및 과태료(안 제41조 및 제43조)

제정안은 간척지활용사업 시행자, 이용자 등이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칙이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일부 의무 위반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법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제정안의 벌칙 및 과태료 부과대상>

구 분	부 과 대 상
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자갈·모래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 식물재배 등의 행위를 한 자와 이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부정한 행위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그 임차자와 사업을 중단하지 않은 임차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 또는 용자받은 자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시행자의 토지 출입 또는 일시사용 등을 방해 또는 거부한 자
	농산물의 수출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은 농산물에 대한 판매제한 조치를 따르지 않은 자와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사업시행자 및 관리기관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와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벌칙부과 대상으로 제정안은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안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자갈·모래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 식물재배 등의 행위를 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얻어 동 행위를 한 자를 추가할 필요가 있고,

제정안 제37조에 따라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에 포함된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시행자도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과태료 부과대상으로는 우선 사업시행자가 간척지활용사업이 예정된 공유수면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때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수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할 경우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한편, 제정안 제43조는 제2호와 제3호에서 제31조에 따른 농산물의 수출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은 농산물에 대한 판매제한 조치를 따르지 않은 자,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를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 판매제한 조치 규정은 WTO협정과 상충될 소지가 있어 삭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판매제한 조치와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동 규정들도 일관성 차원에서 삭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제4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4. 제13조제5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1조(벌칙) 다음----- ----- ----- 1. ~ 3. (제정안과 같음)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5. (제정안 제4호와 같음)

<p>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 24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p> <p>6.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그 임차자(같은 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제외한다)</p> <p>7.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중단하지 않은 임차자</p> <p>8.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및 운영 자금을 지원 또는 용자받은 자</p>	<p>6. (제정안 제5호와 같음)</p> <p>7. (제정안 제6호와 같음)</p> <p>8. (제정안 제7호와 같음)</p> <p>9. (제정안 제8호와 같음)</p> <p>10. 제37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생략)</p> <p>2.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판매 제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p> <p>3. 제31조제2항에 따라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p> <p>4.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p> <p>5.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제43조(과태료) ① ----- ----- -----.</p> <p>1. (제정안과 같음)</p> <p>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5항에 따른 행위를 가로막거나 방해하는 행위 <삭 제></p> <p>3. (제정안 제4호와 같음)</p> <p>4. (제정안 제5호와 같음)</p>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3.1.18] [법률 제11170호, 2012.1.17, 제정]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044-201-1717, 17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척지”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하 “농지관리기금”이라 한다)으로 공유수면 또는 간석지(干潟地)[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간조수위선(干潮水位線) 사이를 말한다]를 매립 또는 배수(排水)하여 새롭게 조성한 토지를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3. “간척지활용사업”이란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하여 농산물·축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간척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이란 간척지활용사업을 위하여 설정된 구역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5.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6.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간척지는 토양특성, 배수여건,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업과 그 관련 산업에 활용되어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의 내용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5년마다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간척지별 농업적 이용에 따른 기본방향 및 목표
2. 농업의 국내외 여건 변화와 전망
3. 농업적 이용의 용도별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방법
5. 환경보호와 경관보존에 관한 계획
6. 자연재해 예방 대책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7. 재원조달계획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시행계획과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간척지의 용도별 입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간척지운영위원회) ①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물부 장관 소속으로 간척지운영위원회를 둔다.

1.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변경지정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6. 제27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간척지 활용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그 밖에 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 등

제8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①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간척지활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목적
3. 간척지활용사업의 내용 및 기간
4. 간척지활용사업의 효과
5.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6.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7.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8. 환경보호와 경관보존에 관한 계획
9. 자연재해 예방 대책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있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지역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주민의견청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간척지활용사업계획안을 작성하여 3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열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해제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변경) ① 간척지활용사업은 국가가 시행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3.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6.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민간기업

② 사업시행자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척지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간척지활용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4조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
3. 사업시행자의 부도·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간척지활용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실시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명칭·목적·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4. 계획평면도 및 설계도서
5. 단계별 조성계획(간척지활용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사업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6.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7. 조성된 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행위 등의 제한) ① 간척지활용사업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자갈·모래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 식물재배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그 대상 행위 등이 간척지활용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이 지정·고시될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 ⑦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 수행을 위한 조사·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흙·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제거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해뜨기 전 또는 해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간척지활용사업이 예정된 공유수면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권리를 가진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수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제14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물건 등에 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해제·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6.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9.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10.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1. 「산림보호법」 제9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13.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토사채취신고
 14.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15.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협의·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1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18.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19.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의 신고
 2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1.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2.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을 제8조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수립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8조(부담금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척지활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및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같은 법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할 경우에 한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유지·공유지를 제외한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8조에 따른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0조(기반시설의 설치) ①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은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한다. 다만, 사업시행자 등의 요청으로 전기간선시설을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땅속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시설의 설치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준공검

사를 받아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그 공사가 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확인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그 준공검사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범위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22조(조성토지 등의 사용·처분) ①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실시계획에서 정한 조성된 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매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 또는 매각에 관한 업무를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매각하는 조성토지 등의 용도, 임대·매각의 절차·방법 및 대상자, 위탁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시행자 또는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매립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농업법인에 대하여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제4장 간척지의 관리 및 운영

제23조(관리권자 및 관리기관) ①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관리권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되며, 관리권자는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를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간척지의 임대 안내 및 상담
2. 임대계약의 체결

3. 이용자(제22조에 따라 간척지를 농업적 이용 목적으로 사용 또는 임차·매입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권리 보호
 4. 공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
 5.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영농기술 및 경영지도 등의 지원
 6.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③ 관리기관은 도로, 공용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제24조(임대차계약 등) ① 제22조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과 임대차에 관한 계약(이하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임대차계약 사항 중 계약기간, 임대면적, 임대료의 부과 및 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임대차계약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임대차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임대차계약의 해지 등) ①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임대목적과 다르게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제24조제3항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4. 그 밖에 임대차계약목적에 따른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자는 남은 업무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6조(영농편의 제공)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용자의 영농편의를 위하여 간척지에 적합한 작물 및 품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에 적합한 작물과 품종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 작물과 품종에 관한 재배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를 반영하여 2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 재배작물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재배작물과 품종, 재배방식, 작물관리 방법 등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7조(국가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도로, 용수·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제20조에 따른 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은 제외한다) 및 그 밖의 간척지 이용에 따른 기반시설 및 공사
2. 농산물산지유통시설 등 그 밖의 공용시설
3. 그 밖에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간척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판매촉진 사업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를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에 활용하는 사업
3. 그 밖에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8조(지원금의 환수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이 과오지급된 경우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29조(기금 등의 활용) 이 법에 따른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재원으로 농지관리기금 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30조(재해예방대책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풍, 조풍(潮風), 해일(지진 해일을 포함한다), 황사 등 자연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해안방재림(海岸防災林)의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1조(간척지의 운영 평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매년 간척지별로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간척지별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관계 서류의 열람 등)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요청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서류의 교부에 필요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3조(보고·검사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업시행자 및 관리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4조(행정처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에 포함된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2.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간척지활용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3.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간척지활용사업을 시행한 경우
- 4.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간척지활용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5조(청문) 농림수산물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조치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변경
- 2. 제3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 3. 제34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

제3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물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농림수산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7조(별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 2.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3.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5. 제13조제5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7.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그 임차자(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8.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중단하지 아니한 임차자
9.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
10. 제34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5항에 따른 행위를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3.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1170호, 2012.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0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간척지활용사업구역
-----	-----------------------------------	-----------

4 심사일정 등 추진경과

□ 특별법 제정

- '11.11. 4 : 최인기 의원발의(국회의안 제출)
- '11.11. 4.~11.14 : 관계부처 의견조회 실시
- '11.11.17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 '11.11.12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심의가결
- '11.12.27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 가결
- '11.12.28 :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가결
- '11.12.29 : 본회의 의결
- '12. 1.17 : 법률 제11170호로 공포(시행: 공포 후 1년)

□ 하위법령 제정

- '12. 5. ~ 7 : 하위법령 제정안 입안 및 법령정비협의회 심의
- '12. 7. 5. ~ 7.16 : 관계부처 협의
- '12. 7.19 ~ 8.28 : 입법예고
- '12. 9. ~ 10 : 규제심사
- '12. 11. ~ 12 : 법제처 심사
- '13. 1.11 : 차관회의
- '13. 1.14 : 국무회의
- '13. 1.17 : 시행령 공포(대통령령 제24321호)
- '13. 1.23 : 시행규칙 공포(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8호)

II . 조문별 해설

1. 제1장 총칙
 2.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3. 제3장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 등
 4. 제4장 간척지의 관리 및 운영
 5. 제5장 보칙
 6. 제6장 벌칙
- ※ 별표 및 별지서식

간척지법 해설집

제1장 총 칙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 의

-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간척지에 대하여 기존 수도작 위주에서 벗어나 원예단지, 친환경축산단지, 농축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이 결합된 복합단지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간척지를 농업과 그 관련 산업에 활용하도록 하며, 국가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 이 법의 궁극적인 목적임
- 따라서 간척지의 농업적 활용은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피해농어업인을 보호하며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간척지를 농업의 규모화를 위한 영농단지 및 선진화를 위한 첨단농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농업 및 관련 산업에 활용하도록 하며, 간척지활용사업에 국가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목적에 반영함

현 황

- 1965년부터 2020년까지 총 135천ha의 간척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2011년 말까지 95천ha의 간척지를 준공하였고 나머지 40천ha는 현재 공사 중에 있음
- 준공된 95천ha의 간척지 중 82천ha는 매각되어 주로 벼 재배로 활용되고 있고 13천ha는 미처분된 상태임
- 현재 공사 중인 40천ha의 간척지 중 17천ha를 농업용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2020년까지 현재 준공 후 미처분된 13천ha를 합쳐 총 30천ha를 농업 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임

(단위 : 천ha)

구 분	대상 면적	준 공			시행중	비 고
		소 계	처 분	미처분		
계	135	95	82	13	40*	* 타용도 23, 농업 17
정부 시행	95	55	42	13	40*	* 새만금 28.3 포함
민간 시행	40	40	40		-	서산 11, 김포 2

- 농업용으로 관리해야 하는 간척지는 총 30천ha

구 분	지구명	위 치		면 적 (ha)			사업기간	시 행 자
		도	시·군	계	농업	비농업		
계				54,379	30,394	23,985		
준공후 미처분	소계			14,180	13,225	955		
	석 문	충 남	당 진	2,923	1,968	955	'87~'05	당 진 군
	남 포	"	보 령	825	825	-	'85~'07	보 령 시
	고 흥	전 남	고 흥	2,057	2,057	-	'91~'08	고 흥 군
	군 내	"	진 도	464	464	-	'91~'08	진 도 군
	보 전	"	진 도	213	213	-	'87~'96	진 도 군
	이 원	충 남	태 안	847	847	-	'90~'09	태 안 군
	삼 산	전 남	장 흥	283	283	-	'97~'09	장 흥 군
	시 화	경 기	화 성	745	745	-	'98~'10	농어촌공사
	(영산강III-1)	"	영암·해남	2,949	2,949	-	'97~'08	농어촌공사
(영산강III-2)	"	해 남	2,874	2,874	-	'97~'11	농어촌공사	
시행중	소계			40,199	17,169	23,030		
	화 옹	경 기	화 성	4,482	4,482	-	'91~'16	농어촌공사
	시 화	"	화성·안산	2,891	2,891	-	'98~'16	농어촌공사
	영산강III-1	"	영암·해남	2,860	144	2,716	'85~'15	농어촌공사
	영산강III-2	"	해 남	1,666	1,082	584	'89~'14	농어촌공사
	새만금	전 북	군산·김제·부안	28,300	8,570	19,730	'91~'20	농 식품부

- * 주1) 영산강III-1 간척지 면적중 준공후 처분이 완료된 2,151ha는 제외
- * 주2) 비농업 활용 : 새만금 19,730ha(산업용지 등), 영산강 3,300ha(기업도시), 석문 955(산단)
- * 주3) 면적은 방조제, 방수제, 농로, 용·배수로 등 공공용지 등을 포함한 면적

<대규모 간척지 활용방안 고시('10.5)에 따른 지구별 특성화 방향>

지구명	특성화 방향	지구명	특성화 방향
화 용	축산·채종, 관광 농업복합단지	고 흥	침단수출원에·바이오에너지단지
시 화	근교농업·침단수출원에단지	군 내	기능성 특수미 생산단지
석 문	채소·과수·원에 등 채종단지	보 전	기능성 특수미 생산단지
이 원	수출·관광용 화훼특화단지	영산강	특화작목 생산·가공단지
남 포	친환경·고품질 미곡생산단지	새만금	선진농업단지
삼 산	친환경축산단지		

입법례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이용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고 농어촌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하여 농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농수산생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업·농어촌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제정 추진경과》

- '11.11. 4 : 최인기 의원발의(국회의안 제출)
- '11.11. 4.~11.14 : 관계부처 의견조회 실시
- '11.11.17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 '11.11.12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심의가결
- '11.12.27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 가결
- '11.12.28 :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가결
- '11.12.29 : 본회의 의결
- '12. 1.17 : 법률 제11170호로 공포(시행: 공포 후 1년)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척지”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하 “농지관리기금”이라 한다)으로 공유수면 또는 간석지(干潟地)[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간조수위선(干潮水位線) 사이를 말한다]를 매립 또는 배수(排水)하여 새롭게 조성한 토지를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3. “간척지활용사업”이란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하여 농산물·축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간척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이란 간척지활용사업을 위하여 설정된 구역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5.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6.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시행령

제2조(간척지활용사업의 목적)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농산물·축산물 생산 단지의 용도
2. 농산물·축산물 가공 단지의 용도
3. 농산물·축산물 저장 단지의 용도
4. 농산물·축산물 유통시설 단지의 용도
5. 「말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말산업과 관련된 시설의 용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도에 필요한 시험·연구 및 교육·훈련 시설의 용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용도에 따라 설치된 시설 등을 활용한 「농어촌 정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라 한다)의 용도

의 의

- 현재 다른 법률에서 정의되고 있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의와 같은 범위로 규정하여 일반 국민의 법 이해에 혼란을 방지함
- “간척지”를 농지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된 간척지로 한정하고, “간척지 활용사업”, “간척지활용사업구역” 등의 정의를 신설하여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 적용에 따른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 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간척지활용사업”은 농산물·축산물 생산 단지의 용도, 농산물·축산물 가공 단지의 용도, 농산물·축산물 저장 단지의 용도, 농산물·축산물 유통시설 단지의 용도, 말산업과 관련된 시설의 용도, 이러한 용도에 필요한 시험·연구 및 교육·훈련 시설의 용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용도로 간척지를 개발하는 것을 말함

입법례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이란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4.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기업도시개발구역”이란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기업도시개발사업”이란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인용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 가. 농업: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농업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③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상법」 제17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원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출자, 사업,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9조까지, 제56조 및 제58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⑦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 ③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 ④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로 하되, 어업인이나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 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 ⑥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출자, 부대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을 준용하고 어업회사법인의 어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⑧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말산업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말산업"이란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나. 관광농원사업: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다. 주말농원사업: 주말영농과 체험영농을 하려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

법

제3조(기본원칙) 간척지는 토양특성, 배수여건,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업과 그 관련 산업에 활용되어야 한다.

의 의

-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간척지의 경우 농지확보 등 농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성목적과 다르게 이용되는 사례가 많아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농업과 그 관련 산업에 활용하도록 법률의 제정 이념을 명확히 함

입법례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저탄소 교통물류체계의 추진
2. 환경친화적인 교통물류체계의 추진
3. 에너지 및 자원 절약적인 교통물류체계의 추진
4. 교통물류체계의 이동성·접근성 및 안전성 향상
5. 교통수단 간,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
6. 토지 이용과 교통물류체계의 효율적인 연계

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의 내용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 의

- 개발과 관련된 규제는 현재 다수의 법령들에서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간척지 활용에 관한 일관성과 체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법적 적용의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총칙에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법률전체에 공통되는 중요사항을 명시하고, 다른 법률의 준용, 적용, 배제, 우선적용, 적용제한 및 완화된 규정을 반영하는 것임
 - 이 법에 의해 적용되는 규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도록 하고, 다른 법률에서 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이를 따르도록 함

입법례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 및 기업도시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하여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보다 우선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법

제5조(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5년마다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간척지별 농업적 이용에 따른 기본방향 및 목표
2. 농업의 국내외 여건 변화와 전망
3. 농업적 이용의 용도별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방법
5. 환경보호와 경관보존에 관한 계획
6. 자연재해 예방 대책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7. 재원조달계획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조(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시행령

2. 다른 지역과의 연계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3. 다른 개발계획과의 관련성에 관한 사항

제4조(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간척지별 농업적 이용에 따른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농업적 이용의 용도별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확정된 주요 사업계획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에 반영된 후 그 사업계획이 변경·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간척지운영위원회(이하 "간척지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의 의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5년 마다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음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간척지를 농업과 그 관련 산업에 활용하도록 하며, 국가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
- 이를 통해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피해를 입는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종합계획의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의 수립주체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규정 : 실태조사(장관) →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요구(장관) →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장관) → 중앙행정 기관 및 지자체 장과 협의(장관) →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장관, 매년 1.31일까지) →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림(장관)
- 법률의 위임에 따라 종합계획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 협의,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고시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지원코자 함

<종합계획 중 경미한 사항>

1. 간척지별 농업적 이용에 따른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농업적 이용의 용도별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확정된 주요 사업계획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에 반영된 후 그 사업계획이 변경·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현황 및 문제점

- 「대규모 간척지 활용 기본구상」을 고시('10.5월) 하여 간척지 지구별 특성화 방향, 용도별 면적 등을 정하여 간척지 이용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
- 「대규모 간척지 활용 기본구상」 고시의 법적인 근거가 미비하고, 간척지별 토지이용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는 수단 등이 명확하지 않아 간척지의 효율적인 농업적 이용에 한계가 있음
- 간척지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이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도모할 수 있음

□ 김치산업 진흥법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김치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김치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3. 김치의 품질표준화 및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4. 김치 및 김치재료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사항
5. 김치 관련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6. 김치산업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7. 김치의 소비촉진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8.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9. 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식품산업진흥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5조(종합계획의 입안) ① 해안권 또는 내륙권과 관련된 시·도지사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안(이하 "

종합계획안"이라 한다)을 해안권 또는 내륙권별로 입안하여야 한다.

1.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3. 동북아 관광휴양 거점구축에 관한 사항
 4. 미래형 항만물류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지역주력산업 등 제조업 혁신에 관한 사항
 6. 농수산업 구조 고도화에 관한 사항
 7. 도로·항만·공항·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정비와 확충에 관한 사항
 8.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9.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9의2. 해안권 또는 내륙권 인근 지역과의 산업·문화·관광 및 교통 등의 연계·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안을 입안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③ 종합계획안의 입안절차와 방법, 제1항에 따른 해안권 또는 내륙권의 지정 기준과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① 법 제4조제3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용수·에너지·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4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하천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
2. 둔치 조성 등 소하천을 중심으로 한 여가생활 공간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 내의 다른 개발계획과의 관련성에 관한 사항
4. 소하천의 정비 효과에 관한 사항

□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특별법 시행령

제4조(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안권 또는 내륙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반영된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된 주요 기반시설이 종합계획에 반영된 후 해당 사업계획이 변경·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3. 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5조(발전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10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개별 사업의 면적 또는 사업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확정된 주요 기반시설 사업계획이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후 그 사업계획이 변경·폐지됨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특구육성종합계획) ⑤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007.3.9>
2. 특구개발사업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3. 수용예정 인구수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4. 특구개발사업의 목표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구개발사업의 세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5. 지형 또는 지질 사정으로 인하여 주요 기반시설계획의 세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6.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를 변경하는 경우

⑥지식경제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을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법

제6조(실태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시행계획과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간척지의 용도별 입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거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2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척지의 토양 상태 및 농업용수 현황 등 농업적 이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여건에 관한 사항
2.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3. 간척지활용사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하다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의 의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과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간척지의 용도별 입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간척지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계획 등의 간척지 관련 시책을 수립함으로써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한 간척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보다 효과적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서는 실태조사의 목적에 시행계획을 포함함

입법례

□ 가맹사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7조(실태조사)**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조(실태조사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곤충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연구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맹사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맹사업의 시장 현황 및 영업 환경에 관한 사항

2. 가맹사업의 물류 및 정보화 환경에 관한 사항
3. 가맹사업의 인력 현황 및 그 수급 실태에 관한 사항
4. 가맹사업과 관련된 기술 현황 및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
5. 가맹사업과 관련되는 국제동향에 관한 사항
6.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거래행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가맹사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가맹사업에 관한 계획 및 정책수립과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지식경제부장관이 기본계획·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법

제7조(간척지운영위원회) ①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간척지운영위원회를 둔다.

1.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변경지정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6. 제27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간척지 활용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그 밖에 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6조(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간척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농촌진흥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간척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사장
4.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
5. 농업법인의 대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이내
6. 농업 관련 전문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이내
7. 토지 이용이나 농림 분야 등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이내

시행령

- ②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간척지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장은 간척지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⑤ 위원장이 간척지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개회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간척지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척지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 ⑧ 간척지운영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간척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이해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⑨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위원의 친족, 위원의 친족이었던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최근 2년 이내에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연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② 간척지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간척지운영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간척지운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시행령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고,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의 의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물부장관 소속으로 “간척지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 정책을 법적기구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으로써 정책의 공공성과 합리성을 강화하기 위함
-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수산물부장관이 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간척지 활용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간척지운영위원>

1. 농림수산물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간척지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농촌진흥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간척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사장
 4.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
 5. 농업법인의 대표 중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이내
 6. 농업 관련 전문가 중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이내
 7. 토지 이용이나 농림 분야 등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이내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반영을 반영하여 간척지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이해 충돌 방지 장치 마련을 권고함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 ① 특구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둔다.

1. 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특구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특구의 육성에 필요한 재정지원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5. 특구와 관련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의 의견조정
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특구의 육성에 관한 사항

② 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위원과 7인 이상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된다.

④ 당연직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된다.

⑤ 위촉위원은 특구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⑥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을 둔다

⑦ 연구개발특구위원회와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목적 등을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0조(의견청취) ① 당연직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구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6조(국가핵융합위원회) ①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하에 국가핵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2.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와 사전조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⑥ 위원회의 운영과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를 소집·주재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진술하거나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도시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정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중앙행정기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교육과학기술부차관
3. 행정안전부차관
4. 문화체육관광부차관
5. 농림수산식품부차관
6. 지식경제부차관
7. 보건복지부차관
8. 환경부차관
9. 고용노동부차관
10. 국무총리실의 차관급 공무원
11. 금융위원회부위원장

②도시개발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도시 또는 혁신도시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③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시장 및 군수는 해당 기업도시 또는 혁신도시에 관하여 도시개발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법 제39조제4항제1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도시개발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중 어느 1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도시개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도시개발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토해양부 소속공무원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한다.

⑧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도시개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시개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인 위원장이 정한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위원) ① 법 제25조제5항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외교통상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고용노동부차관 및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② 법 제25조제6항의 위촉위원은 노동·환경·외국인투자·물류·도시정책 등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③ 제2항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2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목적 등을 개최 3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의견청취)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나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26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5(수급조절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수급조절위원회를 대표하고, 수급조절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수급조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한다.

⑥ 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급조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 등

법

제8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간척지활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목적
3. 간척지활용사업의 내용 및 기간
4. 간척지활용사업의 효과
5.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6.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7.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8. 환경보호와 경관보존에 관한 계획
9. 자연재해 예방 대책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있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지역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제8조(간척지활용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8조제1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시행령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계획
2.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물건 및 권리의 취득 및 사용 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영향 검토에 필요한 서류
5.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형에 관한 사항(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인 위치도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6. 지역주민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참여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7.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제9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고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지정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말한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간척지활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개요
3.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물건 및 권리의 명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인 위치도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시의 내용 중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해당 권리를 가진 자에게 알려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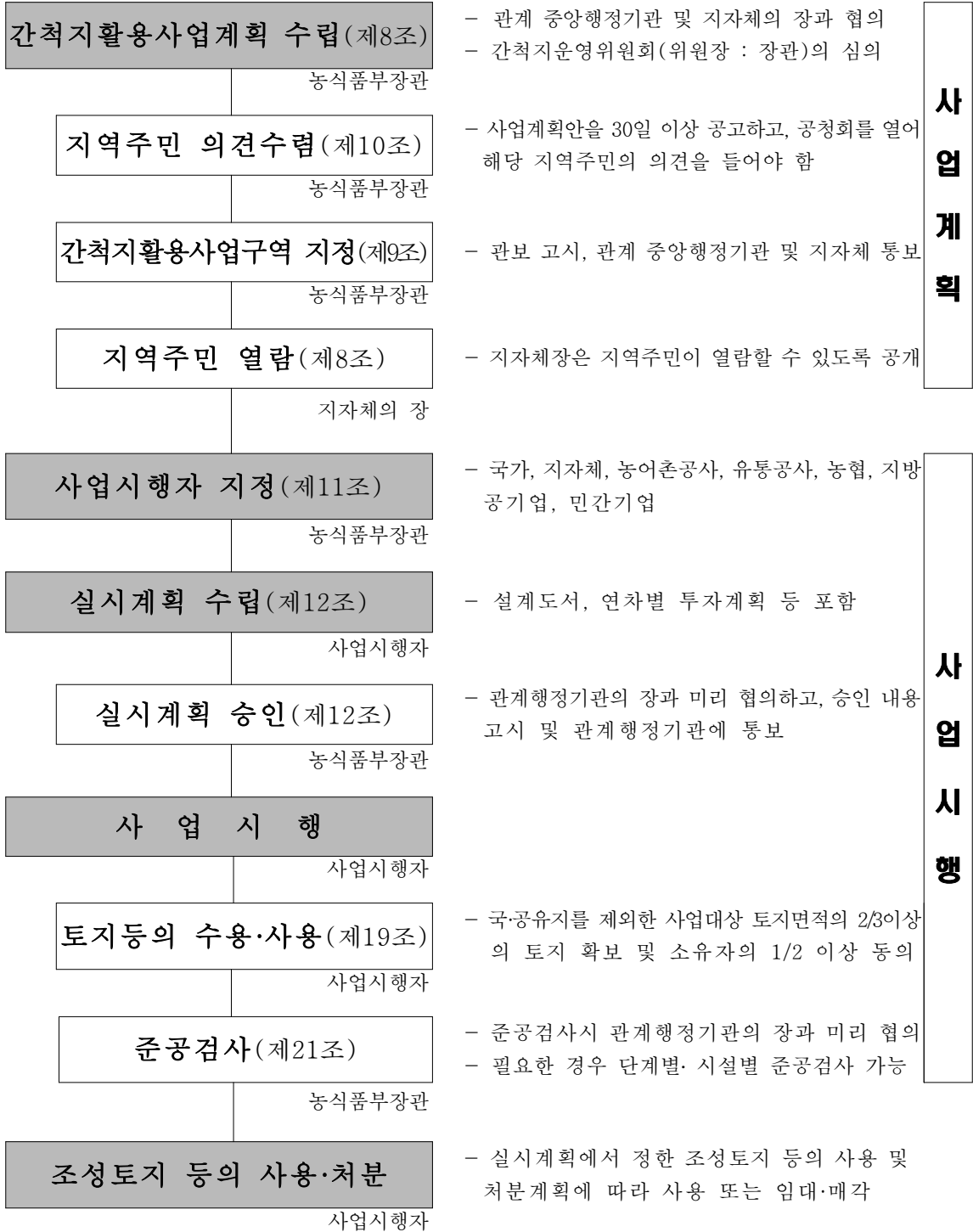
제10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간척지활용사업구역 면적의 축소
2. 간척지활용사업구역 면적의 확대(10퍼센트 이내의 확대로 한정한다)

의 의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간척지활용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고시하고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그 내용을 해당 지역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특례가 인정됨
-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라 토지이용에 공법상 제한을 가하는 제도로서 구역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되면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이 당해 용도지역 내의 모든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가 속한 구역에 따라 토지이용에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됨
 - 지형도면은 지역지구 등의 결정 또는 계획된 사항을 개별지적과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하며, 이를 일반국민에게 알려줌으로써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을 알려주는데 목적이 있음.
 - 따라서 지형도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은 지역·지구 등의 지정사항과 개별지적과의 관계를 일반국민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국토이용정보체계에서 구축한 지형도 데이터 중에서 최소한의 지형지물을 명시하여 작성하여야 함
- 간척지활용사업의 경우에도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지역주민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더불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대부분의 토지이용 관련 법률에서 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때는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고 열람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되는 개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

간척지활용사업 추진 절차



* 농식품부장관은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 가능
 - 시·도지사는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 가능

현황 및 문제점

- 대부분의 토지이용 관련 법률은 개발사업등을 추진할 때는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여 열람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되는 개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음
- 간척지활용사업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지역·지구 등을 지정할 수 없어 사업 시행 중 설치되는 지장물 등으로 사업 효율성 저하 우려
- 간척지활용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보상비 증가를 방지하고 사업효율성을 제고하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예방

입법례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제5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받은 경우에는 관할 광역시장·도지사(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공동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외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제39조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안자의 신청으로 개발구역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지사와 공동으로 제안된 개발구역을 제1항에 따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나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경우로서 시장·군수가 미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7조(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구역(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있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르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주민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4조제3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
2.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인 위치도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지형도면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7. 지역주민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참여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8. 법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9.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제7조(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 등의 고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구역(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지정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말한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명칭
2. 사업계획의 개요
3. 사업시행자
4.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이 있는 경우 그 세목 및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6. 제4조제5호의 도면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조(개발구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발구역의 면적을 확대하고자 하는 지역이 「농어촌정비법」 제13조에 따라 개간 대상 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거나 그 확대하고자 하는 지역에 농지가 새로이 포함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개발구역 면적의 축소
2. 개발구역 면적의 10 퍼센트 범위안에서의 확대

□ 마린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마린나항만구역의 변경)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마린나항만구역 면적의 축소
2. 마린나항만구역 면적의 확대(100분의 10 이내로 한정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결과를 반영한 마린나항만구역의 변경

인용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한다.
2.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 자치구"라 한다)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3. "농어촌용수"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산용수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용수를 말한다.
4. "농어촌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 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 다. 농어촌산업 육성사업
 - 라.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 마.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 소하천 정비법

제10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 시행) ① 관리청이 아닌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소하천공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가 종합계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2.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해당 공사의 시행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3.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적정한지 여부
 4. 소하천에 설치하려는 인공구조물이 관계 설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③ 제1항에 따라 소하천공사를 하는 자는 그 공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④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를 신청한 자로 하여금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豫置)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공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 예치금의 기준과 예치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과 재해 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중앙본부장
2.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도지사 및 시·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해당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시·도 본부장"이라 한다)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해당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시·군·구 본부장"이라 한다)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영향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소방방재청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재해의 예방·복구 등 재해 경감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지역·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지역·지구등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신설(지역·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1. 별표에 규정된 지역·지구등
2. 다른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지구등으로서 이 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지구등
3. 다른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지구등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지역·지구등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따로 지정 절차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법

제9조(주민의견청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간척지활용사업계획안을 작성하여 3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열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1조(주민의견청취)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 개최 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적으로 보급되거나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농림수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간척지활용사업계획안의 개요
4. 의견발표 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작일부터 공청회 종료 후 5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 의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30일 이상 공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함으로써 다양한 의견 반영이 가능하도록 함
- 공고방법 : 전국적으로 보급되거나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농림수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 의견제출 : 열람 시작일부터 공청회 종료 후 5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공청회의 개최)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광역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5조(주민의견 수렴)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사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명칭
2. 사업계획의 개요
3. 사업시행자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열람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시작일부터 열람기간 종료 후 5일까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된 검토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해당 의견 제출자 및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법

-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제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고자 하거나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람이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개발구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람의 대상 또는 공청회의 개최 대상 및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시개발법 시행령

- 제11조(주민의 의견청취)**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관계 서류 사본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 사본을 송부받거나 법 제7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공보와 해당 시·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1. 입안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2. 시행자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3. 공람기간
 4.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제3호의 공람기간(이하 이 조 및 제13조에서 "공람기간"이라 한다)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고를 한 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으면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도시 시장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공고한 내용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도시개발계획의 변경 후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공람기간이 끝난 후에 법 제7조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미 공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3.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4. 의견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청회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와 달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의견 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청회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자가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그 공청회를 개최하는 주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법

제10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해제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2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 해제된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일 및 해제일
3. 지정 해제의 사유

의 의

-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원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환매권) 보호를 위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간척지활용사업구역지정 해제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 해제시 사업개요(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및 지정해제와 관련된 사항(지정일, 해제일, 해제사유)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현황 및 문제점

- 각종 개발사업의 경우 구역을 지정하고도 사업시행자의 파산 등 경제적 사정으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 구역지정 해제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 토지소유자나 대상지역 인근 토지 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사업 중단에 따른 타 용도로의 활용도 곤란할 수 있음

입법례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8조(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 해제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7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1조제4항에 따라 개발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개발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개발구역의 지정목적은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로서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승인·결정 등 및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결정 등 및 인·허가등은 효력을 상실하며, 수립·변경 또는 해제되었던 도시기본계획·용도지역 등은 해당 개발구역 지정 전의 상태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5조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구역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명칭
2.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의 고시일 및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4. 지정 해제의 사유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개발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에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개발구역의 지정일 및 해제일
3. 개발구역의 지정 해제사유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법

제11조(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변경) ① 간척지활용사업은 국가가 시행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3.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6.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민간기업

② 사업시행자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척지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간척지활용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4조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
3. 사업시행자의 부도·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간척지활용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령

제13조(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민간기업”이란 자본금이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른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농업법인을 말한다.

의 의

- 간척지활용사업을 국가가 시행하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 지방공기업,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민간기업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민간기업의 요건 : 자본금이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른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농업법인
- 간척지활용사업 시행자가 법령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어렵고, 개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제약될 우려가 있음.
 -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승인한 실시계획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
-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는 법률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직접 사용 또는 임대·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 민간기업 중 농지에서 농작물의 생산 등 농업활동을 할 수 있는 농업회사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중에서 자본금이 해당 간척지활용사업에 드는 연평균사업비 이상인 자로 제한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입법례

□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농업용지, 산업용지, 관광용지, 도시용지, 과학연구용지, 환경용지, 물류 및 에너지용지 등의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용

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새만금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각각 지정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 중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의 일부를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또는 해당 용지에 입주할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접경지역지원법

제12조(사업시행자)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민간기업(채무건전성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정한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 평가액 또는 자본금이 해당 용도별 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사업의 종류 및 규모
2.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의 목적 및 방법
5. 사업시행기간
6. 세부시설계획 등 사업내용
7. 투자비 명세 및 자금조달계획
8. 시설의 관리·운영계획
9. 사용료 등 수입·지출계획
10. 국고 보조를 받으려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11.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 점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제14조(민간기업의 재무건전성 기준) 법 제12조제5호에서 "재무건전성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업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한정한다)의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 평가액 또는 자본금이 연도별 사업계획에 반영된 해당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민간기업
2. 연도별 사업계획에 반영된 사업대상 토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민간기업
3. 연도별 사업계획에 반영된 사업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부동산신탁회사

법

제12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실시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명칭·목적·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4. 계획평면도 및 설계도서
5. 단계별 조성계획(간척지활용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사업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6.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7. 조성된 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이 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기한의 연기를 요청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간척지활용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령

③ 법 제12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이전·철거 및 귀속·이관·양여(讓與) 등에 관한 사항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물건 및 권리의 상세내용(토지소유자 또는 해당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3.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영향 검토에 필요한 서류
4.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5.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데 필요한 사항(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④ 법 제12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의 변경
2. 간척지활용사업 명칭의 변경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실시계획(변경승인된 실시계획을 포함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4. 지형의 변경 또는 지질조사 결과의 반영으로 인한 시설 등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토지의 이용 변경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획이 확정되어 실시계획에 반영된 후 그 계획이 변경·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

의 의

-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승인된 실시계획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등을 첨부토록 하여 실행력 제고

□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사업시행자의 명칭·주소, 사업의 명칭·목적·위치·면적, 사업시행지의 위치도·지적도, 계획평면도·설계도서, 단계별 조성계획, 재원조달계획·연차별 투자계획 및 조성된 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 등을 포함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이전·철거 및 귀속·이관·양여(讓與) 등에 관한 사항 포함

○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물건 및 권리의 상세내용 포함

○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영향 검토에 필요한 서류 포함

○ 환경영향평가서 포함

□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이 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함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기한의 연기를 요청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입법취지 등을 감안할 때 간척지활용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 외의 자가 간척지활용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의 승인절차가 필요함

현황 및 문제점

□ 간척지활용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계획 수립 등과 관련된 규정은 없으며, 새만금지역은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

* 간척사업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추진되며, 준공 이후에는 「농지법」, 「국토계획법」 등에 따라 관리·이용

□ 사업시행자가 법령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의 실행력 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개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의 사업 준비 및 추진에 많은 어려움

□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새만금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호아목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경우에는 제6호, 제6호의2, 제8호 및 제10호의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상지역의 명칭과 위치·면적
2. 개발사업의 기본방향 및 필요성
3.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4. 사업 시행기간 및 개발방법
5. 사업계획의 평면도 및 설계도서
6.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산업유치 및 주요 사업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한다)
- 6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수립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제8조제2항에 따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만 해당한다)
7.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8.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9.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10. 조성토지의 처분계획서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전라북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⑤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

인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전라북도지사
와 사업시행자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본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승인을 신청하
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기한의 연기를 요청하고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
하면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 기본계획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실시계획의 작성)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
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3조의2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 및 경
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물류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실시계획에는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한 사항을
변경승인할 때에는 제30조제1항 각 호의 관계 법률에 적합한지를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
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승인신
청서를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2. 사업의 명칭
3. 사업의 목적
4. 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 및 면적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8. 공공시설의 귀속 및 관리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유수면의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매립공사에 관한 설명서를 포함한다)
4.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5.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계획에 관한 서류
6. 사업시행지역에 존치하려는 기존의 물류단지시설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8.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9.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 등에 관한 계획서
10. 도시관리계획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11.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해역이용협의를 위한 서류(공유수면매립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12.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거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13.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③ 법 제2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 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행자의 주소 변경
2. 법인인 시행자의 대표자 변경
3. 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의 착오 등에 따른 시행면적의 정정
4. 사업시행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면적 변경
5. 사업시행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면적의 감소
6. 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호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의 결과에 따른 부지 면적의 변경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실시계획 승인신청 시 첨부 서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2. 자금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차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3.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4.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
5.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6.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이전·철거 및 귀속·이관·양여 등에 관한 조서(調書)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법 제1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 명칭의 변경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의 변경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실시계획(법 제12조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된 실시계획을 포함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의 변경

4. 지형의 변경 또는 지질 조사 결과의 반영으로 인한 시설 등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

5.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범위에서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획이 확정되어 실시계획에 반영된 후 해당 계획이 변경·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용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과 재해 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를(이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중앙본부장

2.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도지사 및 시·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해당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시·도 본부장"이라 한다)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해당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시·군·구

구 본부장"이라 한다)

-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영향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④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⑥ 소방방재청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재해의 예방·복구 등 재해 경감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②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4.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법

- 제13조(행위 등의 제한)** ① 간척지활용사업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자갈·모래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 식물재배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그 대상행위 등이 간척지활용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이 지정·고시될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 ⑦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시행령

- 제15조(행위 등의 제한)**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제3호에 따른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시행령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적으로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切土)·성토(盛土)·정지(整地)·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掘鑿)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4. 토석·자갈·모래의 채취(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의 목적 및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토지 분할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간척지활용사업구역 내에 개발하지 않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 놓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 「수산업법」 제2조에 따른 입어(入漁)·유어(遊漁) 또는 양식
 8. 죽목(竹木)의 식재(植栽) 및 벌채(경작지에서의 관상용 죽목을 임시로 식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③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재해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6호에 따른 기능복원사업의 시행.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행위는 제외한다.
- ④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 의

- 간척지활용사업구역으로 고시된 구역 안에서 타 용도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변경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본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는 개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이 지정·고시될 당시 타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에게 신고 후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을 규정하여 기득권자의 권리를 보호

○ 간척지활용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를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장애요소를 사전에 방지함

□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 등의 응급조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채취, 간척지활용사업구역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사업추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 또는 면허 없이 신속한 처리가 가능토록 함

□ 간척지활용사업구역으로 지정·고시될 당시 이미 행위허가 또는 면허 등을 받았거나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해당 지자체장에게 신고토록 의무화함으로써 허가 또는 면허 취득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본 사업추진의 장애요인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 또는 면허 등을 받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자체장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안전성 확보.

□ 본 조문과 관련하여 본 법안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타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 절차를 준용토록 함으로써 법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토록 조치함

□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간척지활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간척지활용사업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현황 및 문제점

- 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보상 등을 목적으로 불법으로 개발행위를 하는 사례가 많고, 이럴 경우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개발구역 지정 등 개발계획이 있는 지역의 불법 개발행위는 철저한 사전방지가 필요함

입법례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9조(행위 등의 제한) ① 제7조에 따라 고시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자갈·모래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 식물재배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그 대상행위 등이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이 지정·고시될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행위 등의 제한) 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切土)·성토(盛土)·정지(整地)·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자갈·모래의 채취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7.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 「수산업법」 제2조에 따른 입어(入漁)·유어(遊漁) 또는 양식
8. 식물재배 행위: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하려면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토석·자갈·모래의 채취
4.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안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

농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 식재(植栽)는 제외한다]
6.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6호에 따른 기능복원사업의 시행
- ⑤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①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발전촉진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발전촉진지구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切土)·성토(盛土)·정지(整地)·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을 채취하는 행위(제3호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③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가. 비닐하우스
 - 나. 양잠장(養蠶所)
 - 다.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 라. 버섯 재배사(栽培舍)
 - 마. 종묘 배양장
 - 바. 퇴비장
 - 사. 탈곡장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발전촉진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토석 채취
4. 발전촉진지구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경작지에 심는 것은 제외한다)

④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발전촉진지구 지정의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및 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일 시점의 공정(工程)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진
3.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의 채취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4.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林道)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처분의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2.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 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 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제8조, 제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2.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3.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대한 검토를 받은 개발행위
6.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 및 「사방사업 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③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4 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개발행위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산정 및 예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62조(준공검사) ①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 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61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할 때에 그 내용에 제61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제되는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수산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어업·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어획물운반업"이란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사료·비료·호료(糊料)·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기르는어업"이란 제8조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과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을 말한다.
6. "외해(外海)"란 육지에 둘러싸이지 아니한 개방된 바다로서 해수소통이 원활하여 오염물질이 퇴적되지 아니하는 수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면을 말한다.
7. "양식"이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어장"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
9. "어업권"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0. "입어"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漁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11. "입어자"란 제47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12. "어업인"이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한다.
13.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4.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5. "어획물운반업자"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6. "어획물운반업종사자"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현장에서 양륙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7. "수산물가공업자"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8. "바닷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 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
19. "유어(遊漁)"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20. "어구"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 재해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2. "재난지원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產業)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값과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5. "재난등급"이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6. "기능복원사업"이란 피해시설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에 맞추어 피해시설을 복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4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 수행을 위한 조사·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흙·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제거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해뜨기 전 또는 해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간척지 활용사업이 예정된 공유수면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권리를 가진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수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제14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물건 등에 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

법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규정을 적용한다.

시행규칙

제3조(증표)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의 의

- 사업시행자가 간척지활용사업을 시행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측량 등을 위하여 타인토지의 출입이 요구됨
- 측량 등 실시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유자 등의 동의 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조사, 재료적치장, 임시도로 및 장애물의 제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협의 및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등에 의해 보상토록 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가능토록 규정함
 - 손실에 대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사업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경우는 사업이 예정된 공유수면 출입 및 보상에 관하여도 적용하되, 「수산업법」상의 보상규정을 준용토록 함

현황 및 문제점

- 이 조문은 사업 시행에 따른 타인토지의 출입 및 손실보상에 대한 사항으로 손실 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인정의 고시(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 인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토록 규정함
 - 손실 보상에 대한 협의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1. 도시·군계획·광역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2.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및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 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3.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에 관한 조사
4.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측량 또는 시행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다만,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사용하거나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미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그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⑦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⑧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증표와 허가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31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① 제130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손실을 보상할 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인용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사업인정의 실효) ① 사업시행자가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이하 "사업인정고시"라 한다)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8조(재결의 신청) ①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수산업법

제8조(면허어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해양식어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漁具)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해조류양식어업(海藻類養殖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
3. 패류양식어업(貝類養殖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4. 어류등양식어업(魚類等養殖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5. 복합양식어업(複合養殖漁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양식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양식어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로 다른 양식어업 대상품종을 2종 이상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6. 마을어업: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한 일정한 수심(水深)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定着性) 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
7. 협동양식어업(協同養殖漁業): 마을어업의 어장 수심의 한계를 초과한 일정한 수심 범위의 수면을 구획하여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협동하여 양식하는 어업
8. 외해양식어업: 외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수중 또는 표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를 할 때에는 개발계획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종류와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호 중 어장의 수심은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어장의 수심(마을어업과 협동양식어업은 제외한다), 어장구역의 한계 및 어장 사이의 거리
2. 어장의 시설방법, 양식방법 또는 포획·채취방법
3. 양식물 또는 어획물에 관한 사항
4. 어선·어구(漁具)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사항
5. 수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양식어장에서의 화장실 등 부대시설 설치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업면허에 필요한 사항

제41조(허가어업) ①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動力漁船)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漁業調整)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무동력어선,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 또는 어선의 안전조업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8톤 이상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제3항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구획어업: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으로 시·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라 총허용어획량을 설정·관리하는 경우에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다.

2. 육상해수양식어업: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3. 종묘생산어업: 일정하게 구획된 바다·바닷가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묘(水産種苗)를 생산하는 어업(생산한 종묘를 일정기간 동안 중간육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별 어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그 밖에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허가의 우선순위는 어

업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어업을 허가하는 행정관청이 정한다.

1. 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톤수, 기관의 마력, 어업허가의 유예, 허가의 제한사유, 양륙항(揚陸港)의 지정, 조업해역의 구분 및 허가 어선의 대체
2.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에 대한 허가의 정수 및 그 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부속선, 사용하는 어구의 종류
3. 육상해수양식어업의 양식물, 종묘생산어업의 종묘의 종류 및 육상해수양식어업과 종묘생산어업의 시설기준

⑤ 행정관청은 제35조제1호·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와 그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어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신고어업) ① 제8조·제41조·제42조 또는 제45조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면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受理)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수리하면 그 신고인에게 어업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신고어업자의 주소지와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 수역에서 연간 60일 이상 조업을 할 것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어업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수면에서 그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하여 조업하지 아니할 것
3. 어업분쟁이나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고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을 매어놓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어업의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제1호나 제2호에 해당되어 신고의 효력을 잃은 때에는 그 신고를 한 자는 제7항에 따라 해당 공적장부(公的帳簿)에서 말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신고어업의 종류 및 효력상실사유 등을 고려하여 농림

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제1항에 따른 어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한 때
 2. 제5항에 따른 신고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어선 계류 처분을 2회 이상 위반한 때
 3. 제48조제3항에 따른 신고어업의 폐지신고를 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때
-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가 효력을 잃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어업에 관한 공적장부에서 이를 말소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1조(보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35조제6호(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면허·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에 대하여 제한 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제49조제1항과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이 제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72조제2항에 따른 측량·검사에 장애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 이전명령이나 제거명령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보상의 원인이 된 처분으로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은 수익자에게 그가 받은 이익의 범위에서 보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결정된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수익자는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 보상을 하지 아니하면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공사에 착수할 수 없다. 다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 지급방법, 그 밖에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수질오염에 따른 손해배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수질이 오염되어 면허받은 어업에 피해가 발생하면 그 오염발생 시설의 경영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1. 산업시설이나 그 밖의 사업장의 건설 또는 조업

2. 선박 또는 해양시설(「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해양시설을 말한다)

3. 해저광구의 개발 등

② 제1항의 오염발생시설의 경영자가 피해가 발생한 후 그 사업을 양도한 때에는 피해 발생 당시의 시설의 경영자와 시설을 양수(讓受)한 경영자가 연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83조(보상금의 공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81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1. 보상을 받을 자가 보상금 받기를 거절하거나 기피할 때

2. 보상을 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3. 보상의 목적인 어업권·토지 또는 물건에 관하여 등록하거나 등기한 권리자가 있을 때. 다만, 그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등록하거나 등기한 권리자 또는 소송 당사자는 공탁한 금액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84조(입어에 관한 재결) 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입어에 관하여 분쟁이 있거나 제40조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어업권자 또는 입어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결 신청을 받으면 제88조에 따른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결하여야 한다.

제85조(어장구역 등에 관한 재결) ① 어장의 구역, 어업권의 범위, 보호구역 또는 어업의 방법에 관하여 분쟁이 있으면 그 관계인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결을 할 때에는 제88조에 따른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6조(보조 등) ① 행정관청은 수산업 및 기르는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대상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제87조(보상·보조 및 재결에 관한 세부규칙)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상·보조 및 재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해제·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허가 와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 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6.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 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 용허가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 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9.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10.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 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1. 「산림보호법」 제9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신고 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13.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

법

- 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토사채취신고
14.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15.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협의·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1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18.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19.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심사,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의 신고
 2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1.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2.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을 제8조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수립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의 의

□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의 신청을 할 경우 타 법에 의한 관련 인·허가 사항이 포함될 경우 관련 서류를 함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일괄 의제처리 함으로써 사업의 신속성을 확보하도록 함.

○ 인·허가 등의 일괄의제처리는 사업추진 시 인·허가 등에 대하여 각 개별

법에 따라 관계부처와 각각 협의할 경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사업 전반적인 타당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느 하나의 인·허가를 받지 못하여 전체사업의 추진이 곤란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 간척지활용사업과 관련된 22개 법률의 의제사항 규정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타 법에 따른 관련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협의 요청을 하는 경우 의견 제출기한을 30일로 한정하여 신속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협의를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인·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협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별 법률에 따라 별도로 인·허가를 받아야 함

현황 및 문제점

□ 사업추진시 타 법에 의한 인·허가 사항이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할 경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며, 사업의 전반적인 타당성에 대한 관계부처 이해부족 등으로 협의가 곤란할 수 있음.

입법례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결정·면허·협의·동의·승인·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1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과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5.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7. 「광업법」 제21조, 제22조, 제24조에 따른 불허가 처분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광업권취소 처분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10.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11.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1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3.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노선 인정의 공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것에 한한다) 및 「유료도로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허가 또는 협의
14.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1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토석의 채취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 해제
1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9.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20.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 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21.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22.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
2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4.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2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26.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0.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31. 「측량법」 제25조에 따른 측량성과사용의 심사
3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3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3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설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에

대한 것에 한한다)

3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②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법령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8.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9. 「도로법」 제34조와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과 도로의 연결허가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4.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17.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허가나 신고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12조제1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⑨ 국토해양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⑩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을 준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하여야 하고, 3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외에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64조까지,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대수선·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의한 건축물에는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기업용 재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2. 보존용재산: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구단위 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52조제1항제4호 중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
2. 제52조제1항제5호의 사항
3. 제52조제1항제6호 중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④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된다) 그 도시·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대도시 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대도시 시장"으로,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대도시에 두는 경우를 말한다)"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대도시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대도시 시장"으로 본다.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

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林道)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면허를 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掘鑿)하는 행위
 3.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浚渫)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5.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6.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7.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8. 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水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9.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10. 공유수면에서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을 위한 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만 허가하여야 한다.
 -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중 점용·사용 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해양환경·생태계·수산자원 및 자연경관의 보호, 그 밖에 어업피해의 예방 또는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용·사용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부관(附款)을 붙일 수 있다.

⑧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이 점용·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로서 인공구조물의 규모 및 총공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련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이하 "점용·사용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8조제1항 각 호의 행위(제1항 전단에 따라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10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는 관련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공유수면관리청에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점용·사용허가를 받거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유수면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기간을 1년(신고의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⑤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및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매립면허) ①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목적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매립면허관청"이라 한다)로부터 공유수

면 매립면허(이하 "매립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항만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공유수면 매립: 국토해양부장관
2.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수면 매립: 국토해양부장관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 매립: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② 매립예정지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공유수면에 걸쳐 있으면 국토해양부장관의 매립면허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으로서 매립예정지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으면 관계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협이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매립면허를 받아야 한다.

④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매립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의 협의하여야 한다.

⑤ 매립면허관청은 매립기본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 매립면허를 하여야 한다.

⑥ 매립면허관청은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매립예정지를 분할하여 면허할 수 없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항만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공유수면 및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 구역의 공유수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매립할 수 있다. 다만, 매립 목적·규모 또는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매립면허관청은 동일한 위치의 공유수면에 대하여 면허의 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를 할 수 있다.

제35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①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경우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매립면허관청과 협의하거나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는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에 신고한 후 양도할 수 있으며, 매립면허관청(국토해양부장관은 제외한다)은 그 신고를 수리(受理)하기 전에 국토해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매립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地目)을 정하여 매립면허관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시행하는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6조(같은 조 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까지, 제48조, 제49조제1항·제3항·제5항·제6항, 제51조부터 제54조(같은 조 제9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① 매립면허취득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이하 "매립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매립면허취득자는 매립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매립면허관청으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받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③ 매립면허취득자는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로부터 공사 착수에 관한 동의를 받거나 제32조에 따른 보상 또는 시설 설치를 한 후에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매립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 도로법

제5조(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이 법에 따라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서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도로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관리청 아닌 자의 공사시행) ① 관리청이 아닌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그 유지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상급도로의 관리청이 상급도로의 공사를 시행할 때 상급도로와 연결되거나 접속되는 하급도로의 연결구간 또는 접속구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이 경우 미리 하급도로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 유지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도로의 점용) ①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연장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 점용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그 밖에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준공도면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이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 굴착공사가 따르는 점용허가를 하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가 입회한 가운데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차량의 진출입로를 포함한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안전표지의 설치 등 보행자를 위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농어촌정비법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他人)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사용은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목적 외의 사용에 따른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목적 외의 사용에 관한 절차·기간 및 범위, 경비 징수 범위와 징수된 경비의 사용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수 있다.

1. 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轉用)된 경우

2. 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대체할 시설이 완비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이 손괴(損壞)되어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수의 경제성이 없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폐지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매각 대금은 제14조제3항의 예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82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② 시장·군수·구청장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려면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①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 사도법

제4조(개설허가) 사도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도를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사방사업법

제14조(사방지에서의 행위 제한) ① 사방지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입목·죽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를 시행하거나 하천구역의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1. 사방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공작물을 훼손하거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2. 피해목이 아닌 입목·죽의 벌채로서 사방지의 지정 목적에 장애가 되는 벌채
3. 사방지의 지정 목적 달성을 저해할 정도로 토사 유출 등이 예상되는 때·풀·토석의 채취 또는 가축의 방목

③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15조의2·제25조제1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사방지의 지정해제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사방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시책으로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토석채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방지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방지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

②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방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국가사방사업으로 설치된 사방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 산림보호법

제9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산림보호구역(「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승인받은 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입목(立木)·죽(竹)의 벌채
2. 임산물의 굴취(掘取)·채취
3. 가축의 방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는 행위: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시설의 설치, 산림병해충의 방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하는 제1항 각 호의 행위
2.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면 할 수 있는 행위: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입목·죽의 벌채나 임산물의 굴취·채취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방화선(防火線)을 설치하기 위한 입목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가. 지정 목적을 달성하여 산림보호구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학교시설, 농로시설, 산업단지, 주요 산업시설이나 군사시설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라. 농업·임업·어업·광업과 관련된 용도로서 농지 등의 개발, 농가주택 등의 시설, 어류양식 등의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마.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림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수원함양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도록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목적의 부지로 편입되는 경우

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나. 군사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①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국토와 자연의 보전, 문화재와 국가 중요 시설의 보호,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산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병해충의 예방·구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

청을 받은 경우 벌채 목적과 벌채 대상의 적정성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입목벌채등을 허가하여야 한다.

④ 병해충·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林木)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풀베기, 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벌채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입목벌채등에 필요한 운재로(運材路) 및 작업로(作業路) 설치에 관하여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산지전용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 산림경영·산촌개발·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및 수목원·산림생태원·자연휴양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2.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농림수산물의 창고·집하장·가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의 절차,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받은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이 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을 충족한 경우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 및 그 처분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①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

2. 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②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객토용(客土用)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사를 채취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사채취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 삭제

2.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에 따른 채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토사채취신고를 하려는 자가 해당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채취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토석채취허가의 경우: 토석채취량 및 토석채취면적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하는 기간

2. 토사채취신고의 경우: 토사채취량 및 토사채취면적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기간

④ 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다른 법률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제3항에 따른 채취기간 이내에 허가받은 토석이나 신고한 토사를 모두 채취하지 못하여 그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 또는 신고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소하천정비법

제10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 시행) ① 관리청이 아닌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소하천공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가 종합계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2.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해당 공사의 시행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3.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적정한지 여부
4. 소하천에 설치하려는 인공구조물이 관계 설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③ 제1항에 따라 소하천공사를 하는 자는 그 공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를 신청한 자로 하여금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豫置)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공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 예치금의 기준과 예치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① 소하천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수(流水)의 점용

2. 토지의 점용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

4.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개축 또는 변경

5. 토지의 굴착·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 그 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

6. 토석(土石)·모래·자갈·죽목(竹木), 그 밖의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7. 소하천을 더럽히거나 손상하는 행위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하천법」 제8조에 따른 관할 하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허가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청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따라 소하천공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3조에 따른 소하천의 지정·고시 당시 그 소하천구역에서 소하천부속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였거나 점용하고 있는 자는 그 소하천의 지정·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

⑦ 관리청이 제6항에 따라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허가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수도법

제17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① 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군수는 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하며, 이하 "인가관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는 제외한다)와 국토해양부장관이 인가하는 광역상수도의 정수시설: 환경부장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외의 광역상수도(정수시설은 제외한다): 국토해양부장관
3.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만톤 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4. 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0만톤 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5. 마을상수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② 환경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미리 서로 협의하여야 하고, 시·도지사가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수시설이 포함된 광역상수도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가하면 그 정수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인가관청은 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을 인가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은 매 연도의 일반수도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 서로 협의하여 효율적인 사업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일반수도사업(마을상수도는 제외한다)을 인가하면 인가한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① 공업용수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시설용량이 1일 1만톤을 초과하는 공업용수도: 국토해양부장관

2. 시설용량이 1일 1만톤 이하인 공업용수도: 시·도지사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시·도지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2조(전용상수도 인가) ①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인가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전용상수도의 설치자는 전용상수도를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그만두려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4조(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 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하여는 제21조 제5항, 제52조 및 제61조를 준용한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①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이하 "사업주관자"라 한다)는 그 사업의 실시와 시설의 설치로 에너지수급에 미칠 영향과 에너지소비로 인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을 말한다)의 배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소요에너지의 공급계획 및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그 평가에 관한 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 전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하여 사업주관자 중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사업주관자"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공공사업주관자 외의 자(이하 "민간사업주관자"라 한다)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사업주관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에너지사용계획 중 에너지 수요예측 및 공급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사업주관자는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할 능력이 있는 자로 하여금 에너지사용계획의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내용, 협의 및 의견 청취의 절차, 대행기관의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수립을 대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집단에너지사용법

제4조(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협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과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초지법

제21조의2(초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안에서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

2. 분묘의 설치

3. 토석의 채취 및 반출

4. 기타 초지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행위

제23조(초지의 전용 등) 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의 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6.9.27, 2009.1.30>

1. 중요산업시설·공익시설·주거시설 또는 관광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2. 「농지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3. 농수산물의 처리·가공·보관시설 및 농수산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4. 농작물재배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다만, 과수용지 이외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경사도 15도 이내의 초지에 한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9. 그 밖에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초지전용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경과된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에 갈음하여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를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가축을 기르기 위한 축사(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축사를 제외한다)의 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할 수 있다.

⑥제2항·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초지의 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축산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제1항제5호 내지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산업시설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에 전용하는 경우

3. 농업·축산업·임업 및 수산업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4. 삭제 <2006.9.27>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승인을 얻은 개발사업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등록체육시설업에 속하는 골프장업의 시설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6.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전용의 경우
 - ⑦제2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신고 또는 협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 및 감면기준과 그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③ 기본측량성과, 기본측량 기록 또는 제1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등을 활용한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려는 자(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시행자는 제외한다)는 그 지도등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86조(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학교·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③ 제2항의 경우에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각각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그 설치공사를 끝낸 후 그 시설의 사용을 시작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관청
2. 제1호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관청 또는 신고관청

□ 하수도법

제16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유지는 허가 없이 이를 할 수 있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4조(점용허가)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하천법

제6조(다른 국가사업 등과의 관계)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하천구역 안에서 권리를 설정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①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6조·제9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허가사항이 하천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관리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하천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⑥ 하천관리청은 제5항에 따른 인가를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⑦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하천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하천관리청에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하천관리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⑧ 하천관리청은 제7항에 따른 준공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공사가 제5항에 따라 인가받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여야 한다.
- ⑨ 제8항에 따라 준공인가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준공인가 다음날부터 제27조 제5항에 따라 이를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 ⑩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3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2 이상 서로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와 그 밖의 허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5.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그 밖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의 적합 여부
2.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
3. 공작물의 설치로 인근 지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배수시설의 설치 여부

4. 하천수 사용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수문조사시설 등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④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4.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하천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제30조제9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⑥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⑦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⑧제30조제4항은 하천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30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법

제1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시행령

제1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7조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건축 제한 등과 달리 정하려면 해당 사업계획에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수질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의 의

- 현재 간척지가 대부분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서 「국토계획법」 제76조에 따라 건축물, 기타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이 제한됨으로 간척지활용사업의 추진이 제약될 우려가 있어 사업에 필요한 건축물 및 시설의 설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간척지활용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76조에도 불구하고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간척지활용사업에 필요한 건축물 및 시설의 설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척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간척지활용사업의 활성화 도모

현황 및 문제점

- 간척지는 대부분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준공전) 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건축물, 기타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이 제한됨
- 간척지활용사업 추진 시 건축제한 등으로 인해 원활한 사업 추진에 제약이 발생

입법례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농업생산기반 시설관리자가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른 토지적성평가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보전대책이 수립된 경우는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달리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보전대책”이란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수질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른 토지적성평가 시 수질보전 부문과 관련된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달리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계획관리지역에서 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 설치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용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

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맞아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서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 보전, 자연환경 보전, 해양환경 보전 또는 산림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18조(부담금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척지활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및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의 의

- 관련법에 의해 부과·징수되고 있는 부담금은 해당법률에 따른 감면 또는 경감 규정이 있으나 일괄 적용이 어려운 관계로 제도화하여 지원함으로써 민간사업자 등을 유치하는 등 사업 활성화 도모
- 조세감면 사항은 본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각각의 개별법 적용을 받도록 함

현황 및 문제점

- 간척지에서 특정 개발을 하는 경우 각종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 간척지활용사업 추진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각종 부담금으로 민간기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도하지 않을 우려가 있음

<각 종 부담금 감면 관련 규정>

관련법 규정	명 칭	내 용	감 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개발 부담금	해당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①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하는사업은 감면 ②공운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은 100분의 50 경감 등
농지법 제38조	농지보전 부담금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 부과	①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산업 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 전용

관련법 규정	명 칭	내 용	감 면
초지법 제23조	대체초지 조성비	초지전용에 대한 부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등 특별법에 의한 감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교통유발 부담금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	- 주한 외국 정부기관 - 주거용 건물 -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입법례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부담금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및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구역에서 시행되는 기업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법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같은 법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할 경우에 한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유지·공유지를 제외한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8조에 따른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의 의

- 각종 공익사업의 추진에는 용지취득이 수반되는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으로 원활한 용지취득을 하기 위하여 규정하되, 간척지활용사업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토지 수용·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간척지활용사업의 공익목적 달성을 실현토록 함
- 사업계획이 승인될 경우 사업시행을 위해 토지 등의 수용·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수용·사용할 토지·건물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을 간척지활용사업계획서에 추가하여 신속한 용지취득이 가능토록 함

- 또한, 토지 수용·사용권은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과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 부여함으로써 피보상자에 대한 재산권 등 보호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함
- 피보상자에 대한 정당한 절차와 합리적 보상기준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함
- 토지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은 당사자간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 기간 내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현황 및 문제점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사업 인정의 고시(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 인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토록 규정하고 있음
-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과 더불어 정당보상 실질화에 대한 요구는 증대되었으나, 이러한 민원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으로 불만이 야기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사업이 지연될 소지가 많음

입법례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18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같은 법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할 경우에 한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

보(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 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도시개발법

제22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기준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의 요건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총수에 포함하고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제5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광업권·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제20조(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사업인정의 고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계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인정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3조(사업인정의 실효) ① 사업시행자가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이하 "사업인정고시"라 한다)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8조(재결의 신청) ①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법

제20조(기반시설의 설치) ①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은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한다. 다만, 사업시행자 등의 요청으로 전기간선시설을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땅속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시설의 설치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7조(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역의 전기·통신·가스 및 난방 공급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가스 및 난방 시설의 설치시기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로 한다. 다만, 해당 지역의 전기·통신·가스 및 난방 공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완료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설치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시설: 간척지활용사업구역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전기시설로부터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폭 6미터 이상의 도로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이하 이 항에서 "개별필지"라 한다)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
2. 통신시설: 간척지활용사업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통신시설로부터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개별필지 경계선까지의 관로시설 및 최초 단자(端子)까지의 케이블시설
3. 가스시설: 간척지활용사업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개별필지 경계선까지의 가스공급시설. 다만,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개별필지에 정압(定壓) 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
4. 지역난방시설: 간척지활용사업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열 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개별필지의 각 기계실 입구 차단 밸브까지의 열 수송관

의 의

- 해당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에 그것을 공급하는 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설치주체와 비용부담자를 명확히 함
- 사업시행자의 요청으로 전기간선시설을 지하로 설치할 경우에는 요청자와 공급자가 분담(2/1식)하도록 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함
 -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공급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 기반시설을 공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기간 내에 기반시설 설치를 완료하되, 기반시설 설치범위는 구역 밖에서부터 구역 경계선까지로 규정함
- 간척지활용사업에 필수적인 전기·통신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 시기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
-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농산물·축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유통 등 간척지활용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에 필수적임

현황 및 문제점

- 「주택법」 제23조, 「도시개발법」 제55조 등에서는 전기·통신·가스 및 난방 등의 공급자가 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련 시설	설치의무자	비용부담
- 도로 및 상하수도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 전기, 통신, 가스, 난방	해당 공급자	해당공급자
- 전기간선 지중화	공급자	공급자와 요청자가 2/1식

- 간척지는 새롭게 조성된 토지로 전기·통신·가스 및 난방 등의 기반시설이 미비하고 사업 규모가 방대하여 기반시설 설치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며,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에 분쟁 발생 소지가 있음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9조(기반시설의 설치) ①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은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한다. 다만, 사업시행자 등의 요청으로 전기간선시설을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땅 속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시설의 설치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실시계획의 승인 사실을 통지받은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전기시설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토지이용계획상 폭 6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이하 “개별필지”라 한다)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
2. 통신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통신시설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개별필지 경계선까지의 관로시설 및 최초 단자(端子)까지의 케이블시설
3. 가스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개별필지 경계선까지의 가스공급시설. 다만, 취사 또는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난방용은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개별필지에 정압(定壓) 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 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
4. 지역난방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열 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개별필지의 각 기계실 입구 차단밸브까지의 열 수송관

법

제21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그 공사가 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확인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그 준공검사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범위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시행령

제18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 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 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 조서 및 평면도
4. 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서 및 도면
5. 신·구 지적 대조도
6. 총 사업비 명세서

7.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공사가 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는지에 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시행령

③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적으로 보급되거나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농림수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간척지활용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간척지활용사업 시행지의 위치
4. 간척지활용사업 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

시행규칙

제4조(준공검사) ①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의 의

- 사업시행자가 당해 공사를 실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경우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승인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 실시계획의 변경이 있을 경우는 변경인가를 받은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 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간척지활용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일부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음

현황 및 문제점

- 시행자가 승인권자에게 준공검사 신청서를 접수하면 승인권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시 관계 행정기관(시·도지사)에게 준공검사 권한을 위임하여 시행함

- 준공검사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함
 - 준공검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 및 도면 등을 제출토록 함으로써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준공검사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바와 같이 시설물을 설치하였는지, 관계부처 협의사항 등을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시설물은 안전한지, 최종적으로 사업목적 달성에는 차질이 없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는 행정행위로서 필요

입법례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20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그 공사가 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확인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그 준공검사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시계획의 범위 안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62조(준공검사)** ①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 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61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할 때에 그 내용에 제61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제되는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 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 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 조서 및 평면도

4. 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서 및 도면

5. 신·구 지적 대조도

6. 총사업비 명세서

7. 법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할 때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준공검사)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22조(조성토지 등의 사용·처분) ①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실시계획에서 정한 조성된 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매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 또는 매각에 관한 업무를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매각하는 조성토지 등의 용도, 임대·매각의 절차·방법 및 대상자, 위탁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시행자 또는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매립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농업법인에 대하여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시행령

제19조(조성토지 등의 용도) 사업시행자[법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임대 또는 매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20조,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에서 같다]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임대·매각하려면 제2조 각 호의 용도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조성토지 등의 임대·매각의 절차·방법) ①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대·매각하려면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2. 농업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3. 시장·군수·구청장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4.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②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대·매각하려면 신청 마감일 10일 전(긴급한 경우 또는 재공고의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임대·매각 대상 자격자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1. 사업시행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면적 및 용도(용도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을 포함한다)
3. 임대·매각의 시기·방법 및 조건
4. 예정임대료 또는 매각 예정가격과 낙찰자 결정방법(낙찰자 결정방법은 경쟁입찰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임대·매각 신청 기간 및 장소
6. 제21조에 따른 임대·매각 대상 자격자에 관한 사항
7. 입찰 신청 시 구비서류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해당 매립사업의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2분의 1 이상 또는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농업법인에 우선 임대할 수 있다.

④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예정임대료는 해당 지역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하여 정하며, 매각 예정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예정임대료 및 매각 예정가격은 공개하여야 하며, 경쟁입찰 시 예정임대료 및 매각 예정가격 미만의 액수로 응찰한 것은 무효로 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임대·매각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임대통지서 또는 매각통지서를 내주어야 한다.

⑦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각 대금 납부방법과 그 밖에 매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조성토지 등의 임대·매각 대상 자격자)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처분계획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대·매각하려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매각하여야 한다.

1. 임대 대상 자격자

- 가.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농업법인
- 나. 지방자치단체
- 다. 한국농어촌공사

시행령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마. 해당 매립사업의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피해를 입은 어업인으로서 농업인이 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구성된 농업법인

2. 매각 대상 자격자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 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전문농업인(專業農業人)

나.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시·군·구에 있는 농업법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시·군·구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대책이 필요하여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자

마. 해당 매립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정해진 토지 또는 건축물은 같은 용도로 사업을 하려는 자(제3호의 경우에는 농업법인만 해당한다)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1. 농업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사업

2. 영농시범사업 또는 농업교육훈련사업

3. 농산물·축산물의 생산·가공·저장 또는 유통시설 단지를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사업

시행규칙

제5조(조성토지 등의 임차신청서 등) 영 제20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입찰 신청서 구비서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차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매입신청서로 한다.

제6조(조성토지 등의 임대통지서 등) 영 제20조제6항에 따른 임대통지서 및 매각통지서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조성토지 등의 매각 대금 납부방법) ① 영 제20조제7항에 따른 매각 대금은 별지 제7호서식의 매각통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각 대상이 농지인 경우 그 매입자가 분할납부를 원할 때에는 매각 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만 먼저 내고, 나머지는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낼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법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임대 또는 매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매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매각 대금을 내지 아니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 연체이자율 중 가장 높은 연체이자율의 한도 내에서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연체이자율로 산정한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각 대금 및 연체이자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를 산정, 매각 대금 및 연체이자의 납부 연기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기준에 따른다.

1. 영 제2조제1호 중 농산물 생산 단지의 용도로 매각한 경우

2.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하여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서 재배하는 농산물에 30퍼센트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의 의

□ 간척지 조성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경우 생활터전을 상실하여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우선 임대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매립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으로 구성되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우선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에게 특별한 정책적 배려를 함으로써 연고지에서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영위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보다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임

□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농산물·축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한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은 사업목적에 맞게 활용되어야 하며,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률과 배치되지 않게 규정하여야 함

현황 및 문제점

- 「농어촌정비법」,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에서도 매각, 임대, 임대의 구체적인 대상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음
- 임대·매각 등의 절차·방법 및 대상자 등의 세세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할 경우 현장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제도 운영에 어려움

입법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19조(조성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실시계획에서 정한 조성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계획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매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대·매각하는 조성토지의 용도, 임대·매각의 절차·방법 및 대상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조성토지 등의 공급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은 추첨방식으로 매각 또는 임대(이하 "공급"이라 한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조성토지등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성토지등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2. 학교시설용지·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공급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3.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4. 발전촉진지구에서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하거나 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이 필요하여 특별설계 등의 공모에 응하여 선정된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에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하는 경우

6.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공급신청 마감일 10일(긴급한 경우나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거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개별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조성토지등의 위치 및 면적(건축물의 경우에는 연면적과 구분면적을 포함한다)

3. 조성토지등의 용도(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을 포함한다)

4. 공급 시기·방법 및 조건

5. 공급 가격(임대의 경우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포함한다) 또는 가격 결정방법

6. 공급 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7. 공급 신청의 기간 및 장소

⑤ 사업시행자는 제19조제3항 각 호의 용지로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조성토지등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붙일 수 있다.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2조(매립지등의 관리·처분계획 등)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14조에 따라 매립지·간척지·개간지·취토장(取土場)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을 임대, 매각, 직접 사용 또는 일시 사용으로 관리·처분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업인(이하 "전업농업인"이라 한다) 등의 농업경영 규모 확대

2. 농어촌정비사업의 목적 달성

3. 해당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재투자 재원 확보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세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관리·처분 수익금 추정액은 공고하지 아니한다.

1. 관리·처분계획별 구획 및 면적

2. 관리·처분 대상자 결정방법

3. 관리·처분 일정

4. 관리·처분 수익금 추정액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으로 조성한 매립지등이 같은 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는 같은 법 제6조 및 제44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출자하거나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13조(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대상 자격자) 토지 소유자 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2조에 따른 매립지등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매립지등 중 농지를 임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지역이 속하는 시(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광역시 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 지역에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

2. 지방자치단체

3. 한국농어촌공사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 해당 매립지등 조성사업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피해를 입은 어업인으로서 농업인이 된 자를 포함한다)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제14조(매립지등의 임대 절차 및 방법) ① 매립지등을 임차하려는 자는 토지 소유자 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지등 임차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대상자 자격 요건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결정하되, 임차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대상자를 결정하면 임차 대상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지등 임대통지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매립지등의 임대기간, 임대료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매립지등 중 농지의 매각 대상 자격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2조에 따른 매립지등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매립지등 중 농지를 매각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각하여야 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과 전업농업인
2. 해당 사업지역이 속하는 시·군·구에 있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해당 농지가 속하는 시·군·구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4.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대책이 필요하여 해당 농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자
5. 해당 매립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제16조(매립지등의 매각 절차 등) ① 매립지등을 매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매립지등 매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7조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하면 매각 대상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지등 매각통지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매립지등 매각통지서를 받은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이라도 조건을 정하여 매립지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매립지등의 매각 대금의 납부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매립지등의 매각방법)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매립지등을 매각하려면 경쟁입찰로 매각하여야 한다.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지등을 제한경쟁입찰로 매각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의 설치 사업 용도로 매각하는 경우

2.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3. 매립지등의 위치나 여건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이 곤란한 경우. 다만, 제12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지등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2. 제19조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업 용도로 매각하는 경우

3. 시장·군수·구청장이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제19조제2호의 사업 용도로 매각하는 경우

4.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제18조(매립지등의 매각예정가격) ① 토지 소유자 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7조에 따라 매립지등을 매각할 때의 매각예정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각예정가격은 공개하여야 한다.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조(매립지등의 입차신청서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매립지등 입차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매립지등 임대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매립지등의 매입신청서 등)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매립지등 매입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매립지등 매각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납부 방법) ①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매각 대금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각 대상이 매립지등 중 농지이고, 매입자가 영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각 대상 자격자인 경우: 매입자가 분할납부를 원하면 매각 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을 한꺼번에 내고, 그 남은 금액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낼 수 있다.

2. 제1호 외의 경우: 매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매립지등 매각통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매각 대금 전액을 내야 한다.

② 매입자가 납부기한까지 매각 대금이나 이자를 내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경작 목적으로 매각한 매립지등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로 농작물의 피해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및 이자의 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

인용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를 후계농어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 또는 후계어업경영인(後繼漁業經營人)(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전업농어업인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농어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어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어업인(이하 "전업농어업인"이라 한다)을 육성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업농어업인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간척지의 관리 및 운영

법

제23조(관리권자 및 관리기관) ①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관리권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되며, 관리권자는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를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간척지의 임대 안내 및 상담
2. 임대계약의 체결
3. 이용자(제22조에 따라 간척지를 농업적 이용 목적으로 사용 또는 임차·매입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권리 보호
4. 공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
5.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영농기술 및 경영지도 등의 지원
6.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관리기관은 도로, 공용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시행령

제22조(공동부담금의 징수)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공동부담금은 공동시설을 사용하여 얻은 수익의 정도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그 수익의 정도를 산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비용 전체를 용지면적·건축연면적 및 종업원수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부담비율에 따라 징수한다.

② 관리기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공동부담금을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운영 상황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8조(관리기관의 업무) 법 제23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임대료의 수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제9조(공동시설) 법 제23조제3항에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1. 간척지활용사업구역에 있는 도로
2. 가로등
3. 상하수도시설
4. 수질오염방지시설
5. 조경시설
6. 안전시설
7. 공공복지후생 시설

의 의

-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관리권자를 농림수산물부장관으로 하고,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를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관리기관은 간척지의 임대 안내 및 상담, 임대계약의 체결, 공동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되, 도로, 공동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공동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간척지를 농업적 이용 목적으로 사용 또는 임차·매입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부터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공동시설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자에 대하여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이용하는 자가 공동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를 위한 공동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적정함

입법례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0조(관리기관의 업무) 관리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제1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요구 등
2. 제31조에 따른 보험료의 수납
3. 제32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등
4. 예금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업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6.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부실조합등의 관리와 지원에 관한 업무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공동부담금) ① 삭제 <2010.2.4>

② 제53조에 따른 관리기관은 물류단지 안의 폐기물처리장, 가로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입주 기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동부담금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공동부담금의 징수) ① 법 제56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단지의 도로
2. 수질오염방지시설
3.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관리기관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을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공동시설 사용에 따른 수익의 정도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그 수익의 정도를 산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비용 전체를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용지면적·건축연면적 및 종업원 수에 따라 산출한 부담비율에 따라 징수한다.

③ 관리기관은 공동부담금을 물류단지의 운영 상황에 따라 매월 또는 매 분기별

로 징수할 수 있다.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법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이 경우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7.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2(공동시설의 범위) 법 제37조제2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동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하수도시설
2. 조경시설
3. 근로자 체육시설
4. 안전시설
5. 민방위시설
6. 수방시설
7. 유수지(遊水池) 시설
8. 공공복지후생 시설
9. 그 밖에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 경우 입주업체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법

제24조(임대차계약 등) ① 제22조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과 임대차에 관한 계약(이하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임대차계약 사항 중 계약기간, 임대면적, 임대료의 부과 및 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임대차계약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임대차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3조(조성토지 등의 임대기간 등) ①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대기간은 5년(농산물·축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 목적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토지의 경우에는 30년) 이내로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토지의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물의 임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대면적은 임차하는 자의 임대료 납부능력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 중 경작목적으로 임대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하여 농작물에 30퍼센트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임대료 및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율 산정 및 임대료·연체이자의 감면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기준에 따른다.

시행규칙

제10조(임대차계약의 변경) 법 제24조제3항에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임차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2. 임대차계약 기간
3. 임대면적
4. 임대료
5. 임대목적

제11조(임대차계약 등의 보고) 사업시행자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임대차계약 또는 변경계약 현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농림수산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의 의

-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은 조성목적에 맞게 활용도록 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대기간을 정하였으며, 임대차계약 사항 중 주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성토지 등의 선량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매분기마다 농림수산물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대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농산물·축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 목적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토지의 경우에는 30년 이내로 하여 임차의 수익을 보장함
- 임대기간의 갱신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조성토지 등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성토지 등의 선량한 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 사항 중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음
 - 조성토지 등은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가능하도록 적정 임대기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권익위의 부패방지평가결과 반영
 - 자연재해로 농작물의 피해가 30퍼센트 이상인 경우 임대료나 연체이자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경감기준이나 범위 등을 규정하지 않아,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에게 과도한 재량부여 및 경감 받으려는 자의 불법 로비 등 부패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감기준 및 범위 등을 정하여 고시토록 개선 함

입법례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조(매립지등의 임대기간 등) ①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매립지·간척지·개간지·취토장(取土場)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의 임대기간은 5년(영 제19조제5호의 경우에는 30년) 이내로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임대료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임대하려는 매립지등의 해당 지역의 임대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매립지등의 임차인은 제2항에 따른 임대료를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매립지등을 경작 목적이거나 영 제19조제5호의 목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과 협의하여 납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매립지등의 임차인이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임대료를 내지 아니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연체이자율로 산정한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경작 목적으로 임대한 매립지등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로 농작물의 피해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매립지등의 임대료 및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다.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입주계약신청 등) ① 법 제38조제1항·제3항 또는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취득(분양에 의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임대받기 전에 미리 별지 제25호서식의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서에 별지 제2호

의2서식의 사업계획서(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사업계획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련 법규의 인가·허가 등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거나 받을 수 있을지를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 결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입주계약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5조(입주계약사항의 변경) ①법 제38조제2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업종(공장의 경우에는 영 제18조의2제4항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또는 사업내용

3. 부지면적. 다만, 공장부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부지면적의 변경은 제외한다.

가. 변경하려는 자가 설립 중인 공장일 것

나. 변경면적이 당초 입주계약체결 시의 공장부지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일 것

다. 변경 후의 기준공장면적률이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할 것

4. 건축면적.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의 변경만 해당하며,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공장건축면적의 변경은 제외한다.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입주계약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입주계약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변경사항에 대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장등록을 완료한 입주기업체가 제2항에 따른 입주계약 변경신청을 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등록사항변경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④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변경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계약이 체결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입주계약 변경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법

제25조(임대차계약의 해지 등) ①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임대목적과 다르게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제24조제3항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4. 그 밖에 임대차계약목적에 따른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자는 남은 업무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농림수산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행령

제24조(임대차계약의 해지 후 남은 업무의 처리)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임대차계약 해지 당시에 이미 계약이 체결된 농산물·축산물의 생산·가공·저장 또는 유통 업무와 이에 관련되는 부대업무를 말한다.

②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3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사업시행자가 기간을 정하여 연장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까지 처리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12조(임대차계약의 해지)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이 규칙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의 의

-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자와 계약 해지에 대한 분쟁을 없애기 위하여 법령에서 계약해지사유를 명확히 함
 - 관리기관 또는 사업시행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계약 당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계약해지 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여 임차자를 보호함

입법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입주계약 해지 후의 재산처분 등) ① 제42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 중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소유하는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② 제42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 중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경우로 그 소유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한 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여야 하며, 폐업한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입주기업체에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양도가격에 관하여는 제39조제5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양도되지 아니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은 제39조제5항에 따른 가격으로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입주계약해지 후의 남은 업무의 처리) ① 법 제42조제2항에서 "남은 업무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입주계약 해지 당시에 이미 계약이 체결된 물품의 제조·가공·하역·수송·보관 및 수출입 업무와 이에 관련

되는 부대 업무를 말한다.

②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남은 업무는 3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기간)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공장용지의 사용이 불가능하여 공장착공이 지연된 경우

2. 그 밖에 입주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불가피하게 공장착공이 지연된 경우로서 관리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법

- 제26조(영농편의 제공)**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용자의 영농편의를 위하여 간척지에 적합한 작물 및 품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에 적합한 작물과 품종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 작물과 품종에 관한 재배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를 반영하여 2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 재배작물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재배작물과 품종, 재배방식, 작물관리 방법 등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의 의

- 간척지는 토양 및 담수호의 염도, 토질조건, 기반시설 여건 등이 일반 농경지와 차이가 있고 불리하여 재배 작물 및 품종 선택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간척지에서 성장할 수 있는 재배작물 및 품종 등을 연구하고 보급하여 이용자가 간척지에 적합한 작물과 품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해당 지역 간척지에서 성장할 수 있는 재배작물 및 품종 등을 연구·보급하여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 해당 지역 간척지에서 성장할 수 있는 재배작물 및 품종 등을 연구·보급하여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현황 및 문제점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간척지농업과에서 간척지의 토양조사, 토양환경개선, 담수호 수질보전연구, 간척지 이용 작부체계에 관한 시험연구 및 간척지 적응 작물재배법 개발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간척지는 토양 및 담수호의 염도, 토질조건, 기반시설 여건 등이 일반 농경지와 차이가 있어 재배 작물 및 품종 선택에 어려움이 있음

제27조(국가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도로, 용수·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제20조에 따른 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은 제외한다) 및 그 밖의 간척지 이용에 따른 기반시설 및 공사
2. 농산물산지유통시설 등 그 밖의 공용시설
3. 그 밖에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간척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판매촉진 사업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에 활용하는 사업
3. 그 밖에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8조(지원금의 환수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이 과오지급된 경우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29조(기금 등의 활용) 이 법에 따른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재원으로 농지관리기금 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 지원기금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30조(재해예방대책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풍, 조풍(潮風), 해일(지진해일을 포함한다), 황사 등 자연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해안방재림(海岸防災林)의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5조(국가의 지원 등) ①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 시설에 부수되는 하수도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간척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 수출에 필요한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의 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국가는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간척지활용사업 시행자와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
 - 기반시설·공공시설, 시설·운영자금 등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규정을 둠으로써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활성화 도모
- 국가가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와 간척지활용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재원의 출처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가 지원의 실효성 확보
- 국가와 지자체가 태풍, 조풍(潮風) 등 간척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의 예방대책을 사전에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는 농작물재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철저히 방지하고 피해발생 시에는 충분한 보전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확보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5조제1호의 농작물재해보험이 적용되는 보험목적물을 재배하는 자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 제5조(보험목적물)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작물재해보험: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

현황 및 문제점

- 「농어촌정비법」 제108조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는 간척지 및 농업기반시설의 관리, 보수 및 보강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규정
- 기반시설·공공시설의 투자 및 비용의 지원과 이용자에 대한 시설·운영자금의 지원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제1항제5의2호 및 제13조에서는 간척지와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농지관리기금의 지원근거를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농어업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용도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해당 법률의 “기금의 용도”에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 간척지활용사업을 포함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제18조에 따른 농지매매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2. 제19조에 따른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및 장려금의 지급
3. 제22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시행·알선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 및 집단환지사업의 청산금 용자 및 필요한 경비의 지출
4. 제2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및 투자
5. 제24조의2에 따른 농지의 매입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 5의2. 다음 각 목의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의 관리, 보수 및 보강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투자
 - 가.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공사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인수하여 임대한 간척농지
 - 나. 가목에 따른 간척농지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방조제, 양수장, 배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반시설
6. 제24조의3에 따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7.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용자

8.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의 보조·용자 및 투자
 9. 농지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및 투자
 10.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1.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용자 및 투자
 12.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13. 그 밖에 기금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의 결과 발생한 결손금(缺損金)은 기금의 부담으로 손비(損費)처리할 수 있다.
-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다른 기금으로 예탁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3. 금융기관에 예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5조에 따른 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 지원
2.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피해보전
3. 제9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폐업 지원
4. 제10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5. 제11조에 따른 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업의 지원
6. 제14조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제22조에 따른 농산물 수입이익금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지출
8.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9. 그 밖에 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입법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목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

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교통시설 :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2. 공간시설 :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3.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 시설, 공동구·시장, 유통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장례식장·도축장·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 WTO 농업에 관한 협정

제9조(수출보조금 약속)

라. 취급, 등급향상과 다른 가공 비용 및 국제운송 비용을 포함하여, 농산물 수출에 대한 유통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한 보조금의 제공 (광범위하게 이용 가능한 수출증진 및 자문서비스는 제외)

마. 국내 수송물량에 비해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정부가 제공하거나 의무화한 수출물량에 대한 국내 운송비

인용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13조(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법

- 제31조(간척지의 운영 평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매년 간척지별로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간척지별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 제26조(간척지의 운영 평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간척지별로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평가를 하려면 평가계획을 세워 사업시행자와 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와 관리기관은 제1항의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와 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 ④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척지별 농업적 이용에 따른 기본방향과의 적합성 및 목표 달성도
 2. 간척지활용사업 추진과정의 효율성
 3.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 또는 임대·매각의 적정성
 4.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 또는 임대·매각 대금 관리의 적정성
 5.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관리의 적정성

의 의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매년 간척지별로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간척지별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 하도록 하여 사업의 피드백과 효율적인 관리를 담보하고자 함

입법례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 제47조의2(특구운영의 평가) ① 특구위원회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고려하여 특구운영의 성과를 평가한다.
- ② 특구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를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시기가 종료된 후 18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특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공개의 방법과 그 밖에 특구위원회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28조의3(경제자유구역별 사업성과의 평가)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별로 사업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별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 제69조(농어촌산업 육성 관련 평가의 기준 및 절차)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하려면 평가계획을 세워 시·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④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 관련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타당성
 2. 목표의 달성도 및 성과
 3. 집행과정의 효율성

법

제32조(관계 서류의 열람 등)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요청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서류의 교부에 필요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의 의

- 사업시행자가 간척지활용사업을 시행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서류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시행자의 무담을 완화하고, 서류의 발급을 원활히 하여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입법례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8조(관계 서류의 열람 등) ① 공사는 제10조의 사업을 할 때 필요하면 등기소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서류의 열람·복사 또는 등·초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공사는 농지관리업무 및 농지은행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토지의 전산자료 조회·검색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3조(관계 서류의 열람 등)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법

제33조(보고·검사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업시행자 및 관리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의 의

- 간척지 활용사업의 체계적인 시행과 관리운영에 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보고·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의 부실로 인한 낭비를 줄이는 동시에 사업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
- 보고 및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부·서류의 검사권한과 출입권한을 부여함

입법례

□ 건축법

제87조(보고와 검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그 소속 공무원, 제27조에 따른 업무대행자 또는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건축물의 건축주등, 공사감리자 또는 공사시공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물·대지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그 건축물, 건축설비, 그 밖에 건축공사에 관련되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시험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나 시험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도시개발법

제74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지정권자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나 회계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34조(행정처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에 포함된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2.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간척지활용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간척지활용사업을 시행한 경우
4.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간척지활용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7조(행정처분의 사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파산에 준하는 정도로 사업시행자의 재무구조가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제28조(행정처분의 고시)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간척지활용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위치
4. 위반행위의 내용
5. 행정처분 내용 및 처분기간 등

시행규칙

제13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의 의

- 행정관청·행정기관 등 행정주체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로서 행정처분을 취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별도의 근거가 법률에 존재해야 하며, 행정처분에 의한 면허·허가의 취소 등 행정제재 및 그 허가사항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법률유보의 원칙상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규정이 필요함
-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고, 위반행위의 내용 등 주요사항을 고시하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취소처분의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함

입법례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7조(행정처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에 포함된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2.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경우
4.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5.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행정처분 사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파산에 준하는 채무구조 악화를 말한다.

제20조(행정처분 고시)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고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 시행지의 위치
4. 위반행위의 내용
5. 행정처분 내용 및 처분기간 등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행정처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지정을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사업시행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의 지속 전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행정처분) ①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사업시행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시행자가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더 이상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업시행자의 명칭, 위반내용,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기간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행정처분) ①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서 "사업시행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시행자의 파산 또는 그 밖에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더 이상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지정권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업시행자의 명칭, 위반 내용, 행정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처분기간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

제35조(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조치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변경
2. 제3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3. 제34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

의 의

- 행정청이 각종 처분을 하거나 법령·제도·정책 등을 제정·수립·변경하는 경우 정확한 판단자료를 얻고, 이해관계인에게 변명 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처분 등의 상대방 기타 이해관계인이나 학식·경험을 가진 일반인의 의견청취 규정을 두고자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이 법률에 따라 행하는 허가·면허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제재에 앞서 구체적인 절차 등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 소명 등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입법례

농어촌정비법

제118조(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0조 본문에 따른 환지사 자격의 취소
2. 제32조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및 3년 이내의 업무정지
3. 제57조제1항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의 설립인가의 취소
4. 제64조에 따른 빈집 소유자에 대한 철거 명령
5. 제75조제5항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 취소
6. 제89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의 사업장 폐쇄명령 및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7. 제116조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또는 지정의 취소, 공사의 중지,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원상회복 조치

법

제3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및 통보
4.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에 관한 권한
5.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6.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의 발급 및 공사완료의 공고
7.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8. 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고시
9. 법 제3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청문
10.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

②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영농편의 제공 업무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의 의

- 법령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그 권한의 일부를 지방 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수입·수탁기관의 명의로 책임으로 그 행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행정목적은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함
- 행정청의 권한은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권한의 위임은 법률이 정한 권한의 분배를 대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제정 법률에 따라 신규로 부여받은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필요로 함

입법례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9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이 법에 따른 조사·연구 및 댐건설 등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권한의 위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의 접수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4. 법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및 고시
5.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6.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7.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의 교부
8.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9. 법 제21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 및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 명령
10.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11.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고시
12. 법 제28조에 따른 청문
13.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권한의 위임 등)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댐수탁관리자에게 위탁된 경우와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승인·변경·폐지·고시 및 통지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 준공인가 증명서의 발급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고시
3.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시행에 대한 허가 및 하천의 점용허가 등
4.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신고의 수리

5.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6. 법 제4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처분
 7. 제6호의 처분과 관련된 법 제47조에 따른 청문
 8. 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시·도지사가 건설하는 댐은 제외한다)
- ②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권한 중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박 운항 행위허가,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허가 및 이들 행위허가에 딸린 「하천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허가
 2. 제1호의 허가과 관련된 법 제4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5호가목의 처분과 이에 관련된 법 제47조에 따른 청문
 3. 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시·도지사가 건설하는 댐으로 한정한다)
- ③ 지방국토관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댐수탁관리자 또는 댐건설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8조의2(업무의 위탁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

1. 댐건설을 위한 조사
2. 댐 관련 연구
3. 댐건설사업의 시행
4. 댐 설계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법

제37조(별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의 의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제132조(알선수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를 공무원으로 간주
- 수탁업무의 특성상 공무원에 준하는 청렴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인의 경우에는 처벌되는 않을 행위일지라도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처벌함

입법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4(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전문위원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전문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전문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농어촌정비법

제129조(별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109조제1항, 제114조제3항, 제1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별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인용법령

□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6장 벌칙

법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2.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3.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5. 제13조제5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7.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그 임차자(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8.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중단하지 아니한 임차자
9.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
10. 제34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의 의

-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보호 법익의 중요성, 예상되는 피해의 규모 및 사회적 비용 등에 따라 형사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함
-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에 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 그 위반자에게 상당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음을 예고함과 아울러 현실적으로 그러한 위반이 발생할 경우에 그 위반자에게 형벌을 과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수단으로 규정함

입법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한 자
2.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한 자
3. 제54조를 위반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
4. 제76조(같은 조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한 자
5.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3.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4.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5.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성 분석자료에 대비한 개발사업 시행 결과를 제출한 자 또는 의견을 제출한 회계법인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법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 의

- 양벌규정은 형사법상 자기책임주의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그러한 양벌규정을 행정처분의 근거로 규정한 법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에 맞게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요구됨
- 법인에는 공법인인 “국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국가”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가 아니므로 국가를 제외한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규정을 위반한 때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처벌의 규정을 둠

입법례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및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0조부터 제1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5항에 따른 행위를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3.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시행령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의 의

- 간척지활용사업과 관련하여 국민의 권리·의무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규정을 두어 행정의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하며,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름
- 과태료 부과와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범위반 횡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와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함

입법례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2. 제13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공유수면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1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1호	80만원
2. 법 제13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공유수면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2호	80만원

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50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간척지활용사업구역
-----	--------------------------------	-----------

시행령

이 영은 2013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 의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서는 각각의 개별법에 따라 지역·지구 등을 신설할 경우 다양한 지역·지구 등이 누진적으로 지정·운영됨으로 인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의 지역·지구 지정이 남발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일반 국민의 토지이용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 수준에 맞추어 기본법 별표와 동법 시행령,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시에 따른 것을 제외하고는 지역·지구 등의 신설을 제한하고 있음
- 부칙에서 기본법 별표를 개정하여 법률 간의 충돌과 법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지역·지구 지정에 대한 지역주민 등 토지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된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형도면의 고시 등 운영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르도록 하고 부칙을 통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개정함

입법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부칙(법률 제9762호)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37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구역
-----	----------------------------------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9778호)

제3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3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마리나항만구역
-----	--------------------------------	---------

별표 및 별지서식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제3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를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를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1호	100	200	400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행위를 가로막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2호	100	200	400
다.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3호	100	200	400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4호	100	200	400

[별표]

행정처분기준(시행규칙 제1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처분기준의 "1차"는 처음 위반행위가 있을 때의 처분을 말하고, "2차"는 1차 처분 시 이행을 요구한 기간 내에 해당 처분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부과하게 되는 처분을 말하며, "3차"는 2차 처분 시 이행을 요구한 기간 내에 해당 처분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부과하게 되는 처분을 말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1호	허가취소 또는 승인취소		
나.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 파산에 준하는 재무구조 악화로 인하여 간척지활용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2호	공사 중지 또는 변경	허가취소 또는 승인취소	
다.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간척지활용 사업을 시행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3호	시정명령이나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명령	공사 중지 또는 변경	허가취소 또는 승인취소
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 부터 2년 이내에 간척지활용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4호	시정명령	허가취소 또는 승인취소	

(앞 쪽)

제 호

신 분 증

사 진
3cm × 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

55mm × 85mm [보존용지(1종) 120g/㎡]

(색상: 연노랑색)

(뒤 쪽)

신 분 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활동기간:부터까지

위 사람은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
라 조사·측량을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직인

1.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
유자 및 점유자는 이 증을 지닌 사람이
조사·측량을 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하였을 때에는 가까운 우체통
에 넣어 주십시오.

[별지 제2호서식]

준공검사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개월
신청인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사업명칭	실시계획 승인 일	
	사업위치	준공면적	㎡
	시설의 개요		
	총사업비	천원	사업시행기간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간척지활용사업의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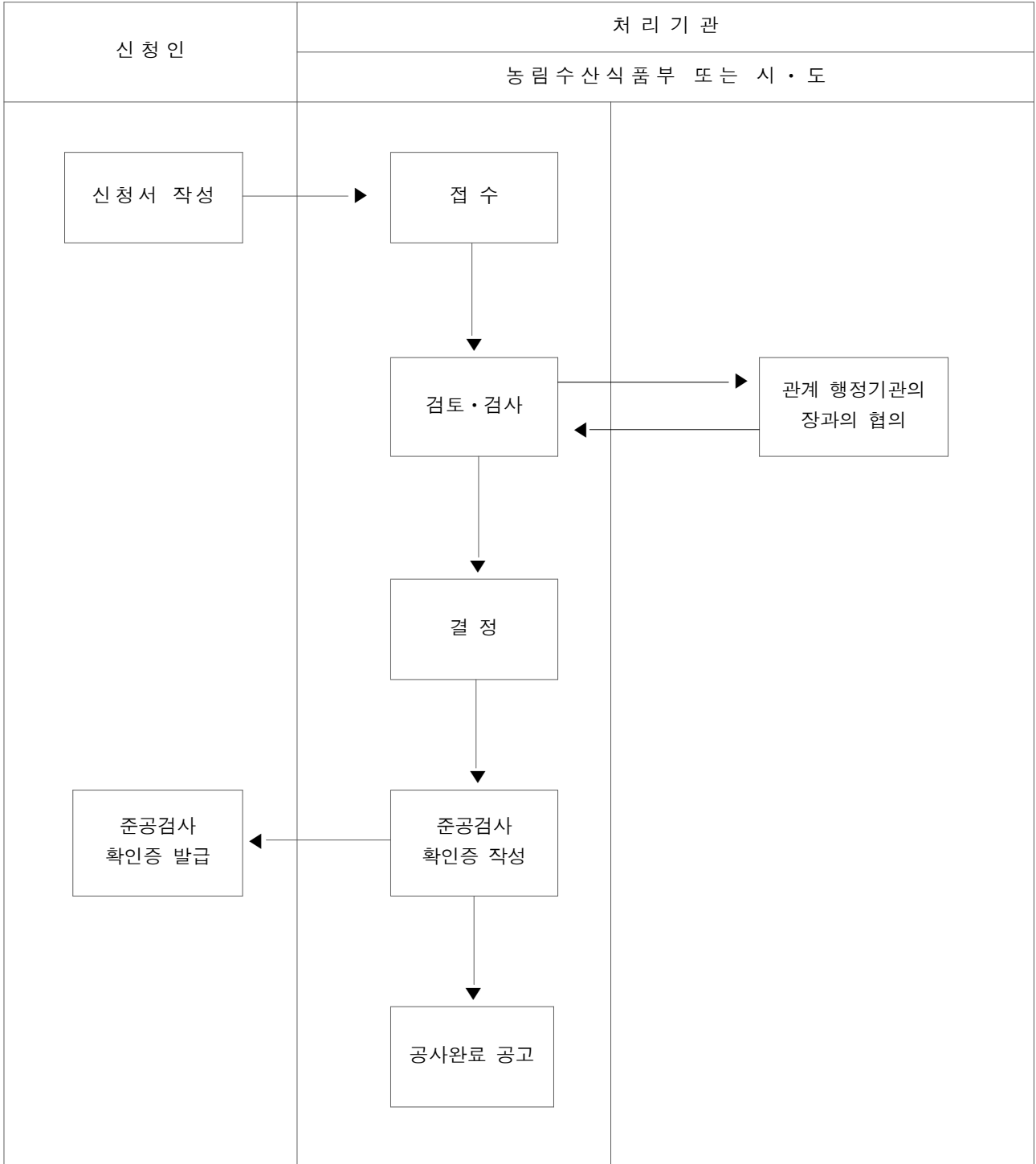
농림수산물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준공 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지적측량 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 조서 및 평면도 4. 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서 및 도면 5. 신·구 지적 대조도 6. 총사업비 명세서 7.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 호

준공검사확인증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1. 사업명칭:
2. 실시계획 승인일:
3. 사업위치:
4. 준공면적:
5. 준공 연월일:
6. 준공검사 사항(확정 측량조서 및 지적도 별첨)

년 월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직인

[별지 제4호서식]

조성토지 등(토지 건축물)의 임차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번호		
④ 임차 희망지	소재지 (잠정 지번)	지목	임차면적 (㎡)	임차기간	㎡당 임차료 (원)	임차 총액 (원)
⑤ 신청자격	[] 영농조합법인 [] 한국농어촌공사		[] 농업회사법인 [] 조합 및 중앙회		[] 지방자치단체	
⑥ 임대목적						
사용개시 연 월 일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의 임차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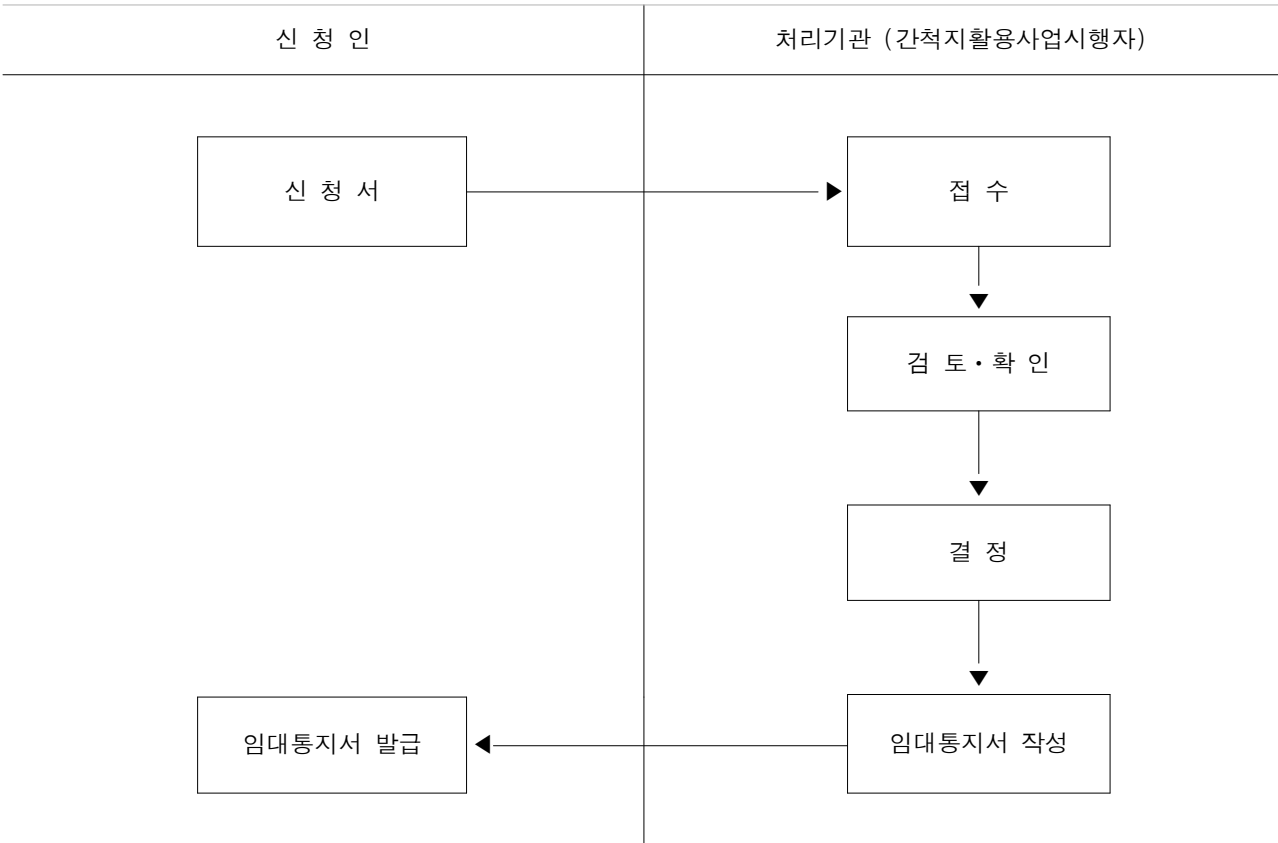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조성토지 등의 임차신청 안내

제출 및 처리기관	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
작성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인은 대표자의 명의를 적습니다. ②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개인은 주민등록지 주소를,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주소를 적습니다. ④ 임차기간은 5년 이내로 적습니다. ⑤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조합법인: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시·군·구에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 해당 매립사업의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피해를 입은 어업인으로서 농업인이 된 사람을 포함합니다)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시·군·구에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해당 매립사업의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피해를 입은 어업인으로서 농업인이 된 사람을 포함합니다)으로 구성된 농업회사법인 -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조합 및 중앙회: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⑥ 임대목적: 토지 또는 건축물의 구체적인 용도를 적습니다(농축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단지, 말산업 관련 시설 용도, 시험·연구 및 교육·훈련 시설 등).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조성토지 등(□ 토지 □ 건축물)의 매입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번호			
매입 희망지	소재지 (잠정 지번)	지목	매입면적 (㎡)	㎡당 가격 (원)	토지가격 (원)
④ 신청자격	<input type="checkbox"/> 후계농업경영인 <input type="checkbox"/> 전업농업인 <input type="checkbox"/> 영농조합법인 <input type="checkbox"/> 농업회사법인 <input type="checkbox"/> 피해농어업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⑤ 매각대금 납부방법	<input type="checkbox"/> 일시납부 <input type="checkbox"/> 분할납부				
⑥ 사용목적	사용개시 연월일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 토지 □ 건축물의 매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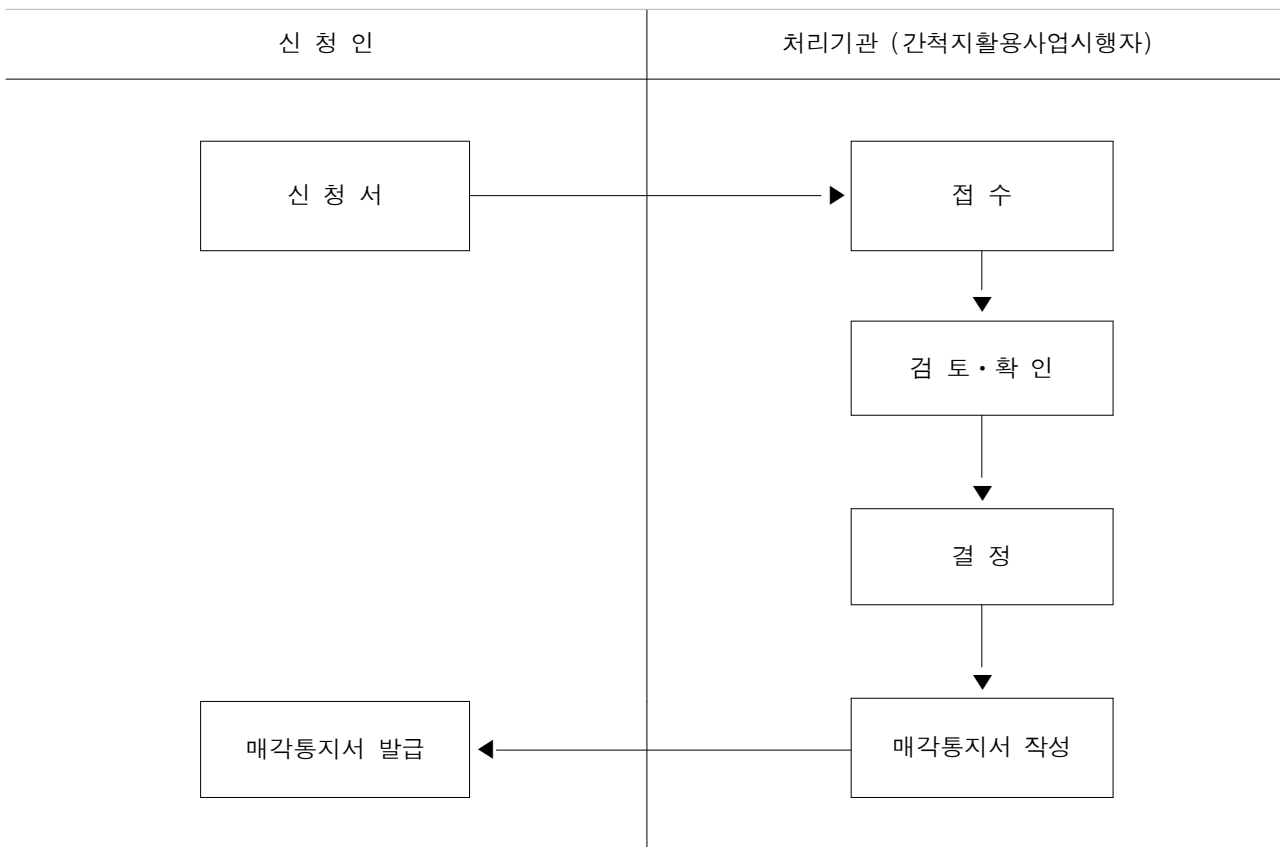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조성토지 등의 매입신청 안내

제출 및 처리기관	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
작성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인은 대표자의 명의를 적습니다. ②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개인은 주민등록지 주소를,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주소를 적습니다. ④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계농업경영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 전업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업인 - 영농조합법인: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시·군·구에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시·군·구에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 피해농업인: 해당 매립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 - 기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시·군·구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대책이 필요하여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자 ⑤ 매각대금 납부방법: 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에 표시합니다. ⑥ 사용목적: 토지 또는 건축물의 구체적인 용도를 적습니다(농축산물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단지, 말산업 관련 시설 용도, 시험·연구 및 교육·훈련 시설 등).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6호서식]

조성토지 등(토지 건축물)의 임대통지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임대결정 토지내용	소재지 (잠정 지번)	지목	임대면적(㎡)	임대기간	㎡당 임대료 (원)	임대 총액 (원)
계약에 관한 사항						
사용개시 연월일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의 임대 결정 내용을 위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조성토지 등(□ 토지 □ 건축물)의 매각통지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매각결정 토지내용	소재지 (잠정 지번)	지목	매각면적(m ²)	m ² 당 가격 (원)	매각대금 (원)
매각대금 납부방법	<input type="checkbox"/> 일시납부(납부기한: 년 월 일까지)		<input type="checkbox"/> 분할납부 (년 거치 년 납부) (상환기간: 년 ~ 년 년간)		
계약에 관한 사항					
사용개시 연월일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 토지 □ 건축물의 매각결정 내용을 위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Ⅲ. 법 제정 관련 참고자료

1. 보도자료
2. 농림수산물위원회 심사보고서
3.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검토보고서

간척지법 해설집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보도자료

제공일 : 2013. 1. 17.
제공자 : 농림수산물부 농업정책과
과 장 : 안 용 덕
사무관 : 강 경 만
전 화 : 044-201-1717
쪽 수 : 2P
별첨자료 : 없음

이 자료는 2013년 1월 18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간척지 이용 체계적으로 개편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올해부터 농업 목적으로 조성한 간척지의 이용이 체계적으로 개편된다.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간척지법”이라 함)이 1월 18일부터 시행되면서 간척지의 다양한 농업적 이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 종전에는 간척지활용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이 따로 없어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했다.
 - 이에 따라, 주로 벼농사 위주로 활용되던 간척지가 원예·축산 및 농·축산물의 가공·저장·유통시설 단지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어 농업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간척지법은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간척지활용사업의 추진 및 국가의 지원 등을 주요 내용

으로 2012년 1월 17일 제정·공포되었으며,

-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하위법령으로 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 간척지법과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장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 간척지활용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농식품부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 농산물·축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으로 간척지를 개발하는 사업

- 사업시행자*가 농식품부장관으로부터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개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의제처리하도록 하여 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 국가,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 지방공기업, 자본금이 일정 규모 이상인 농업법인

- 국가 및 지자체는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업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임대·매각 대상 자격자를 정하고,

* 임대 대상 : 해당 시·군·구에 소재한 농업법인,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등

* 매각 대상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해당 시·군·구에 소재한 농업법인, 해당 매립사업의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

- 조성토지 등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되도록 하되, 농업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에서는 올해부터 농업 목적으로 조성한 간척지의 이용이 체계적으로 개편된다고 밝혔다.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간척지법’이라 함)이 1월 18일부터 시행되면서 간척지의 다양한 농업적 이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 종전에는 간척지활용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이 따로 없어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했다.
- 이에 따라, 주로 벼농사 위주로 활용되던 간척지가 원예·축산 및 농·축산물의 가공·저장·유통시설 단지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어 농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간척지법은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간척지 활용사업의 추진 및 국가의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2012년 1월 17일 제정·공포되었으며,
 -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하위법령으로 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 간척지법과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해 농식품부에서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 간척지활용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농식품부에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 * 농산물·축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으로 간척지를 개발하는 사업
- 사업시행자*가 농식품부 장관으로부터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개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의제 처리하도록 하여 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 * 국가,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 지방공기업, 자본금이 일정 규모 이상인 농업법인
 - 국가 및 지자체는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업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임대·매각 대상 자격자를 정하고,
 - * 임대 대상 : 해당 시·군·구에 소재한 농업법인,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등
 - * 매각 대상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해당 시·군·구에 소재한 농업법인, 해당 매립사업의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
 - 조성 토지 등은 원칙적으로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공급되도록 하되, 농업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간척지, 농축산물 가공·유통단지 등으로 활용

‘간척지 농업적 이용·관리에 관한 법률’ 개편 시행 2013.1.25 금

그동안 벼농사 위주로 활용되던 간척지가 원예·축산 및 농축산물의 가공·저장·유통시설 단지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돼 농업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 목적으로 조성한 간척지의 이용을 체계적으로 개편한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18일부터 시행되면서 간척지의 다양한 농업적 이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간척지 활용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이 따로 없어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했다.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주로 벼농사 위주로 활용되던 간척지가 원예·축산 및 농축산물의 가공·저장·유통시설 단지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어 농업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간척지법은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간척지 활용사업의 추진 및 국가의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해 1월 17일 제정·공포됐으며,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하위 법령으로 정해 시행하게 됐다.

간척지법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해 농식품부에서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농축산물의 생산·가공·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으로 간척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농식품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간척지 활용사업 구역을 지정·고시토록 해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또 국가,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 지방공기업, 자본금이 일정 규모 이상인 농업법인 등 사업시행자가 농식품부 장관으로부터 간척지 활용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개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의제 처리토록 해 사업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국가 및 지자체는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간척지 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은 사업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임대·매각 대상 자격자를 정하고, 조성 토지 등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되도록 하되, 농업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2011. 12.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 11. 4 최인기의원 등 15인

나. 회 부 일 자 : 2011. 11. 7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11. 17)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1. 21)

상정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1. 22)

상정 · 심사 · 수정의결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12. 27)

소위심사보고 · 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최인기의원)

□ 제안이유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간척지의 경우 농지확보 등 농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성목적과 다르게 이용되는 사례가 많을 뿐만 아니라 해당 매립사업으로 피해를 입는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피해농어업인을 보호하며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간척지를 농업의 규모화를 위한 영농단지 및 선진화를 위한 첨단농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농업 및 관련 산업에 활용하도록 하며, 간척지활용사업에 국가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5년 마다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간척지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및 제7조).
- 나. 간척지활용사업은 국가가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협동조합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간척지활용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다.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에서 사용 및 처분계획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매각하되 해당 매립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농업법인에 대하여는 우선 임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용자의 영농편의를 위하여 간척지에 적합한 작물 및 품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 대하여 간척지 농산물의 판매촉진 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28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 지성배)

제정안은 농업의 규모화와 선진화를 위해 간척지에 농식품 가공 및 물류 단지 등을 조성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과 조성된 토지의 이용, 간척지 사용 농업인에 대한 시설 및 운영자금의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제정안은 간척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농업적 이용을 가능케 하여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며, 나아가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해당 매립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농업법인에게 우선 임대하도록 하여 피해 농어업인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다만, 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를 받아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국내판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수출보조금은 WTO 농업협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임.

또한, 제정안은 농작물재해보험의 목적물을 재배하는 간척지 이용자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는 보험가입의 자율성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일반 농지와 달리 간척지에만 특별히 재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할 실익은 낮아 보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이 외에 국가와 지자체가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간척지 임대차 계약의 해지 또는 기부를 요청하는 경우 양도자의 불복·구제절차 등의 제도마련

없이 양도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재산권 제한의 우려가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률안심사소위원장 정해걸 위원)

이 법안에 대해서는 WTO 농업협정과 저촉될 소지가 있는 간척지 이용자에 대한 수출보조금 지급과 국내판매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간척지 임대차 계약의 해지 또는 기부를 요청하는 경우 양도자의 불복·구제절차 없이 양도를 의무화하는 규정 역시 재산권 제한의 우려가 있어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의결하였음.

6. 심사결과

수정 의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내용

조세특례 관련 조항(안 제29조)을 삭제하고 기타 경미한 자구수정을 하였음.

8. 기타 사항

없 음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1. 12.

제안자 : 농림수산식품위원장

수정이유

WTO 농업협정과 저축될 소지가 있는 간척지 이용자에 대한 수출보조금 지급과 국내판매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간척지 임대차 계약의 해지 또는 기부를 요청하는 경우 양도자의 불복·구제절차 없이 양도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재산권 제한의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며, 농작물재해보험의 목적물을 재배하는 간척지 이용자에게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규정 역시 보험가입의 자율성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삭제함.

이외에도 간척지의 체계적인 농업적 이용과 관리를 위해 종합계획 수립시 자료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함.

수정주요내용

가. “간척지활용사업”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수정함(안 제2조제3호).

나.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자료요구권을 부여함(안 제5조제4항).

- 다. 간척지운영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대상과 임명 또는 위촉 주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제3항).
- 라. 국가와 지자체가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간척지 임대차 계약의 해지 또는 기부를 요청하는 경우 양도자의 불복·구제절차 없이 양도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26조).
- 마. 간척지 이용자에 대한 수출보조금 지급과 국내판매제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28조, 제31조).
- 바. 농작물재해보험의 목적물을 재배하는 간척지 이용자에게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33조제2항).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제고와”를 “강화와”로 한다.

안 제2조제2호 중 “제3조에”를 “제3조제1호가목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를 “농·축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한다.

안 제3조 중 “농업의 규모화와 선진화를 위한 영농단지 및 첨단농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농업 및”을 “농업과 그”로 한다.

안 제4조 본문 중 “간척지의”를 “이 법은 간척지의”로, “관하여는”을 “관하여”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법의”를 “법에 따른”으로, “완화되는”을 “완화된”으로, “있는 경우에는”을 “있으면”으로 한다.

안 제5조제3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로, “이를 고시하여야”를 “고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다”를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종합계획과”를 “종합계획, 시행계획과”로, “실시할”을 “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을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안 제7조제1항제3호 중 “제8조에”를 “제5조에”로,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변경지정에”를 “시행계획의 수립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0조에”를 “제8조에”로, “해제에”를 “지정·변경지정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27조에”를 “제10조에”로, “지원에”를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해제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그 밖에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을 “제27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간척지운영위원회”를 “간척지운영위원회의”로, “위원은”을 “, 위원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위원은 간척지 활용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 중에서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그 밖에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 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하려면”을 “지정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2항에”를 “제1항에”로 한다.

안 제9조 전단 중 “지정하려면”을 “지정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안 제10조제1항 중 “그 지정을”을 “지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로 한다.

안 제11조의 제목 중 “취소”를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업시행자”를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실시계획의”를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7조에”를 “제34조에”로, “실시계획”을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으로 한다.

안 제12조제1항 중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을 “사업시행자는”으로,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를 “수립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를 “실시계획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구성계획서”를 “구성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처분계획서”를 “처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을 “실시계획을”로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 제13조제1항 전단 중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간척지활용사업구역”으로, “구청장”을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대하여는”을 “대하여”로 한다.

안 제14조제1항 전단 중 “임시도로로서”를 “임시도로로”로, “죽목”을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로, “토석”을 “흙·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에”를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로, “출입하는 경우에는”을 “출입하려는 경우”로, “제거하고자 하는”을 “제거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를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그”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로 한다.

안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고”를 “해제·신고”로, “허가 등”을 “허가등”으로, “허가 등이”를 “허가등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신고사항의”를 “허가와 신고사항의”로, “가설 건축물의”를 “가설건축물의”로, “건축 협의”를 “건축협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의”를 “도시·군관리계획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사용실시계획의”를 “사용

실시계획의”로, “국가등이”를 “국가 등이”로, “면허”를 “협의”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도로관리청과의”를 “도로 관리청과의”로, “도로점용의 허가”를 “도로의 점용허가”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제11조에”를 “같은 법 제11조에”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토석채석허가”를 “토석채취허가”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 중 “공급타당성에”를 “공급 타당성에”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 중 “제86조제1항에”를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로 하며, 같은 항 제21호 중 “점용 허가”를 “점용허가”로 하고, 같은 항 제22호 중 “관리청과의”를 “하천관리청과의”로, “하천 점용 등의 허가”를 “하천점용허가”로 한다.

안 제20조제1항 단서 중 “2분의 1의”를 “100분의 50의”로 한다.

안 제21조제2항 후단 중 “보완 시공”을 “보완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허가 등에”를 “허가등에”로 한다.

안 제22조제1항 전단 중 “조성토지”를 “조성된 토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른”을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리기관이”를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관이”로, “간척지를”을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로 한다.

안 제23조제2항제6호 중 “위탁받는”을 “위탁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동시설의”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의”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안 제24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임대차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사항”을 “임대차계약 사항”으로 한다.

안 제25조제1항제1호 중 “토지를”을 “토지 또는 건축물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33조제2항에”를 “그 밖에 임대차계약목적에”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규정을 위반한”을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안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영농편의 제공)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용자의 영농편의를 위

하여 간척지에 적합한 작물 및 품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에 적합한 작물과 품종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 작물과 품종에 관한 재배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를 반영하여 2년 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 재배작물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재배작물과 품종, 재배방식, 작물관리 방법 등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7조(국가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도로, 용·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제20조에 따른 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을 제외한다) 및 기타 간척지 이용에 따른 기반시설 및 공사
2. 농산물산지유통시설 등 기타 공용시설
3. 그 밖에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간척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판매촉진 사업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에 활용하는 사업
3. 그 밖에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8조(지원금의 환수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이 과오지급된 경우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29조(기금 등의 활용) 이 법에 따른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재원으로 농지관리기금 또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어어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30조(재해예방대책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풍, 조풍(潮風), 해일(지진해일을 포함한다), 황사 등 자연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해안방재림(海岸防災林)의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안 제34조 앞의 “제5장 보칙”을 삭제하고, 제31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삽입한다.

안 제31조부터 제3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간척지의 운영 평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매년 간척지별로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간척지별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관계 서류의 열람 등)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서류의 교부에 필요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3조(보고·검사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업시행자 및 관리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4조(행정처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에 포함된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2.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간척지활용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간척지활용사업을 시행한 경우
4.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간척지활용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5조(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조치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변경
2. 제3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3. 제34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

제3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물부 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농림수산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물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7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안 제41조 앞의 “제6장 벌칙”을 삭제하고, 제38조 앞에 “제6장 벌칙”을 삽입한다.

안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2.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3.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5. 제13조제5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7.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그 임차자(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8.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중단하지 않은 임차자
9.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
10. 제34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5항에 따른 행위를 가로막거나 방해하는 행위
3.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안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1조(목적) 이 법은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농업의 경쟁력 <u>제고</u>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농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u>제3조에</u> 따른 농업을 말한다.</p> <p>3. “간척지활용사업”이란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하여 <u>다음 각 목의 용도로</u> 간척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p> <p style="margin-left: 20px;">가. <u>복합곡물단지</u></p> <p style="margin-left: 20px;">나. <u>원예단지</u></p> <p style="margin-left: 20px;">다. <u>채종(採種)단지</u></p> <p style="margin-left: 20px;">라. <u>친환경축산단지</u></p> <p style="margin-left: 20px;">마. <u>관광농업단지</u></p> <p style="margin-left: 20px;">바. <u>농식품가공 및 물류지원</u></p>	<p>제1조(목적) ----- ----- ----- -----<u>강화와</u>----- -----.</p> <p>제2조(정의) ----- -----.</p> <p>1. (원안과 같음)</p> <p>2. ----- -----<u>제3조</u> <u>제1호가목에</u>----- --.</p> <p>3. ----- -----<u>농·</u> <u>축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u> <u>유통시설 단지 등 대통령령으로</u> <u>정하는</u>----- -----.</p> <p style="margin-left: 20px;"><삭 제></p> <p style="margin-left: 20px;"><삭 제></p> <p style="margin-left: 20px;"><삭 제></p> <p style="margin-left: 20px;"><삭 제></p> <p style="margin-left: 20px;"><삭 제></p> <p style="margin-left: 20px;"><삭 제></p>

원 안	수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단지</u></p> <p>사. <u>생태환경단지</u></p> <p>아. <u>농축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단지</u></p> <p>자. <u>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의 이용</u></p> <p>4.~6. (생 략)</p> <p>제3조(기본원칙) <u>간척지는 토양특성, 배수여건,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u>농업의 규모화와 선진화를 위한 영농단지 및 첨단농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농업 및 관련 산업에 활용되어야 한다.</u></u></p> <p>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u>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u>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의 내용보다 <u>완화되는</u>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u></p> <p>제5조(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② (생 략)</p> <p>③ <u>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u>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u></u></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4.~6. (원안과 같음)</p> <p>제3조(기본원칙) ----- ----- -----<u>농업과 그</u>----- -----.</p> <p>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u>이 법은 <u>간척지의</u>----- <u>관하여</u>----- ----- <u>법에 따른</u>-----<u>완화</u> <u>된</u>-----<u>있으면</u>----- -----.</u></p> <p>제5조(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② (원안과 같음)</p> <p>③ -----<u>종합계</u> <u>획을 수립하거나</u>----- ----- -----</p>

원 안	수 정 안
<p>미리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u>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후단 신설></p> <p><신 설></p> <p><신 설></p> <p>제6조(실태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u>종합계획과</u>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간척지의 용도별 입지 등에 대한 실</p>	<p>----- -----고 시하여야-----. ----- -----.</p> <p>④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u>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u></p> <p>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u>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p>⑥ 그 밖에 <u>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제6조(실태조사) ① ----- -----<u>종합계획, 시행계획과</u>----- ----- ----- -----</p>

원 안	수 정 안
<p>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p> <p><신 설></p> <p>④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⑤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범위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제7조(간척지운영위원회) ①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p>	<p>-----할-----.</p> <p>② -----</p> <p>-----</p> <p>-----</p> <p>-----</p> <p>-----</p> <p>-----</p> <p>-----</p> <p>-----</p> <p>-----</p> <p>-----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거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p> <p>-----.</p> <p>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삭 제></p> <p><삭 제></p> <p>제7조(간척지운영위원회) ① -----</p> <p>-----</p> <p>-----</p>

원 안	수 정 안
<p>위하여 농림수산물부장관 소속으로 간척지운영위원회를 둔다.</p> <p>1. 2. (생략)</p> <p>3. 제8조에 따른 <u>간척지활용사업 구역의 지정·변경지정에</u> 관한 사항</p> <p>4. 제10조에 따른 <u>간척지활용사업 구역의 해제에</u> 관한 사항</p> <p>5. 제27조에 따른 <u>지원에</u> 관한 사항</p> <p>6. <u>그 밖에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u></p> <p><신설></p> <p>② <u>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수산물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u></p> <p>③ <u>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신설></p>	<p>----- -----.</p> <p>1. 2. (원안과 같음)</p> <p>3. 제5조에-----<u>시행계획의 수립에</u>-----</p> <p>4. 제8조에----- -----<u>지정·변경지정에</u>----- --</p> <p>5. 제10조에-----<u>간척지활용사업 구역의 해제에</u>-----</p> <p>6. 제27조에 따른 <u>지원에</u> 관한--- --</p> <p>7. <u>그 밖에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u></p> <p>② <u>간척지운영위원회의</u>----- -----, 위원은----- -----.</p> <p>③ -----<u>위원은 간척지 활용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 중에서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u></p> <p>④ <u>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u></p>

원 안	수 정 안
<p>제8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p> <p>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 활용사업구역을 <u>지정하려면</u>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간척지 활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1.~10. (생략)</p> <p>② (생략)</p> <p>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지역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u>한다.</u></p> <p>④ <u>제2항에</u> 따라 지정된 간척지 활용사업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u>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제8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p> <p>① ----- -----<u>지정하는</u> 경우 <u>에는</u>----- ----- ----- ----- ----- ----- ----- ----- ----- -----.</p> <p>1.~10. (원안과 같음)</p> <p>② (원안과 같음)</p> <p>③ ----- ----- ----- ----- -----<u>한다.</u></p> <p>④ <u>제1항에</u>----- ----- ----- ----- ----- ----- ----- -----.</p>
<p>제9조(주민의견청취) 농림수산식품 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간척지활</p>	<p>제9조(주민의견청취) ----- -----</p>

원 안	수 정 안
<p>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u>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u></p> <p>1.~6. (생략)</p> <p>② (생략)</p> <p>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p> <p>1. 사업시행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u>실시계획의</u>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간척지활용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p> <p>2. 제37조에 따라 <u>실시계획</u> 승인이 취소된 경우</p> <p>3. (생략)</p> <p>제12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이하 “<u>실시계획</u>”이라 한다)을 <u>수립하여</u>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후단 신설></p>	<p>-----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p> <p>1.~6. (원안과 같음)</p> <p>② (원안과 같음)</p> <p>③ ----- ----- ----- -----.</p> <p>1. ----- -----<u>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의</u>----- ----- -----</p> <p>2. 제34조에-----<u>간척지활용사업 실시계획</u>-----</p> <p>3. (원안과 같음)</p> <p>제12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u>사업시행자는</u>----- ----- ----- -----<u>수립하여야</u>----- . 이 경우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원 안	수 정 안
<p>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 -----.</p>
<p>②~④ (생략)</p>	<p>②~④ (원안과 같음)</p>
<p>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p>	<p>⑤ ----- -----대하여----- ----- ----- ----- ----- -----.</p>
<p>⑥·⑦ (생략)</p>	<p>⑥·⑦ (원안과 같음)</p>
<p>제14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p>	<p>제14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p>
<p>① 사업시행자는 사업 수행을 위한 조사·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임시통로 또는 <u>임시도로</u>로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u>죽목·토석</u>,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p>	<p>① ----- ----- ----- ----- ----- ----- -----<u>임시도로</u>로 -----<u>특히</u> -----<u>필요한 경우에는 나무·흙·돌</u>----- ----- ----- ----- -----.</p>

원 안	수 정 안
<p>“<u>허가 등</u>”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u>허가 등</u>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제11조·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u>신고사항의</u>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u>가설 건축물</u>의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u>건축 협의</u> (생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u>도시관리계획의</u>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u>사용실시계획의</u>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u>국가등이</u> 시행하는 매립의 면허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p>-----<u>허가등</u>----- ----- ----- -----<u>허가등이</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 ----- -----<u>허가와 신고사항의</u>----- -----<u>가설</u> <u>건축물의</u>----- -----<u>건축협의</u>----- (원안과 같음) ----- -----<u>도시·</u> <u>군관리계획의</u>----- ----- ----- ----- ----- -----<u>사용 실</u> <u>시계획의</u>----- ----- ----- -----<u>국가 등이</u>----- -----<u>협의</u>----- ----- -----

원 안	수 정 안
5. (생 략)	5. (원안과 같음)
6.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 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 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6. -----도로 관리청과의----- ----- ----- -----도로의 점용허가
7.~10. (생 략)	7.~10. (원안과 같음)
11. 「산림보호법」 제9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 가 및 신고와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1. ----- ----- -----같은 법 제11조 에----- ---
12. (생 략)	12. (원안과 같음)
13.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 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25조 에 따른 토석채석허가 및 토사 채취신고	13. ----- ----- ----- -----토석채취허가----- -----
14.·15. (생 략)	14.·15. (원안과 같음)
1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 0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 계획의 협의	16. -----제1 0조에 따른----- -----
1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 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 당성에 관한 협의	17. ----- -----공급 타 당성에-----
18. (생 략)	18. (원안과 같음)
19.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19. -----

원 안	수 정 안
<p>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심사, 제86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의 신고</p> <p>20. (생 략)</p> <p>21.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u>점용 허가</u></p> <p>22. 「하천법」 제6조에 따른 <u>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u>,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u>하천 점용 등의 허가</u></p> <p>② (생 략)</p> <p>제20조(기반시설의 설치) ①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은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한다. 다만, 사업시행자 등의 요청으로 전기간선시설을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땅속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u>2분의 1의 비율로</u> 그 비용을 부담한다.</p> <p>② (생 략)</p> <p>제21조(준공검사) ① (생 략)</p>	<p>----- -----<u>같은 법</u> 제86조제1항에----- -----</p> <p>20. (원안과 같음)</p> <p>21. ----- ----- -----<u>점용허가</u></p> <p>22. -----<u>하천관리청과의</u> ----- -----<u>하천점용허가</u></p> <p>② (원안과 같음)</p> <p>제20조(기반시설의 설치) ① ----- ----- ----- ----- ----- ----- ----- ----- -----<u>100분의 50의</u> -----.</p> <p>② (원안과 같음)</p> <p>제21조(준공검사) ① (원안과 같음)</p>

원 안	수 정 안
<p>위임 또는 <u>위탁받는</u> 업무</p> <p>7. (생 략)</p> <p>③ 관리기관은 도로, 공용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u>공동시설의</u> 설치·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수산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로부터 <u>농림수산물부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p> <p>제24조(임대차계약 등) ① (생 략)</p> <p>② <u>제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u> 사항 중 계약기간, 임대면적, 임대료의 부과 및 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u>제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사항</u> 중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④ (생 략)</p> <p>제25조(임대차계약의 해지 등) ①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위탁받은</u>-----</p> <p>7. (원안과 같음)</p> <p>③ ----- ----- ----- ----- <u>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의</u>----- ----- ----- ----- -----<u>대통령령으로</u>----- -----.</p> <p>제24조(임대차계약 등) ① (원안과 같음)</p> <p>② <u>임대차계약</u>----- ----- ----- -----.</p> <p>③ <u>임대차계약 사항</u>----- ----- -----.</p> <p>④ (원안과 같음)</p> <p>제25조(임대차계약의 해지 등) ① - ----- ----- ----- -----.</p>

원 안	수 정 안
<p>1. 임대목적과 다르게 토지를 사용한 경우</p> <p>2.·3. (생 략)</p> <p>4. 제33조제2항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규정을 위반한 경우</p> <p>5. 그 밖에 임대차계약목적에 따른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②~④ (생 략)</p>	<p>1. -----토지 또는 건축물을-----</p> <p>2.·3. (원안과 같음)</p> <p>4. 그 밖에 임대차계약목적에----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p> <p><삭 제></p> <p>②~④ (원안과 같음)</p>
<p>제26조(공익사업으로의 이용 등) ①</p> <p>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간척지 임대계약해지 및 기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간척지를 양도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간척지를 양도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p>	<p>제26조(영농편의 제공)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용자의 영농편의를 위하여 간척지에 적합한 작물 및 품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에 적합한 작물과 품종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 작물과 품종에 관한 재배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연구개</p>

원 안	수 정 안
<p>제27조(영농편의 제공) ① <u>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용자의 영농편의를 위하여 간척지에 적합한 작물 및 품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u></p>	<p><u>발결과를 반영하여 2년 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u></p> <p>③ <u>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 재배작물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재배작물과 품종, 재배방식, 작물관리 방법 등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p>제27조(국가의 지원 등) ①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도로, 용·배수시설, 에너지공급 시설(제20조에 따른 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을 제외한다) 및 기타 간척지 이용에 따른 기반 시설 및 공사</u> 2. <u>농산물산지유통시설 등 기타 공용시설</u> 3. <u>그 밖에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u>

원 안	수 정 안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농림수산물부장관은 간척지에 적합한 작물과 품종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 내용과 작물과 품종에 관한 재배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를 반영하여 2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p> <p>③ 농림수산물부장관은 간척지의 재배작물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재배작물과 품종, 재배방식, 작물관리 방법 등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 및 보급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에게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간척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판매촉진 사업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간척지의 농업적 이

원 안	수 정 안
<p>제28조(국가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 전기, 통신, 용·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및 기타 간척지 이용에 따른 기반시설 및 공사 2. 농산물산지유통시설 등 기타 공용시설 3. 그 밖에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p>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p>	<p>용에 활용하는 사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그 밖에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p>제28조(지원금의 환수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이 과오지급된 경우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p>

원 안	수 정 안
<p>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간척지 농산물의 판매촉진 사업 2.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지열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간척지 농업으로의 활용 사업 3. 농산물의 수출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간척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p>제29조(지원금의 환수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8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p>제29조(기금 등의 활용) 이 법에 따른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재원으로 농지관리기금 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어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등을 사용할 수 있다.</p>

원 안	수 정 안
<p>2. 지원금이 과오지급된 경우</p> <p>3. 제31조를 위반한 경우</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p> <p>제30조(조세에 대한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척지활용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법」 등 조세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31조(간척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판매 제한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용자가 제28조 제3항제3호에 따라 수출지원을 지원받아 생산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국내 판매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국내 농산물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농산물의 가격안정이 필요한 경우</p>	<p>제30조(재해예방대책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풍, 조풍(潮風), 해일(지진해일을 포함한다), 황사 등 자연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해안방재림(海岸防災林)의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보칙</p> <p>제31조(간척지의 운영 평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매년 간척지별로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p>

원 안	수 정 안
<p>2. <u>국내 비축이나 해외 지원 등이 필요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경우</u></p> <p>3. <u>수출액이 수출지원금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농산물</u></p> <p>② <u>이용자는 수출지원을 받아 생산한 농산물의 생산량·출하량 및 판매현황 등 자료를 보관하고, 관리기관이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u></p>	<p>② <u>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간척지별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u></p> <p>③ <u>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제32조(기금 등의 활용) <u>이 법에 따른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재원으로 농지관리기금 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어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등을 사용</u></p>	<p>제32조(관계 서류의 열람 등) <u>사업 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u></p>

원 안	수 정 안
<p>할 수 있다.</p> <p>제33조(재해예방대책 수립 및 보험 가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풍, 조풍(潮風), 해일(지진해일을 포함한다), 황사 등 자연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해안방재림(海岸防災林)의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이용자 중 「농어업재해보험법」 제5조제1호의 농작물재해보험이 적용되는 보험목적물을 재배하는 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p>	<p>는 서류의 교부에 필요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제33조(보고·검사 등) 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사업시행자 및 관리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보칙</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제34조(간척지의 운영 평가) 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매년 간척지별로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p>	<p>제34조(행정처분) 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에 포함된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p>

원 안	수 정 안
<p>② <u>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간척지별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u></p>	<p><u>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u> 2. <u>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간척지활용사업의 지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u> 3. <u>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간척지활용사업을 시행한 경우</u> 4. <u>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간척지활용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u> <p>② <u>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u></p>

원 안	수 정 안
<p>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5조(관계 서류의 열람 등) 사업 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서류의 교부에 필요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제36조(보고·검사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업시행자 및 관리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p>	<p>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제35조(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조치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변경 2. 제3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3. 제34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 <p>제3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p>

원 안	수 정 안
<p><u>야 한다.</u></p> <p><u>제37조(행정처분) ① 농림수산물식품</u> <u>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u> <u>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u>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u> <u>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u> <u>에 포함된 공사의 중지·변경,</u> <u>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u> <u>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u> <u>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u> <u>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u> <u>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승</u> <u>인을 취소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u> <u>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u> <u>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u> 2. <u>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u> <u>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u>사유로 인하여 간척지활용사업</u> <u>의 지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u> 	<p><u>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u> <u>임할 수 있다.</u></p> <p>③ <u>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물식품부</u> <u>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u> <u>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u> <u>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u> <u>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u> <u>다.</u></p> <p><u>제37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u> <u>원 의제)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u> <u>이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u> <u>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 또</u> <u>는 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u> <u>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u> <u>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u> <u>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u></p>

원 안	수 정 안
<p>계 된 경우</p> <p>3. <u>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경우</u></p> <p>4. <u>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u></p> <p>② <u>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u></p> <p>③ <u>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38조(청문) <u>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변경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벌칙</p> <p>제38조(벌칙)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p> <p>1. <u>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u></p>

원 안	수 정 안
	<p>2.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p> <p>3.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p> <p>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p> <p>5. 제13조제5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p> <p>7.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그 임차자(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제외한다)</p> <p>8.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중단하지 않은 임차자</p> <p>9.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p> <p>10. 제34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p>

원 안	수 정 안
<p>제3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p> <p>③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40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p>	<p>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p>

원 안	수 정 안
<p>원 의제)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제39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벌칙</p> <p>제4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p>	<p>는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u> 2. <u>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5항에 따른 행위를 가로막거나 방해하는 행위</u> 3. <u>제3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u> 4. <u>정당한 사유 없이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u>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u><삭 제></u></p>

원 안	수 정 안
<p>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u> 2. <u>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u> 3. <u>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u> 4. <u>제13조제5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u> 5. <u>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u> 6. <u>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그 임차자(같은 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제외한다)</u> 7. <u>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중단하지 않은 임차자</u> 8. <u>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 또는 용자받은 자</u> <p>제42조(양별규정) 법인의 대표자나</p>	<p><삭 제></p>

원 안	수 정 안
<p>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u> 2. <u>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판매제한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u> 3. <u>제31조제2항에 따라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u> 4. <u>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u> 	<p><삭 제></p>

원 안	수 정 안
<p>5. <u>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u></p> <p>② <u>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u></p>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최인기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I. 주요 개정 사항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간척지활용사업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등).

II. 요 약

구 분	관계 조항	쪽 수
1. 조세특례 관련 조항 삭제	안 제29조	2
2. 기타 경미한 자구수정 안 제8조제1항, 제9조, 제14조제2항 단서		3

III. 검토의견

1. 조세특례 관련 조항 삭제(안 제29조)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29조(조세에 대한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척지활용사업의 촉	<삭 제>

개 정 안	수 정 의 견
<p><u>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u></p>	

○ 수정의견:

- 조세지원 정책의 일관성·효율성을 위하여 조세특례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을 비롯한 일부 법률에서만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¹⁷⁾
- 지방세특례 사항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을 비롯한 일부 법률에서만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¹⁸⁾
- 특례의 적용을 위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필요함.

2. 기타 경미한 자구수정

해당 조문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수 정 이 유
제8조제1항	<u>지정하려면</u>	<u>지정하는 경우에는</u>	표현통일
제9조	<u>지정하려면</u>	<u>지정하는 경우에는</u>	표현통일
제14조제2항 단서	<u>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u>	<u>허가를 받아야 한다.</u>	1. 표현통일

(수석전문위원 이 한 규)

17)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 조세특례를 정할 수 있는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조약,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증권거래세법, 국세징수법, 관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임시수입부가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세에 관한 규정만), 종합부동산세법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지방세 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 등에 대한 특례 범위를 변경하려고 법률을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IV. 하위법령안 제정 참고자료

1. 시행령안 입법예고문
2. 시행규칙안 입법예고문
3.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결과
4. 부패영향평가 결과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서
6. 통계기반 정책관리 예비평가 결과
7. 규제심사 결과

간척지법 해설집

1 시행령안 입법예고문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2-376호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11170호, 2012. 1. 17. 공포, 2013. 1. 18. 시행)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간척지활용사업으로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농산물·축산물의 생산·저장·가공·유통시설 단지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단지 조성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 나. 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심의안건과 관련된 위원은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다. 간척지활용사업계획 수립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 위치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변경·해제 시에 관보에 고시할 항목 및 주민의견 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2조)
- 라. 간척지활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석 채취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15조)

마. 간척지활용사업에 필요한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의 설치시기 및 설치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비용부담자를 명확히 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함(안 제17조)

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은 농업경영규모 확대, 간척지활용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 또는 임대·매각하도록 하고, 임대·매각 절차, 방법 및 대상 자격자 등을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3조)

사. 공동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를 위한 공동부담금의 징수방법, 조성토지 등의 임대기간 및 임대료, 간척지의 운영 평가기준 및 방법 등 간척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4조부터 제28조)

아.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처분, 권한의 위임·위탁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29조부터 제32조)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농업정책과장, 전화: 02-500-1710, 팩스: 02-507-3962, e-mail: kangk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2 시행규칙안 입법예고문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2-377호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11170호, 2012. 1. 17. 공포, 2013. 1. 18. 시행)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1)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시행하는 축산물 생산단지 중 축사의 부속시설 범위를 정함(안 제2조)
- (2) 간척지 실태조사의 범위 및 조사 시기를 정함(안 제3조)
- (3)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안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간이 공작물을 정함(안 제4조)
- (4) 사업시행자가 조사·측량을 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때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 증표를 정함(안 제5조)
- (5) 간척지활용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서 및 준공검사확인증을 정함(안 제6조)

나.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대·매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1) 조성토지 등의 임차·매입 신청서 및 임대·매각 통지서의 서식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2) 조성토지 등의 매각대금 납부방법을 정하고,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매각대금 및 연체이자의 상환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3) 조성토지 등의 관리기관 업무 및 공동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공동시설을 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4) 조성토지 등의 임대차계약 변경 및 보고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

다.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 실시계획 승인없이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변경 명령을 하고 1차 처분이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함(안 제15조, 별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농업정책과장, 전화: 02-500-1710, 팩스: 02-507-3962, e-mail: kangk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간척지법*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결과 조치계획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2. 8.

< 목 차 >

1. 관계부처 의견조회 결과	1
2. 입법예고 결과	2
3. 관계부처 협의 결과	3
4. 향후 추진계획	4

농업정책국
농업정책과

1**관계부처 의견조회(7.5.~7.16) 결과**

- ◆ 국토부, 방통위, 전남도 등 6개 기관에서 8건의 의견 제출
⇒ 입법취지, 위임범위 등을 검토하여 수용여부 결정
* 수용 4, 수정수용 1, 수용곤란 3

□ **간척지활용사업의 범위 확대 관련(4건)**

- 말산업 관련 시설 조성사업(전남도, 축산정책과) 및 수목원 조성사업(전남도), 농·축산업 연구시설(장흥군) 포함
⇒ **(일부수용)** 말산업 관련 시설 조성사업 및 농·축산업 연구 시설은 수용, 입법취지에 반하는 수목원조성사업은 제외

□ **위원회 운영, 기반시설 설치시기 등에 관한 의견(4건)**

- 간척지운영위원회에 도시계획 전문가 3인 포함(국토부)
⇒ **(수정 수용)** 도시계획전문가 2인 포함
- 전기·통신·가스 및 난방 등 기반시설의 설치 시기에 대하여 협의 필요(방통위)
⇒ **(수용)** 제출의견과 같이 반영
-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의 임대대상 자격자에 농업인 등을 포함하고, 국가의 지원 범위에 농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비용의 절감을 위한 사업을 포함(전북도)
⇒ **(수용곤란)** 농어촌정비법(* 임대대상자격자에 농업인 제외) 및 WTO 농업협정(* 수출상품 포함 조건 보조금 불가)과 상충

◆ 총 3건의 의견 제출 ⇒ 수용 곤란

□ 간척지활용사업의 범위에 추가사업 포함 건의(2건)

- 수산물 양식 및 가공, 유통 시설단지 조성 추가(한국수산회)
⇒ (수용곤란) 농업적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반함
- 식·약용 천연자원 생산 및 가공단지 조성, 조경자원 생산 단지 조성 추가(광주시 장용기)
⇒ (수용곤란) 농산물로 분류되는 특용작물, 약용작물 등의 생산 및 가공단지 등은 제정안에 기 반영되어 있으며, 입법취지에 반하는 임산물의 생산단지 등은 수용 곤란

□ 국가의 지원 범위 확대(1건)

- 국가가 지원하는 기반시설 범위에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연약지반보강 시설 및 공사” 추가(새만금팜)
⇒ (수용곤란) 법률 제27조제1항제1호에 기 반영된 사항으로 건의안과 같이 세분하여 규정할 실익이 없음(*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오히려 지원 곤란, 포괄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

제27조(국가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도로, 용수·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제20조에 따른 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은 제외한다) 및 그 밖의 간척지 이용에 따른 기반시설 및 공사

3

관계부처 협의 결과

□ 통계기반 정책관리 예비평가 결과(통계청, 8.1)

○ 별도 통계기반 관리 불필요, 통계지표 활용 권고

⇒ 추가 조치사항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여성가족부, 8.14)

○ 성별 구분, 성별 고정관념 성별특성반영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

⇒ 추가 조치사항 없음

□ 법령서식 승인 통보(행정안전부, 8.24)

○ 개정된 서식 설계기준에 따른 서식 조정, 법령명 명시, 글자 크기 및 여백 조정 등

⇒ 법제처 법령심사 의뢰시 등에 승인 서식 사용

□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국민권익위원회, 8.28)

○ 임대 또는 매각한 조성토지 등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30퍼센트 이상인 경우 임대료 또는 매각대금 및 연체 이자를 경감하거나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이에 대한 경감기준이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선 필요(시행령안 제25조제6항, 시행규칙안 제9조제3항)

⇒ 개선권고사항(경감기준 및 범위 등을 정하여 고시) 반영

4**향후 추진계획**

□ 간척지법 하위법령 수정안 마련(* 덧붙임)

- 관계부처 협의 결과, 입법예고 결과 등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마련하고, 해당 기관 등에 통보

□ 규제심사(9~10월)

- 우리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규제심사 추진(* 9.13. 예정)
 -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전심의결과 총 **15건의 신설 규제**
- 총리실 규제심사위원회의 규제심사 추진(9~10월, 45일)
 - 예비심사, 본심사*, 규제등록 관리 등

* 중요규제만 해당됨(* 15건 중 중요규제에 해당하는 규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

□ 법제처 심사(11~12월)

- 입안시스템을 통한 심사의뢰 전에 법제처 담당자에게 미리 설명하여 원활한 심사를 도모

□ 차관회의·국무회의 및 법률안 공포(* 시행일 : '13. 1. 18)

- 공포후 10일 이내에 국회 상임위 제출

<붙임 1>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수정안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유
<p>제2조(간척지활용사업의 범위)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2.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설치 등 농산물의 생산단지 조성 3. 사료작물의 재배 기반 조성, 축사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가축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등 축산물의 생산단지 조성 4. 농산물·축산물의 보관·저장을 위한 창고, 저온저장고의 설치 등 농산물·축산물의 저장 단지 조성 5. 농산물·축산물의 가공공장, 도축장, 	<p>제2조(간척지활용사업의 범위)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2.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설치 등 농산물의 생산단지 조성 3. 사료작물의 재배 기반 조성, 축사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가축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등 축산물의 생산단지 조성 4. 농산물·축산물의 보관·저장을 위한 창고, 저온저장고의 설치 등 농산물·축산물의 저장 단지 조성 5. 농산물·축산물의 가공공장, 도축장, 	<p>○ 전라남도 등의 제출의견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은 「축산법」에 따라 가축으로 분류되고, 「말산업 육성법」의 제정(11.3.9), 시행 예정(11. 9.10) - 새로운 농가소득원 육성을 위해 말산업 관련 시설 조성 포함 필요 <p><관련조항> : 「말산업 육성법」</p> <p>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말산업”이란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p>시행령 제2조(말산업 및 말사업자) ① 「말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말의 생산업·사육업 및 유통업 2. 말이용업 3. 말조련업·장제업(裝蹄業)·재활승마지도업 또는 경마운영업 등 말을 이용하거나 매개로 한 서비스업 4. 말의 산물(産物) 또는 부산물을 이용한 식품·약품 또는 향장품(香粧品)의 제조업·판매업 5. 말의 사육 또는 이용 등에 필요한 물품의 제조업·

<p>도계장의 설치 등 농산물·축산물의 가공 단지 조성</p>	<p>도계장의 설치 등 농산물·축산물의 가공 단지 조성</p>	<p>판매업 6. 그 밖에 산업</p>
<p>6. 농산물·축산물의 집하장, 선별장, 판매장의 설치 등 농산물·축산물의 유통시설 단지 조성</p> <p><신 설></p> <p><신 설></p> <p>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용도에 따라 설치된 시설 등을 활용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단지 조성</p> <p>제6조(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p> <p>① 법 제7조에 따른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법인"이라 한다)의</p>	<p>6. 농산물·축산물의 집하장, 선별장, 판매장의 설치 등 농산물·축산물의 유통시설 단지 조성</p> <p>7. 「말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말산업 관련 시설의 조성</p> <p>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필요한 연구시설의 조성</p> <p>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용도에 따라 설치된 시설 등을 활용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단지 조성</p> <p>제6조(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p> <p>① 법 제7조에 따른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법인"이라 한다)의</p>	<p>제5호까지의 산업에 필요한 부대</p> <p>국토부</p> <p>간척지</p> <p>각종</p> <p>사항을</p> <p>도시·</p> <p>계획간</p> <p>효율적</p> <p>하므로</p> <p>2명을</p> <p>국토부</p>
<p>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법인"이라 한다)의</p>	<p>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법인"이라 한다)의</p>	<p>이와 같은 규정의 적용 및 관리를 위한 *</p> <p>립 및 구역 지정·변경</p> <p>과정에서</p> <p>의 전문가가 없을 경우</p> <p>성을 확보하기 어렵고</p> <p>용계획의 수립이 곤란</p> <p>등 관련분야 전문가</p> <p>포함</p> <p>을 2명으로 조정</p>

대표 5명 이내

2. 농업관련 전문가 5명 이내

대표 3명 이내

2. 농업관련 전문가 5명 이내

<p><추 가></p> <p>3. 농림수산식품부차관, 농촌진흥청장,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p> <p>② ~ ⑩ (생략)</p> <p>제17조(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p>—</p> <p>3. 도시계획, 토지이용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명 이내</p> <p>4. 농림수산식품부차관, 농촌진흥청장,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p> <p>② ~ ⑩ (제정안과 같음)</p> <p>제17조(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의 설치 시기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p>	<p>○ 방송통신사업의 실시계획이 사업여건에 필요기통신사업수있간척지기반시설소요될정할</p>
<p>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실시계획의 승인 사실을 통지받은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실시계획의 승인 사실을 통지받은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p> <p><단서 신설></p>	<p>해당 지역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시행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간척지 기반시설 소요될 정할</p> <p>1항 및 제2항)가 관로를 공동구축할 마련(제4항 신설)구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커 비용의 한도 등을 음(제5항 신설)</p>

<p>③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4. (생략)</p> <p><신설></p> <p><신설></p> <p>제25조(조성토지 등의 임대기간 등)</p> <p>①~⑤ (생략)</p>	<p>에 전기·통신·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설치시기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p>③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4. (제정안과 같음)</p> <p>④ 제3항제2호의 통신시설 중 관로시설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에 따라 다수의 기간통신사업자가 공동으로 구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⑤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전기·통신·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와 전기·통신·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는 사전에 협의하여 그 비용의 한도를 정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 등의 요청으로 통신시설을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 그 비용부담은 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전기간선시설의 경우를 준용한다.</p> <p>제25조(조성토지 등의 임대기간 등)</p> <p>①~⑤ (생략)</p>	<p>○ 권익위 자연재</p>
		<p>영향평가 결과 반영 물의 피해가 30퍼센트</p>

<p>⑥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은 간척지 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 중 경작목적으로 임대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로 농작물의 피해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임대료 및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다.</p>	<p>⑥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은 간척지 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 중 경작목적으로 임대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로 농작물의 피해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임대료 및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다.</p>	<p>⑥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은 간척지 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 중 경작목적으로 임대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로 농작물의 피해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임대료 및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다.</p>
<p>[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다. (생략) 2. 개별기준(생략)</p>	<p>[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다. (생략) 2. 개별기준(생략)</p>	<p>이상의 감할에 정하는 사업시 재량부 로비 경감기 록 개사 구</p> <p>감 받으려는 자의 불법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들은 과태료 과 시</p>

<붙임 2>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조성토지 등의 매각 대금 납부방법)

제9조(조성토지 등의 매각 대금 납부방법)

○ 권익위
- 자연재
이상인
상환을
으나
사업시
재량부
자의
있으며
경감기
록 개

<p>① 영 제19조제8항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매각 대금은 별지 제7호서식의 조성토지 등 매각통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내야 한다. 다만, 매각 대상이 농지이고 매입자가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매각 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을 한꺼번에 내고, 그 남은 금액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낼 수 있다.</p> <p>② 매입자가 납부기한까지 매각 대금을 내지 아니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연체이자율로 산정한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p> <p>③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은 간척지 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 중 경작 목적으로 매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로 농작물의 피해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조성토지 등의 매각 대금 및 연체이자의 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p>	<p>① 영 제20조제7항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매각 대금은 별지 제7호서식의 조성토지 등 매각통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내야 한다. 다만, 매각 대상이 농지이고 매입자가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매각 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을 한꺼번에 내고, 그 남은 금액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낼 수 있다.</p> <p>② 매입자가 납부기한까지 매각 대금을 내지 아니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연체이자율로 산정한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p> <p>③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은 간척지 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 중 경작 목적으로 매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로 농작물의 피해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조성토지 등의 매각 대금 및 연체이자의 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p>	<p>영 제19조제8항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매각 대금 및 연체이자의 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p> <p>영 제20조제7항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매각 대금 및 연체이자의 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p>
---	--	---

4 부패영향평가 결과

관리번호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2-1146	
1. 대상법령	
법령명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소관부처	농림수산식품부(농업정책과)
2. 평가 의견	
제25조 조성토지 등의 임대기간 등과 관련하여 1건의 개선권고가 도출됨	
<p>※ 평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수의 용이성(준수부담의 적정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특혜발생 가능성) ▪ 집행기준의 적정성(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 행정절차의 투명성(접근성과 공개성, 예측 가능성, 이해충돌 가능성) 	
3. 개선요구사항	
<p><input type="checkbox"/> 조성토지 등의 임대기간 등과 관련</p> <p>< 문제점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재해로 농작물의 피해가 30퍼센트 이상인 경우 임대료나 연체 이자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경감 기준이나 범위 등을 규정하지 않아, -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에게 과도한 재량 부여 및 경감 받으려는 자의 불법 로비 등 부패발생 가능성 	

< 개선권고 >

- 경감 기준 및 범위 등을 정하여 고시토록 개선

4.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통보합니다.

2012. 08.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관리번호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2-1147	
1. 대상법령	
법령명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소관부처	농림수산식품부(농업정책과)
2. 평가 의견	
제9조 조성토지 등의 매각 대금 납부방법과 관련하여 1건의 개선권고가 도출됨	
<p>※ 평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수의 용이성(준수부담의 적정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특혜발생 가능성) ▪ 집행기준의 적정성(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 행정절차의 투명성(접근성과 공개성, 예측 가능성, 이해충돌 가능성) 	
3. 개선요구사항	
<p><input type="checkbox"/> 조성토지 등의 매각 대금 납부방법과 관련</p> <p>< 문제점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재해로 농작물의 피해가 30퍼센트 이상인 경우 매각대금 및 연체 이자의 상환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지 않아, -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에게 과도한 재량 부여 및 상환 연기 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의 불법 로비 등 부패발생 가능성 <p>< 개선권고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및 범위 등을 정하여 고시토록 개선 	

4.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통보합니다.

2012. 08.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2A농림044	
정 책 명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소관부서	기관명	농림수산식품부
	부서명	농업정책과
	담당자명/전화번호	강경만 사무관 / 02-500-1710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2년 7월 23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p>‘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간척지활용사업으로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농산물·축산물의 생산·저장·가공·유통시설단지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단지 조성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에 기반시설의 설치, 다른 개발계획과의 관련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자본금이 해당간척지활용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인 농업법인을 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 등을 규정한 것으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p>	
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안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종합 검토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구분, 성별 고정관념, 성별특성반영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 ▪ 다만, 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규정(제7조) 및 조성 토지 등의 임대·매각대상 자격자에 관한 규정(제21조)는 자격·요건 조항에 해당함에도 자격·요건 조항을 ‘없음’으로 처리하여 분석평가를 하지 않았으나, 개선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에 동의 <p>○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p>	
<p>「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2년 8 월 14일</p> <p style="text-align: center;">여성가족부장관 (담당자/연락번호 : 김진양 /02-2075-4660)</p> <p>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p>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2A농림045	
정책명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소관부서	기관명	농림수산식품부
	부서명	농업정책과
	담당자명/전화번호	강경만 사무관 / 02-500-1710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2년 7월 23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p>‘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은 간척지활용 사업으로 시행하는 축산물생산단지 중 축사의 부속시설범위, 간척지 실태조사의 범위 및 조사 시기를 정하는 등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대·매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p>	
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안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종합 검토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구분, 성별 고정관념, 성별특성반영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 <p>○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p>	
<p>「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p> <p>2012년 8월 14일</p> <p>여성가족부장관</p> <p>(담당자/연락번호 : 김진양 /02-2075-4660)</p> <p>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p>		

관리번호	통계기반 정책관리 예비평가 결과통보서								
2012-0586									
법령명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령안								
정책명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								
관련법령									
법령(정책) 소관기관	기관명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	농업정책과						
		담당자 직·성명/전화번호	사무관 강경만/02-500-1710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input type="checkbox"/>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 ○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간척지별 농업적 이용에 따른 기본방향 및 목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법 제5조~제25조, 영안 제3조~제26조 ※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예비평가를 요청했으나, 법률이 의원입법(법률 제11170호, 2012.01.17.공포, 2013.01.18.시행)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 내용을 포함하여 평가 실시								
예비평가에 대한 소관기관 의견	간척지활용사업의 추진 절차, 국가의 지원 및 관리 등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별도 통계기반 관리 불필요								
통계청 평가의견	<input type="checkbox"/> 평가의견 : 통계지표 활용권고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를 위해서 통계기반 정책관리가 필요하며, 아래 제시한 필요 통계지표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함 【필요 통계지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구분</th> <th style="width: 40%;">필요 통계지표</th> <th style="width: 30%;">출처</th> </tr> </thead> <tbody> <tr> <td>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척지 조성 및 관리 현황 - 연도별, 간척지별 면적 </td> <td>행정자료 (농림수산식품부)</td> </tr> </tbody> </table>			구분	필요 통계지표	출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척지 조성 및 관리 현황 - 연도별, 간척지별 면적 	행정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구분	필요 통계지표	출처							
정책의 기초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척지 조성 및 관리 현황 - 연도별, 간척지별 면적 	행정자료 (농림수산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척지별, 용도별 면적 ▪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 및 지정해제 현황 ▪ 간척지의 운영 평가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도별 평가 실적 및 지원 실적 ▪ 식량자급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도별, 작물별 	
--	---	--

7 규제심사 결과

1.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농림수산식품부) : 규제사무 11 건

① 간척지활용사업 시행자의 지정 요건 (영 제13조)

⇒ 규제가 신설된 내용으로 비중요로 검토

□ 규제내용

< 신설 내용 >

제 정(안)
제13조(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법 제11조제1항제6호의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민간기업”이란 농업법인 중 자본금이 해당 간척지활용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를 말한다.

< 상위법 근거>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제11조(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변경) ① 간척지활용사업은 국가가 시행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3.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6.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민간기업
- ②·③ (생략)

② 간척지활용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영 제14조)

⇒ 규제가 신설된 내용으로 비중요로 검토

□ 규제내용

< 신설 내용 >

제 정(안)
<p>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u>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u>을 수립하여 <u>간척지활용사업구역이 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u> 다만, 사업시행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기한의 연기를 요청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u>법 제12조제2항제8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 2.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검토하는데에 필요한 서류 3.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이전·철거 및 귀속·이관·양여 등에 관한 조서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이 있는 경우 그 세목 및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p>③ (생략)</p>

< 상위법근거 >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제12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실시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명칭·목적·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4. 계획평면도 및 설계도서
 5. 단계별 조성계획(간척지활용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사업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6. 자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7. 조성된 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간척지활용사업구역내 행위 등의 제한 (영 제15조)

⇒ 규제가 신설된 내용으로 비중요로 검토

□ 규제내용

< 신설 내용 >

제 정(안)
<p>제15조(행위 등의 제한)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切土)·성토(盛土)·정지(整地)·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자갈·모래의 채취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7.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 「수산업법」 제2조에 따른 입어(入漁)·유어(遊漁) 또는 양식 8. 죽목(竹木)의 식재(植栽) 및 벌채 <p>②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은 제외한다)을 말한다.</p> <p>③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해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농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의 설치 3.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토석·자갈·모래의 채취 5.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안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6.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 식재(植栽)는 제외한다] 7. 「재해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6호에 따른 기능복원사업의 시행 <p>④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④ 기반시설의 설치시기(영 제17조)

⇒ 규제가 신설된 내용으로 비중요로 검토

□ 규제내용

< 신설 내용 >

제 정(안)
<p>제17조(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의 설치 시기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실시계획의 승인 사실을 통지받은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설치시기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p>③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기 시설: 간척지활용사업구역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전기시설로부터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토지이용계획상 폭 6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이하 “개별필지”라 한다)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 2. 통신 시설: 간척지활용사업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통신시설로부터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개별필지 경계선까지의 관로시설 및 최초 단자(端子)까지의 케이블시설 3. 가스 시설: 간척지활용사업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개별필지 경계선까지의 가스공급시설. 다만, 취사 또는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난방용은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개별필지에 정압(定壓) 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 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 4. 지역난방 시설 : 간척지활용사업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열 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개별필지의 각 기계실 입구 차단 밸브까지의 열 수송관

< 상위법근거>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 제20조(기반시설의 설치) ①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은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한다. 다만, 사업시행자 등의 요청으로 전기간선시설을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땅속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시설의 설치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간척지활용사업 준공검사 (영 제18조, 규칙 제6조)

⇒ 규제가 신설된 내용으로 비중요로 검토

□ 규제내용

< 신설 내용 >

제 정(안)
<p>영 제18조(준공검사) ① <u>사업시행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준공 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 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 조서 및 평면도 4. 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서 및 도면 5. 신·구 지적 대조도 6. 총사업비 명세서 7.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p>규칙 제6조(준공검사) ① <u>영 제18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u></p> <p>② <u>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u></p>

< 상위법근거>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 제21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그 공사가 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확인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그 준공검사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조성토지 등의 용도, 임대·매각의 절차·방법 (영 제19,20조, 규칙 제7,8,9조)

⇒ 규제가 신설된 내용으로 비중요로 검토

□ 규제내용

< 신설 내용 >

제 정(안)
<p>영 제19조(조성토지 등의 용도)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 또는 임대·매각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업인 등의 농업경영 규모 확대 2. 간척지활용사업의 목적 달성
<p>영 제20조(조성토지 등의 임대·매각의 절차·방법) ①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대·매각하려면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2. 농업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3.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4.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p>②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대·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신청 마감일 10일 전(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재공고의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임대·매각 대상 자격자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시행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면적 및 용도(용도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을 포함한다) 3. 임대·매각의 시기·방법 및 조건 4. 임대료 또는 매각 대금 5. 임대·매각 신청 기간 및 장소 6. 신청자격 7. 신청시의 구비서류(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조성토지 등의 임차신청서 또는 매입 신청서를 포함한다) <p>③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관이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매립지 등 조성사업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이 2분의 1 이상 또는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우선 임대할 수 있다.</p> <p>④ 사업시행자는 임대·매각 대상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토지 등의 임대통지서 또는 매각통지서를 해주어야 한다.</p> <p>⑤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매각할 때 매각예정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p> <p>⑥ 제5항에 따른 매각예정가격은 공개하여야 한다.</p>

제 정(안)

⑦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각 대금의 납부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규칙 제7조(조성토지 등의 임차신청서 등) 영 제2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임차신청서 또는 매입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제5호서식에 따른다.

규칙 제8조(조성토지 등의 임대통지서 등)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임대통지서 또는 매각통지서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또는 제7호서식에 따른다.

규칙 제9조(조성토지 등의 매각 대금 납부방법) ① 영 제20조제7항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매각 대금은 별지 제7호서식의 조성토지 등 매각통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내야 한다. 다만, 매각 대상이 농지이고 매입자가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매각 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을 한꺼번에 내고, 그 남은 금액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낼 수 있다.

② 매입자가 납부기한까지 매각 대금을 내지 아니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연체이자율로 산정한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은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 중 경작 목적으로 매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로 농작물의 피해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조성토지 등의 매각 대금 및 연체이자의 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

< 상위법근거 >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제22조(조성토지 등의 사용·처분) ①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실시계획에서 정한 조성된 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매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 또는 매각에 관한 업무를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매각하는 조성토지 등의 용도, 임대·매각의 절차·방법 및 대상자, 위탁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시행자 또는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매립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농업법인에 대하여 우선 임대할 수 있다.

⑦ 조성토지 등의 임대매각 대상자, 임대차계약 사항 등 (영 제21,25조, 규칙 제2,13,14조)

⇒ 규제가 신설된 내용으로 비중요로 검토

□ 규제내용

< 신설 내용 >

제 정(안)
<p>영 제21조(조성토지 등의 임대·매각 대상 자격자)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처분 계획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대·매각하려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매각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대 대상 자격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해당 사업지역이 속하는 시·군·구에 있는 농업법인 나. 지방자치단체 다. 한국농어촌공사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마. 해당 매립지등 조성사업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피해를 입은 어업인으로서 농업인이 된 자를 포함한다)으로 구성된 농업법인 2. 매각 대상 자격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 경영인과 전업농업인 나. 해당 사업지역이 속하는 시·군·구에 있는 농업법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해당 사업지역이 속하는 시·군·구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대책이 필요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자 마. 해당 매립지등 조성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p>영 제25조(조성토지 등의 임대기간 등) ①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대기간은 5년(「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은 30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임대면적은 농업법인 등의 총출자금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p> <p>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는 해당 지역의 임대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p> <p>④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차인은 제2항에 따른 임대료를 정비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대하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은 「농어촌은 경우에는 임차인과 협의하여 납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p> <p>⑤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은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차인이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임대료를 내지 아니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연체이자율로 산정한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p> <p>⑥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은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 중 경작 목적으로 임대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로 농작물의 피해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임대료 및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다.</p>
<p>규칙 제12조(임대차계약의 변경 등) 법 제24조제3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대차계약자(법인의 경우 명칭 변경을 포함한다)

제 정(안)
2. 임대차계약 기간 3. 임대면적의 조정 4. 임대료의 조정 5. 임차목적의 변경 6. 그 밖에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규칙 제13조(임대차계약 등의 보고)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임대차계약 또는 변경계약 현황을 농림수산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규칙 제14조(임대차계약의 해지 등) ①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상위법근거 >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 24, 25조

- 제22조(조성토지 등의 사용·처분) ①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실시계획에서 정한 조성된 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매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 또는 매각에 관한 업무를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매각하는 조성토지 등의 용도, 임대·매각의 절차·방법 및 대상자, 위탁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임대차계약 등) ① 제22조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과 임대차에 관한 계약(이하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임대차계약 사항 중 계약기간, 임대면적, 임대료의 부과 및 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임대차계약 사항 중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임대차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5조(임대차계약의 해지 등) ①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임대목적과 다르게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제24조제3항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⑧ 공동부담금의 징수 (영 제24조, 규칙 제11조)

⇒ 규제가 신설된 내용으로 비중요로 검토

□ 규제내용

< 신설 내용 >

제 정(안)
<p>영 제24조(공동부담금의 징수) ① <u>법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을 이용자의 공동시설 사용에 따른 수익의 정도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그 수익의 정도를 산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비용 전체를 이용자의 용지면적·건축연면적 및 종업원 수에 따라 산출한 부담비율에 따라 징수한다.</u></p> <p>② <u>법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공동부담금을 간척지활용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운영 상황에 따라 매월 또는 매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u></p>
<p>규칙 제11조(공동시설) <u>법 제23조제3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u>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안의 도로 2. 가로등 3. 상하수도시설 4. 수질오염방지시설 5. 조경시설 6. 안전시설 7. 공공복지후생 시설 8. 그 밖에 관리기관이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 경우 이용자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 상위법근거>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제23조(관리권자 및 관리기관) ①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관리권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되며, 관리권자는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를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생략)
- ③ 관리기관은 도로, 공용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로 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⑨ 행정처분 사유 (영 제29조)

⇒ 규제가 신설된 내용으로 비중요로 검토

□ 규제내용

< 신설 내용 >

제 정(안)
제29조(행정처분 사유) <u>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파산에 준하는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더 이상 간척지활용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u>

< 상위법 근거 >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 제34조(행정처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에 포함된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2.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간척지활용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간척지활용사업을 시행한 경우
 4.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간척지활용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추진배경 및 제도 취지 >

- 법률제정*으로 사업시행자가 간척지활용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재처분, 개선명령을 할 수 있음에 따라

* (제정취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공사의 중지·변경 등의 처분 또는 조치를 발령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간척지활용사업이 불가능하게 된 사유*를 규정하기 위함

* 파산에 준하는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간척지활용사업 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⑩ 과태료 부과기준 (영 제32조)

⇒ 규제가 신설된 내용으로 비중요로 검토

□ 규제내용

< 신설 내용 >

제 정(안)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u>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 별표)</u>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u>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u>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까지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	법 제40조 제1항제1호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행위를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법 제40조 제1항제2호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다.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법 제40조 제1항제3호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40조 제1항제4호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⑪ 행정처분 기준 (규칙 제15조)

⇒ 규제가 신설된 내용으로 비중요로 검토

□ 규제내용

< 신설 내용 >

제 정(안)				
제15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행정처분 부과기준(제15조 관련 별표)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처분기준에서 “1차”란 처음 위반행위가 있을 때의 처분을 말하고, “2차”란 1차 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계속되거나 1차 처분이 이행되지 않을 때의 처분을 말하며, “3차”란 2차 처분이 이행되지 않을 때의 처분을 말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1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나.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인하여 간척지활용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2호	공사의 중지·변경 또는 실시계획 변경명령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다.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간척지활용사업을 시행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3호	공사의 중지·변경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간척지활용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4호	시정명령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 상위법 근거 >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 제34조(행정처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에 포함된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2.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간척지활용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간척지활용사업을 시행한 경우
4.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간척지활용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추진배경 및 제도 취지 >

○ 법률제정으로 행정처분을 발령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함에 따라 부령에서 행정처분 부과 세부기준을 신설

□ **규제개혁실 검토의견 : 비중요 규제**

- 위임범위 내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처분수위를 가중시켜 피규제인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며 유사입법례 감안시 적정 수준으로 판단

<유사 입법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행정처분 기준(제8조 관련)

위 반 행 위	근거 법령	처 분 기 준	
		1차	2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1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나.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 또는 파산에 준하는 재무구조 악화로 인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지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2호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이전 또는 실시계획의 변경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다.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3호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이전 또는 시정명령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4호	시정명령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마.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5호	시정명령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V. 공포 법령 3단 비교

간척지법 해설집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3단 비교표

2013. 01. 18

농업정책국
(농업정책과)

법 률

시 행 령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간척지 이용 및 관리에	간척지
관리에 관한 법률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제정 2012.1.17. 법률 제11170호	제정 2013.1.18. 대통령령 제24321호	이용 및 관리에	제
제1장 총칙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간척지 활용사업의 목적)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간척지 활용사업의 목적)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간척지 활용사업의 목적)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척지”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하 “농지관리기금”이라 한다)으로 공유수면 또는 간석지(干潟地)[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간조수위선(干潮水位線) 사이를 말한	1. “간척지”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하 “농지관리기금”이라 한다)으로 공유수면 또는 간석지(干潟地)[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간조수위선(干潮水位線) 사이를 말한	1. 농산물·축산물 생산 단지의 용도	1. 농산물·축산물 생산 단지의 용도

다]를 매립 또는 배수(排水)하여 새롭게 조성한 토지를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3. “간척지활용사업”이란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하여 농산물·축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간척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이란 간척지 활용사업을 위하여 설정된 구역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5.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6.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2. 농산물·축산물 가공 단지의 용도

3. 농산물·축산물 저장 단지의 용도
4. 농산물·축산물 유통시설 단지의 용도
5. 「말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말산업과 관련된 시설의 용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도에 필요한 시험·연구 및 교육·훈련 시설의 용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용도에 따라 설치된 시설 등을 활용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라 한다)의 용도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간척지는 토양특성, 배수여건,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업과 그 관련 산업에 활용되어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의 내용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제3조(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p>를 기초로 하여 5년마다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1.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p>
<p>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2. 다른 지역과의 연계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p>
<p>1. 간척지별 농업적 이용에 따른 기본방향 및 목표</p>	<p>3. 다른 개발계획과의 관련성에 관한 사항</p>
<p>2. 농업의 국내외 여건 변화와 전망</p>	
<p>3. 농업적 이용의 용도별 위치 및 면적</p>	
<p>4. 사업시행방법</p>	
<p>5. 환경보호와 경관보존에 관한 계획</p>	
<p>6. 자연재해 예방 대책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p>	
<p>7. 자원조달계획</p>	
<p>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p>	<p>제4조(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p>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간척지별 농업적 이용에 따른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농업적 이용의 용도별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확정된 주요 사업계획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에 반영된 후 그 사업계획이 변경·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간척지운영위원회(이하 “간척지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시행계획과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간척지의 용도별 입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

제2조(실...
지의 ...
를」(이...
항에 ...
각 호의...
1. 간척...
현황...
가지...
2. 간척...
한 사...

범위 등) ① 「간척
용 및 관리에 관한 법
이라 한다) 제6조제1
조사의 범위는 다음

양 상태 및 농업용수
이용에 필요한 여러
한 사항
업적 이용 실태에 관

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간척지운영위원회) ①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물부장관 소속으로 간척지운영위원회를 둔다.

1.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변경지정에 관한 사항

제6조(간척지운영위원회의 관구 지정에 관한 사항) ① 간척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농림수산물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간척지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농촌진흥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

업의 현황에 관한 제5조제1항에 따른 조 제5항에 따른 시는 데 필요하다고 농

3. 간
사항
4. 그
합계
행계
림수
② 범
매년

5. 제10조에 따른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6. 제27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간척지 활용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그 밖에 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간척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사장

4.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

5. 농업법인의 대표 중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이내

6. 농업 관련 전문가 중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이내

7. 토지 이용이나 농림 분야 등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이내

②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간척지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간척지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간척지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간척지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개회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간척지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척지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⑧ 간척지운영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간척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이해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위원의 친족, 위원의 친족이었던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p>2. 최근 2년 이내에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p> <p>3. 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p> <p>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p> <p>② 간척지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간척지운영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간척지운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p>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p>
--	--	--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고,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3장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 등

제8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활
용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간척지
활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
리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간척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목적
3. 간척지활용사업의 내용 및 기간
4. 간척지활용사업의 효과

제8조(간척지활용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8조제1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해
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
군관리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
에 관한 계획
2.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물건 및 권리의 취득 및 사

5.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자 및 시 용 계획

행방식에 관한 사항

- 6.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 계획
- 7.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8. 환경보호와 경관보존에 관한 계획
- 9. 자연재해 예방 대책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4.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영향 검토에 필요한 서류
- 5.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형에 관한 사항(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인 위치도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6. 지역주민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참여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7.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고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지정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말한다)을 관보에 고

지형도면 고시 등에 있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시하여야 한다.

지형도면 고시 등에 있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시하여야 한다.

1.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간척지활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개요
 3.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물건 및 권리의 명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인 위치도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시의 내용 중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해당 권리를 가진 자에

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지역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주민의견청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간척지활용사업계획안을 작성하여 3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열어 해당

제10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간척지활용사업구역 면적의 축소
2. 간척지활용사업구역 면적의 확대 (10퍼센트 이내의 확대로 한정한다)

제11조(주민의견청취)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 개최 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적으로 보급되거나 해당 지역을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농림수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간척지활용사업계획안의 개요
4. 의견발표 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작일부터 공청회 종료 후 5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해제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간척지활용사

제12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간척지활용

업구역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변경) ① 간척지활용사업은 국가가 시행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사업구역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 해제된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일 및 해제일
3. 지정 해제의 사유

제13조(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민간기업”이란 자본금이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른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농업법인을 말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
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3.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
기업

6.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요건에 해당하는 민간기업

② 사업시행자인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간척지활용사업을 효율적으
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
탁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간척지활용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4조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
3. 사업시행자의 부도·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간척지활용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실시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이 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기한의 연기를 요청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그 사유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업의 명칭 목적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간척지활용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획평면도 및 설계도서	③ 법 제12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단계별 조성계획(간척지활용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사업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이전·철거 및 귀속·이관·양여(讓與) 등에 관한 사항
6.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물건 및 권리의 상세내용(토지소유자 또는 해당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및 주
7. 조성된 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계획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를 포함한다)

3.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영향 검토에 필요한 서류

4.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5.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데 필요한 사항(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⑤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 제12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의 변경

2. 간척지활용사업 명칭의 변경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실시계획(변경승인된 실시계획을 포함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4. 지형의 변경 또는 지질조사 결과의 반영으로 인한 시설 등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토지의 이용 변경
-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획이 확정되어 실시계획에 반영된 후 그 계획이 변경·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

제13조(행위 등의 제한) ① 간척지활용사업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자갈·모래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 식물재배 등의 행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15조(행위 등의 제한)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제3호에 따른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적으로 제작

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그 대상행위 등이 간척지활용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이 지정·고시될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공사 또는

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기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切土)·성토(盛土)·정지(整地)·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掘鑿)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4. 토석·자갈·모래의 채취(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의 목적 및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토지 분할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간척지활용사업구역 내에 개발하지 않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 놓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 「수산업법」 제2조에 따른 입어(入漁)·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유어(遊漁) 또는 양식

8. 죽목(竹木)의 식재(植栽) 및 벌채 (경작지에서의 관상용 죽목을 임시로 식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재해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6호에 따른 기능복원사업의 시행.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인 행위는 제외한다.

④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 수행을 위한 조사·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흙·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

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제거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해뜨기 전 또는 해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

제3조(증
증표는

제14조제4항에 따른
1호서식에 따른다.

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간척지활용사업이 예정된 공유수면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권리를 가진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수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

실보상) ① 제14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물건 등에 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

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지정 승인·협의·해제·신고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6.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
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9.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10.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별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
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1. 「산림보호법」 제9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
채등의 허가 및 신고

13.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
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
용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
석채취허가 및 토사채취신고

14.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
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15.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협의·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1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18.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19.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심사,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사실의 신고
2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1.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
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
용허가

22.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
천점용허가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을 제8조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수립하려는 때
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
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
출하여야 한다.

제1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에 관한 특례) 농림수산
제1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에 관한 특례) 농림수산

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식품부장관이 법 제17조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건축 제한 등과 달리 정하려면 해당 사업계획에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수질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8조(부담금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척지활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및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같은 법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할 경우에 한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유지·공유지를 제외한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8조에 따른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

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

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0조(기반시설의 설치) ①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은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한다. 다만, 사업시행자 등의 요청으로 전기간선시설을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땅속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시설의 설치시

제17조(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역의 전기·통신·가스 및 난방 공급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가스 및 난방 시설의 설치시기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로 한다. 다만, 해당 지역의 전기·통신·가스 및 난방 공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내에 완료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지의 협의하여 설치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시설: 간척지활용사업구역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전기시설로부터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폭 6미터 이상의 도로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이하 이 항에서 “개별필지”라 한다)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

2. 통신시설: 간척지활용사업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통신시설로부터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개별필지 경계선까지의 관로시설 및 최초 단자(端子)까지의 케이블시설

3. 가스시설: 간척지활용사업구역 밖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그 공사가 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확인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농림수산물부령은 그 준공검사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2. 지적측량 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 조사 및 평면도

4. 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서 및 도면

5. 신·구 지적 대조도

6. 총 사업비 명세서

7.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 농림수산물부령은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공사가 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는지에 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적으로 보급되거나 해당 지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범위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농림수산물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간척지활용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간척지활용사업 시행지의 위치
4. 간척지활용사업 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

제22조(조성토지 등의 사용·처분) ①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실시계획에서 정한 조성된 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매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 또는 매각에 관한 업무를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매각하는 조성토지 등의 용도, 임대·매각의 절차·방법 및 대상자, 위탁방

제19조(조성토지 등의 용도) 사업시행자[법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임대 또는 매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20조,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에서 같다]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임대·매각하려면 제2조 각 호의 용도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매립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농업법인에 대하여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제20조(조성토지 등의 임대·매각의 절차 방법) ① 사업시행자는 간척

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대·매각하려면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2. 농업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3. 시장·군수·구청장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4.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②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대·매각하려면 신청 마감일 10일 전

(긴급한 경우 또는 재공고의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임대·매각 대상 자격자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면적 및 용도 (용도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을 포함한다)
3. 임대·매각의 시기·방법 및 조건
4. 예정임대료 또는 매각 예정가격과 낙찰자 결정방법(낙찰자 결정방법은 경쟁입찰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임대·매각 신청 기간 및 장소

6. 제21조에 따른 임대·매각 대상
 지적지에 관한 사항

	<p>7. 입찰 신청 시 구비서류</p> <p>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100분의 10¹⁰의 범위에서 해당 매립사업의 제7항에 따른 입찰 신청을 받은 농어업인 2분의 1 이상¹ 또는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농업법인에 우선 임대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의} ^{별지 제5호서식의}</p> <p>④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예정임대료는 해당 지역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하여 정하며, 매각 예정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p> <p>⑤ 제4항에 따른 예정임대료 및 매각 예정가격은 공개하여야 하며, 경쟁입찰 시 예정임대료 및 매각 예정</p>	<p>제5조(조영 제2청 시 임차신매입신</p>
--	--	----------------------------

가격 미만의 액수로 응찰한 것은 무효로 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임대·매각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임대통지서 또는 매각통지서를 내주어야 한다.

등의 임대통지서 등)에 따른 임대통지서

⑦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각 대금 납부방법과 그 밖에 매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의 매각 대금 납부

20조제7항에 따른 매각통지서 제7호서식의 매각통지서식 제7호서식에 따른다. 납부기한까지 내야

구하고 매각 대상이 매입자가 분할납부를 각 대금의 100분의 10 먼저 내고, 나머지는 장관이 정하는 바에 낼 수 있다.

법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위탁

제6조(조영 제 및 매각 식 및

제7조(조방법)

각 대지서에 한다.

② 제1

농지인 원할 때 이상의 농림수 따라

③ 사리기관

임대

		<p>리기관을 포함한다. 입자가 제1항 및 제2 기한까지 매각 대금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은행법」에 따라 설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용하는 대출금 연체이 은 연체이자율의 한 정하여 고시하는 연 한 연체이자를 부과</p> <p>간척지활용사업으로 는 건축물이 다음 각 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이자의 납부기한을 . 이 경우 피해율 산 및 연체이자의 납부 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기준에 따른다. 중 농산물 생산 단</p>
--	--	--

한 경
이하
항에
내지
1월 1
립된
하는
자율
도 내
체이자
할 수
④ 사
구성된
호의
제1항
매각
연기할
정, 매
연기는
고시하

1. 영

지의
2. 「가
재해르
물에서
이상의

		<p>각한 경우 책법」에 따른 자연 해당 토지 또는 건축</p> <p>제21조(조성토지 등의 임대·매각) 대상 자격자) ① 사업실현을 위하여 실시계획에서 정한 처분계획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대·매각하려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매각하여야 한다.</p> <p>1. 임대 대상 자격자</p> <p>가.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농업법인</p> <p>나. 지방자치단체</p> <p>다. 한국농어촌공사</p> <p>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p>
--	--	--

마. 해당 매립사업의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피해를 입은 어업인으로서 농업인이 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구성된 농업법인

2. 매각 대상 자격자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업인(專業農業人)

나.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시·군·구에 있는 농업법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시·군·구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대책

이 필요하여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추천한 자

다. 해당 매립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정해진 토지 또는 건축물은 같은 용도로 사업을 하려는 자(제3호의 경우에는 농업법인만 해당한다)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1. 농업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사업
2. 영농시범사업 또는 농업교육훈련 사업
3. 농산물·축산물의 생산·가공·저장 또는 유통시설 단지를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사업

제4장 간척지의 관리 및 운영

제23조(관리권자 및 관리기관) ① 간 제22조(공동부담금의 징수) ① 법 제 제8조(관

업무) 법 제23조제2

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관리권자는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되며, 관리권자는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를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간척지의 임대 안내 및 상담
2. 임대계약의 체결
3. 이용자(제22조에 따라 간척지를 농업적 이용 목적으로 사용 또는 임차·매입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권리 보호
4. 공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
5.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영농기술 및 경영지도 등의 지원
6. 농림수산물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23조제3항에 따른 공동부담금은 공동시설을 사용하여 얻은 수익의 정도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그 수익의 정도를 산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비용 전체를 용지면적·건축연면적 및 종업원 수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부담비율에 따라 징수한다.

② 관리기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공동부담금을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운영 상황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항제73 부령의 사업의 관한 업무

7. 그 밖에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p>③ 관리기관은 도로, 공용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수산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p>	<p>제9조(공 “농림수 시설”의 가나 기 야 하 1. 간척 2. 가로 3. 상하 4. 수질 5. 조경 6. 안전 7. 공공</p> <p>법 제23조제3항에서 령으로 정하는 공동 각 호의 시설로서 국 체가 유지·관리하여 아닌 시설을 말한다. 업구역에 있는 도로</p>	<p>제9조(공 “농림수 시설”의 가나 기 야 하 1. 간척 2. 가로 3. 상하 4. 수질 5. 조경 6. 안전 7. 공공</p>
<p>제24조(임대차계약 등) ① 제22조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과 임대차에 관한 계약(이하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p>	<p>제23조(조성토지 등의 임대기간 등) ①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대기간은 5년(농산물·축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 목적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토지의 경우에는 30년) 이내로</p>	<p>제10조(임 제3항에 하는 하나에 1. 임대 명칭</p>
	<p>의 변경) 법 제24조 수산물부령으로 정 다음 각 호의 어느 사항을 말한다. 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자 성명</p>	

② 임대차계약 사항 중 계약기간, 임대면적, 임대료의 부과 및 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임대차계약 사항 중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임대차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토지의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물의 임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대면적은 임차하는 자의 임대료 납부능력을 고려하여 농림수산물부장관이 계약현황을 문서(전자)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경작목적으로 임대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하여 농작물에 30퍼센트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2. 임대
3. 임대
4. 임대
5. 임대
제11조(행자는
기 중
계약
자문서
부장관

임대료 및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피해를 산정 및 임대료·연체이자의 감면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기준에 따른다.

제25조(임대차계약의 해지 등) ①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임대목적과 다르게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제24조제3항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4. 그 밖에 임대차계약목적에 따른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

제24조(임대차계약의 해지 후 남은

업무의 처리)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임대차계약 해지 당시에 이미 계약이 체결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저장 또는 유통 업무와 이에 관련된 부대업무를 말한다.

②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차권 제1항10조에 따른 업무를 3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사업시행자가 기간을 정하여 연장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까지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

제1항에
로 정하
각 호의
을 말하

된 자는 남은 업무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6조(영농편의 제공)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용자의 영농편의를 위하여 간척지에 적합한 작물 및 품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에 적합한 작물과 품종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 작물과 품종에 관한 재배정보 등

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를 반영하여 2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 재배작물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재배작물과 품종, 재배방식, 작물관리 방법 등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7조(국가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도로, 용수·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제20조에 따른 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은 제외한다) 및 그 밖의 간척지 이용에 따른 기반시설 및

제25조(국가의 지원 등) ①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 시설에 부수되는 하수도 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간척지

공사

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 수출에
필요한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2. 농산물산지유통시설 등 그 밖의
공용시설

3. 그 밖에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
하여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
요한 시설 및 운영 자금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간척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판
매촉진 사업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
지 및 재생에너지를 간척지의 농업
적 이용에 활용하는 사업

3. 그 밖에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8조(지원금의 환수 등) ① 농림수
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이 과오지급된 경우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
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
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29조(기금 등의 활용) 이 법에 따
른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재원으로 농
지관리기금 또는 「자유무역협정 체

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30조(재해예방대책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풍, 조풍(潮風), 해일(지진해일을 포함한다), 황사 등 자연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해안방재림(海岸防災林)의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1조(간척지의 운영 평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매년 간척지별로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간척지별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간척지의 운영 평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간척지별로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평가를 하려면 평가계획을 세워 사업시행자와 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와 관리기관은 제1항의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의 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④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척지별 농업적 이용에 따른 기본방향과의 적합성 및 목표 달성도
2. 간척지활용사업 추진과정의 효율성
3.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 또는 임대·매각의 적정성
4.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 또는 임대·매각 대금 관리의 적정성
5.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관리의 적정성

제32조(관계 서류의 열람 등)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요청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서류의 교부에 필요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3조(보고·검사 등) ①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은 사업시행자 및 관리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4조(행정처분) 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

거나 사업에 포함된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 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2.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간척지활용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간척지활용사업을 시행한 경우

4.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간척지활용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

제27조(행정처분의 사유) 법 제34조 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파산에 준하는 정도로 사업시행자의 재무구조가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제13조(항에

기준) 법 제34조제1
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
건,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
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
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5조(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조치를 하려면 청문을 하
여야 한다.

1.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의 변경

제28조(행정처분의 고시) 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간척지활용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위치
4. 위반행위의 내용
5. 행정처분 내용 및 처분기간 등

2. 제3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3. 제34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

제3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

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
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승인의 고시 및 통보

4.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
의 변경승인에 관한 권한
 5.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6.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
공검사확인증의 발급 및 공사완료
의 공고
 7.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
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8. 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고시
 9. 법 제3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청문
 10.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의 부과·징수(법 제40조제1항제1
호 및 제2호의 위반행위만 해당
한다)
- ②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영
농편의 제공 업무를 농촌진흥청장에
게 위임한다.

제37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원 의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 36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 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2.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3.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5. 제13조제5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7.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그 임차자(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8.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중단하지 아니한 임차자

9.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

10. 제34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5항에 따른 행위를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3.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4 「간척지의 농업
적 이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10조

간척지활용
사업구역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이 영은 2013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날부터 시행한다.